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국 가 캐나다

원 법 률 명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제 정 2000 2000, c. C.12

개 정 2019.10.30 2019, c. 10

수 록 자 료 엘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pp.1-203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0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Province of Alberta

1 Interpretation

- (1) In this Act,
- (a) repealed 2018 c24 s2;
- (a.1) "adoption order" means an order made under section 70;
- (a.2) "adoption services" means any service provided under Part 2;
- (a.3) "Appeal Panel" means an Appeal Panel established under Part 4;
- (a.4) "band" means band within the meaning of the Indian Act (Canada);
- (b) "biological father" means the man
- (i) who is married to the biological mother at the time of the birth of the child.
- (ii) acknowledged by the biological mother as the biological father of the child,
- (iii) declared by a court to be the biological father of the child, or
- (iv) who satisfies a director that he is the biological father of the child;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앨버타주

제1조(해석)

-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 (a) 2018 년 법률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폐지
- (a.1) "입양명령"이란 제 70 조에 따른 명령 을 말한다.
- (a.2) "입양서비스" 란 제 2 부에 따라 제공 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a.3) "항소 재판부" 란 제 4 부에 따라 설립 된 항소 재판부를 말한다.
- (a.4) "부족"이란 「(캐나다) 인디언법」에서 의미하는 부족을 말한다.
- (b) "생물학적 아버지" 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을 말한다.
- (i) 아동이 출생하였을 때 생물학적 어머니 와 혼인 중이다.
- (ii)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인정한다.
- (iii) 법원이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선언 한다.
- (iv) 자신이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것을 책임자에게 납득시킨다.

- (c) "biological mother" means the woman who gave birth to the child;
- (d) "child" means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years and includes a youth unless specifically stated otherwise;
- (e) repealed 2013 cB-7.5 s9;
- (f) "Child and Youth Advocate" means the person appointed as the Child and Youth Advocate under section 2 of the Child and Youth Advocate Act;
- (g) "council of the band" means council of the band within the meaning of the Indian Act (Canada);
- (h) "Court" means the Provincial Court;
- (h.1) "custodian" means a custodian as defined in the Health Information Act;
- (i) "custody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section 9 or 57.2(2);
- (j) "director" means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as a director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nd the Protection of Sexually Exploited Children Act and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includes a person designated as a director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under section 122(2) of this Act;
- (j.1) "family enhancement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 (c) "생물학적 어머니" 란 아동을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 (d) "아동" 이란 18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이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e) 2013 년 법률 제 B-7.5 호 제 9 조에 따라 폐지
- (f) "아동·청소년 보호관"이란 「아동·청소년 보호관법」 제 2 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보호관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 (g) "부족의회" 란 「(캐나다) 인디언법」에서 의미하는 부족의회를 말한다.
- (h) "법원" 이란 지방법원을 말한다.
- (h.1) "보호자" 란 「의료정보법」에 정의된 보호자를 말한다.
- (i) "보호계약"이란 제 9 조나 제 57.2 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j) "책임자" 란 주무장관이 이 법과 「성 착취 아동 보호법」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러한 정의의 일반성을 제한하 지 아니하고 이 법 제 122 조제(2)항의 계약 에 따라 책임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 (j.1) "가족증진계약" 이란 제 8 조나 제 57.2

section 8 or 57.2(1);

- (j.2) "family enhancement services" means any service provided under a family enhancement agreement and care provided under section 7;
- (j.3) "First Nation Individual" means an Indian as defined in the Indian Act(Canada);
- (k) "foster parent" means a personapproved as a foster parent by a director;
- (1) "guardian" means
- (i) a person who is or is appointed a guardian of the child under Part 2 of the Family Law Act, or
- (ii) a person who is a guardian of the child under an agreement or order made pursuant to this Act:
- (1.1) "health information" means health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Health Information Act;
- (m) repealed 2018 c24 s2;
- (m.01) "Indigenous" includes First Nations, Metis and Inuit;
- (m.1) "intervention services" means any services, including protective services, provided to a child or family under this Act except for services provided under Part 2

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j.2) "가족증진서비스" 란 가족증진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 7 조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을 말한다.
- (j.3) "원주민"이란 「(캐나다) 인디언법」에 정의된 인디언을 말한다.
- (k) "위탁부모" 란 책임자가 양부모로 승인 한 자를 말한다.
- (l) "후견인" 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말한 다.
- (i) 「가족법에 관한 법률」 제 2 부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이거나 후견인으로 임명된 자
- (ii) 이 법에 따른 계약이나 명령에 따라 아 동의 후견인인 자
- (l.1) "의료정보" 란 「의료정보법」에 정의 된 의료정보를 말한다.
- (m) 2018 년 법률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폐지
- (m.01) "토착민 "에는 원주민, 메티스 (Metis) 및 이누이트족이 포함된다.
- (m.1) "개입서비스" 란 보호서비스를 포함하여 이 법에 따라 아동이나 가족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제 2 부이나 제 3 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예외로 한다.

or Part 3;

- (m.2) "marital status" includes, on and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ct, an adult interdependent partner as defined in that Act;
- (n) "Minister" means the Minister determined under section 1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s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this Act;
- (o) "peace officer" means a member of a municipal police service, a member of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or a peace officer appointed under the Peace Officer Act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 (p)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section 11;
- (q)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means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made under section 34;
- (q.01) "personal information" means personal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 (q.02) "police officer" means a police officer as defined in the Police Act;
- (q.1) repealed 2008 c31 s2;
- (r) "private guardianship order" means a

- (m.2) "혼인 상태"에는 「성인 상호의존적 관계법」의 시행 이후 「성인 상호의존적 관 계법」에 정의된 성인 상호의존적 배우자가 포함된다.
- (n) "주무장관"이란 「정부조직법」 제 16 조에 따라 이 법의 주무장관으로 결정된 장 관을 말한다.
- (o) "치안관" 이란 지방 경찰, 캐나다 기마 경찰대 대원 또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경찰관법」에 따라 임명된 치안관을 말한 다.
- (p) "영구후견계약" 이란 제 11 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q) "영구후견명령" 이란 제 34 조에 따른 영 구후견명령을 말한다.
- (q.01) "개인정보"란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의된 개인정보를 말한다.
- (q.02) "경찰관"이란 「경찰법」에 정의된 경찰관을 말한다.
- (q.1)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2 조에 따라 폐지
- (q) "개인후견명령" 이란 제 56 조에 따른 개

private guardianship order made under section 56;

- (s) "protective services" means any service provided to a child who either
- (i) is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or
- (ii) is the subject of a supervision order,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 (s.1) "public body" means a public body as defined i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 (t) "qualified person" means a qualified person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 (t.1) "reserve" means reserve within the meaning of the Indian Act (Canada);
- (u) "secure services certificate" means a secure services certificate issued under section 43.1;
- (v) "secure services facility" means a facility designated by the Minister, by regulation, as a secure services facility;
- (w) "secure services order" means a secure services order made under Part 1, Division 4;
- (x) repealed 2003 c16 s3;
- (x.1) repealed 2008 c31 s2;

인후견명령을 말한다.

- (s) "보호서비스" 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i) 책임자의 보호를 받는다.
- (ii) 보호관찰명령, 임시후견명령 또는 영구 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이다.
- (s.1) "공공단체" 란 「정보의 자유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정의된 공공단체를 말한다.
- (t) "자격자" 란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t.1) "보호구역" 이란 「(캐나다) 인디언 법」에서 의미하는 보호구역을 말한다.
- (u) "보안서비스 증명서" 란 제 43.1 조에 따라 발급된 보안서비스 증명서를 말한다.
- (v) "보안서비스시설" 이란 주무장관이 규정에 따라 보안서비스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w) "보안서비스명령" 이란 제 1 부제 4 절에 따른 보안서비스명령을 말한다.
- (x)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3 조에 따라 폐지
- (x.1)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2 조에 따라

- (y) "supervision order" means a supervision order made under section 28 and includes a renewal order;
- (z), (aa) repealed 2003 c16 s3;
- (bb)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means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made under section 31 and includes a renewal order;
- (cc) "youth" means a child who is 16 years of age or older.
-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if there are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of the child is endangered because of any of the following:
- (a) the child has been abandoned or lost;
- (b) the guardian of the child is dead and the child has no other guardian;
- (c) the child is neglected by the guardian;
- (d) the child has been or there is substantial risk that the child will be physically injured or sexually abused by the guardian of the child;
- (e) the guardian of the child is unable or unwilling to protect the child from physical injury or sexual abuse;
- (f) the child has been emotionally injured

폐지

- (y) "보호관찰명령" 이란 제 28 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말하며 갱신 명령이 포함된다.
- (z), (aa)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3 조에 따라 폐지
- (bb) "임시후견명령"이란 제 31 조에 따른 임시후견명령을 말하며 갱신 명령이 포함된 다.
- (cc) "청소년" 이란 16 세 이상인 아동을 말하다.
- (2) 이 법의 목적상,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인하여 아동의 안전, 무사(無事) 및 발달이 위태롭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다면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한 것으 로 본다.
- (a) 아동이 유기되거나 실종되었다.
- (b) 아동의 후견인이 사망하였고 다른 후견 인이 없다.
- (c) 후견인이 아동을 방임한다.
- (d) 아동의 후견인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 거나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거나 그와 같이 할 실질적 위험이 있다.
- (e) 아동의 후견인이 신체 상해나 성폭력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할 의사가 없다.
- (f) 아동의 후견인이 아동에게 정서적 피해

by the guardian of the child;

- (g) the guardian of the child is unable or unwilling to protect the child from emotional injury;
- (h) the guardian of the child has subjected the child to or is unable or unwilling to protect the child from cruel and unusual treatment or punishment.
- (i) repealed 2003 c16 s3.
- (2.1)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2)(c), a child is neglected if the guardian
- (a) is unable or unwilling to provide the child with the necessities of life,
- (b) is unable or unwilling to obtain for the child, or to permit the child to receive, essential medical, surgical or other remedial treatment that is necessary for the health or well—being of the child, or
- (c) is unable or unwilling to provide the child with adequate care or supervision.
- (3)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 (a) a child is emotionally injured
- (i) if there is impairment of the child's mental or emotional functioning or development, and

를 주었다.

- (g) 아동의 후견인이 정서적 피해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할 의사가 없다.
- (h) 아동의 후견인이 아동을 잔인하고 비정 상적인 처우나 처벌의 대상으로 하거나 잔인 하고 비정상적인 처우나 처벌에서 아동을 보 호할 수 없거나 보호할 의사가 없다.
- (i)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3 조에 따라 폐 지
- (2.1) 제(2)항제(c)호의 목적상, 후견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아동은 방임 된 것으로 본다.
- (a) 아동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다.
- (b) 아동의 건강이나 행복에 필요한 필수적 의료, 외과 치료나 그 밖의 교정 치료를 아 동을 위하여 확보하거나 아동이 이러한 치료 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없거나 확보하거나 허가할 의사가 없다.
- (c) 아동을 충분하게 돌보고 감독할 수 없거 나 돌보고 감독할 의사가 없다.
- (3) 이 법의 목적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 (a)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은 정서적 피해를 받은 것이다.
- (i) 아동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 기능이나 발 달에 장애가 있다.

- (ii) if there are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emotional injury is the result of
- (A) rejection,
- (A.1) emotional, social, cognitive or physiological neglect,
- (B) deprivation of affection or cognitive stimulation.
- (C)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r severe domestic disharmony,
- (D) inappropriate criticism, threats, humiliation, accusations or expectations of or toward the child,
- (E) the mental or emotional condition of the guardian of the child or of anyone living in the same residence as the child;
- (F) chronic alcohol or drug abuse by the guardian or by anyone living in the same residence as the child:
- (b) a child is physically injured if there is substantial and observable injury to any part of the child's body as a result of the non-accidental application of force or an agent to the child's body that is evidenced by a laceration, a contusion, an abrasion, a scar, a fracture or other bony injury, a dislocation, a sprain, hemorrhaging, the rupture of viscus, a burn, a scald, frostbite, the loss or alteration of consciousness or physiological functioning or the loss of hair

- (ii) 정서적 피해가 다음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 다.
- (A) 거절
- (A.1)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또는 생리적 방임
- (B) 애정이나 인지적 자극의 박탈
- (C)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가정불화에 노출
- (D)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비판, 위협, 모욕, 비난이나 기대
- (E) 아동의 후견인 또는 아동과 동일한 주 거에서 생활하는 자의 정신적 또는 감정적 상태
- (F) 후견인 또는 아동과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자의 만성적인 알코올이나 약물 남 용
- (b) 아동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이나 자연력의 비우발적 적용으로 아동의 신체 일부에 실질적이고 식별할 수 있는 손상이 있고 이러한 손상이 열상(裂傷), 타박상, 찰과상, 흉터, 골절이나 다른 뼈의 부상, 탈구, 염좌, 출혈, 장기 파열, 화상, 열탕화상, 동상, 의식이나 생리적 기능의 손실이나 변경 또는 모발이나 치아의 손실로 증명되면 아동은 상해를 입은 것이다.

or teeth;

- (c) a child is sexually abused if the child is inappropriately exposed or subjected to sexual contact, activity or behaviour including prostitution related activities.
- (4) Subject to this Act, a person who is a guardian of a child under an agreement or order made under this Act is a guardian under the Family Law Act.
- (5)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child is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if
- (a) the child has been apprehended under section 19 and has not been returned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 (b) the child is the subject of a custody order under section 21.1(2)(a) or an interim order for custody under section 21.1 or 26, or
- (c) the child is the subject of a custody agreement.

1.1 Guiding principles

This Act must be interpreted and admin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 (a) the best interests, safety and wellbeing of children are paramount;
- (b) the well-being of families and communities is crucial to the well-being of

- (c) 아동이 매춘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성접 촉, 성활동이나 성행위에 부적절하게 노출되 거나 그 대상이 되면 아동은 성적으로 학대 를 받은 것이다.
- (4) 이 법을 조건으로 하여, 이 법의 계약이 나 명령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인 자는 「가 족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된다.
- (5) 이 법의 목적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아동은 책임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 (a) 아동이 제 19 조에 따라 체포되었고 아 동의 후견인의 보호 상태로 복귀하지 아니하 였다.
- (b) 아동이 제 21.1 조제(2)항제(a)호에 따른 보호명령 또는 제 21.1 조나 제 26 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대상이다.
- (c) 아동이 보호계약의 대상이다.

제1.1조(지도 원칙)

-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해석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a)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안전 및 행복이 최 우선이다.
- (b) 가족과 공동체의 행복이 아동의 행복에 결정적이다.

children;

- (c) children benefit from
- (i) last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with whom they have connections, including family, friends, caregivers and other significant individuals,
- (ii) connections with their culture and cultural communities and opportunities to form those connections, and
- (iii) permanent, formalized ties with people who care about them;
- (d) Indigenous people should be involved with respect to the planning and provision of services to and decisions respecting Indigenous families and their children.

2 Matters to be considered

- (1) If a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a court, an Appeal Panel and all persons who exercise any authority or make any decision under this Act relating to the child must do so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must consider the following as well as any other relevant matter:
- (a) the child's family ha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child and the family's well-being should be supported and preserved;
- (b) if the child is capable of forming an opinion, the child's opinion should be taken

- (c) 아동이 다음에서 이익을 얻는다.
- (i) 가족, 친구, 돌보는 사람 및 다른 중요한 개인을 포함하여 연고가 있는 사람과의 지속 적 관계
- (ii) 문화 및 문화 공동체와의 접점 그리고 이러한 접점을 형성할 기회
- (iii) 아동을 돌보는 사람과의 영구적이고 공 식적인 유대
- (d) 토착 가족과 그 아동에 관한 서비스의 계획과 제공 그리고 이에 대한 결정에 토착 민이 관여하여야 한다.

제2조(고려되는 사안)

- (1)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한 경우 법원, 항소 재판부 및 이 법에 따라 아동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결정을 하는 모든 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개입을 하여야하며 다음 사안과 그 밖의 관련 사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아동의 가족이 아동의 안전과 행복에 대하여 1 차적 책임을 지며 그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b) 아동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into account;

- (c) in the case of an Indigenous child,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supporting and preserving the child's Indigenous identity, culture, heritage, spirituality, language and traditions;
- (d) the benefits to the child of lasting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with whom the child is connected, including family, friends, caregivers and other significant individuals;
- (e) the benefits to the child of connections with the child's culture and cultural communities and opportunities to form those connections;
- (f) the child's race, spiritual beliefs, colour, gender,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age, ancestry, place of origin, family status, sexual orientation and any disability the child may have;
- (g) the importance of stability, permanence and continuity of care and relationships to the child's long-term safety and well-being;
- (h) any decision concerning the removal of the child from the child's family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risk to the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of the child if the child remains with the family, is removed from the family or is returned to the family;
- (i) subject to clause (h), if the child has be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within the

- (c) 토착 아동의 경우 아동이 토착민으로서 가지는 정체성, 문화, 전승, 영성(靈性), 언 어 및 전통을 존중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 (d) 아동이 가족, 친구, 돌보는 사람 및 다른 중요한 개인을 포함하여 접점이 있는 사람과의 지속적 관계에서 얻는 이익을 고려한다.
- (e) 아동이 문화 및 문화 공동체와의 접점 그리고 이러한 접점을 형성할 기회에서 얻는 이익을 고려한다.
- (f) 아동의 인종, 영적 믿음, 피부색, 성(性), 성 정체성, 성 표현, 연령, 가계, 출신지, 가족 상황, 성적 지향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신체적 장애가 다른 점을 고려한다.
- (g) 아동의 장기적 안전과 행복에 돌봄과 관계의 안정성, 영속성 및 계속성의 중요성 을 고려한다.
- (h) 아동이 가족과 계속 함께 있거나 가족에서 분리되거나 가족으로 복귀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 무사나 발달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아동을 아동의 가족에서 분리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고려한다.
- (i) 제(h)호를 조건으로 하여, 아동이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에 가족 구

child's family, intervention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family in a manner that supports family members and prevents the need to remove the child from the custody of an abused family member;

- (j) any decision concerning the placement of the child outside the child's family must include a plan to address the child's need for permanent, formalized ties to people who care about the child and must take into account
- (i) the benefits to the child of a placement within the child's extended family, or with persons who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child,
- (ii) the benefits to the child of a placement within or as close as possible to the child's home community,
- (iii) in the case of an Indigenous child, the benefits to the child of a placement where the child's Indigenous identity, culture, heritage, spirituality, language and traditions will be respected, supported and preserved,
- (iv) the benefits to the child of a placement where the child's familial, cultural, social, linguistic and spiritual heritage are valued as central to the child's safety, security and development, and
- (v) the mental, emotional, spiritual and physical needs of the child and the child's mental, emotional and physical stage of

성원을 지원하고 피학대 가족 구성원의 보호에서 아동을 분리할 필요성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개입서비스를 가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 (j) 아동을 가족 외부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결정에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과의 영구적이 고 공식적인 유대에 대한 아동의 요구를 다 루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을 고려한 다.
- (i) 아동을 아동의 확대가족 내에 배치하거 나 아동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자와 배치하 는 것의 이점
- (ii) 아동을 아동의 고향 지역에 또는 고향 지역에 가능한 가장 가깝게 배치하는 것의 이점
- (iii) 토착 아동의 경우 아동이 토착민으로서 가지는 정체성, 문화, 전승, 영성, 언어 및 전통을 존중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곳에 아 동을 배치하는 것의 이점
- (iv) 아동의 가족, 문화, 사회, 언어 및 영성에 관한 전승이 아동의 안전, 무사 및 발달의 중심으로 높게 평가되는 곳에 아동을 배치하는 것의 이점
- (v) 아동의 정신적, 정서적, 영적 및 신체적 요구와 아동의 정신적, 정서적 및 신체적 발

development;

- (k) in the case of a child who has a disability, planning for the care of the child should address the need for resources and supports adequate to the unique needs of the child;
- (1) in the case of a youth who is being provided with care under this Act, the plan for the care of the youth should address the youth's need for preparation for the transition to independence and adulthood;
- (m) there should be no unreasonable delay in making or implementing a decision respecting the child.
- (2) Nothing in subsection (1) shall be interpreted as derogating from the obligation to report a child in need under section 4.

2.1 Procedural rights

A director, when it is appropriate, must inform a child of the child's procedural rights under this Act.

3 Repealed 2011 cC-11.5 s26.

3.1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 Subject to the regulations, a child, the guardian of a child or a person who in the opinion of a director has a significant connection to a child may, with the agreement of the director, enter into

달 단계

- (k)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을 돌보기 위한 계획으로 해당 아동의 고유한 요구에 적합한 자산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처하는 것을 고려 한다.
- (1) 이 법에 따라 돌봄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을 돌보기 위한 계획으로 독립과 성년 전환에 대한 청소년의 준비 필요성에 대처하는 것을 고려한다.
- (m) 아동에 관한 결정과 그 실행에는 부당한 지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 (2) 제(1)항은 제 4 조에 따라 구호가 필요 한 아동을 신고하는 의무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절차상 권리)

책임자는 적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른 아동 의 절차상 권리를 아동에게 고지하여야 한 다.

제3조 2011년 법률 제C-11.5호 제26조에 따라 폐지

제3.1조(대체적 분쟁 해결)

(1)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아동, 아동의 후 견인 또는 책임자가 아동과 상당한 연고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는 책임자와 합의하여 책 임자의 아동 관련 결정에 대하여 책임자와 함께 규정에 정의된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s defined in the regulations, with the director with respect to any decision made by the director with respect to the child.

- (2) All information provided orally dur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confidential and is the privileged information of the person providing it, and all documents and records created as a result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re confidential and are privileged documents and records of the person creating them.
- (3) No person shall disclose or be compelled to disclose the documents, records or inform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2) except
- (a) with the consent of all who participated in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b) if disclosure is necessary to make or to carry out an agreement under this Act,
- (c) if disclosure is pursuant to an order of the Court granted with the consent of all the parties to the Court application,
- (d) to the extent that the disclosure is necessary to protect the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of the child, or
- (e) for the purposes of disclosure required by section 4.
- (4) If there is a conflict or inconsistency between subsection (2) or (3) and the

를 진행할 수 있다.

- (2) 대체적 분쟁 해결 중에 구두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비밀이며 이를 제공한 자의 비 밀정보이다. 그리고 대체적 분쟁 해결에 따라 작성된 모든 문서와 기록은 비밀이며 이 를 작성한 자의 비밀 문서 및 기록이다.
- (3) 누구든지 제(2)항에 규정된 문서, 기록 이나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공개가 강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대체적 분쟁 해결에 참가한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 (b) 이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
- (c) 법원에 신청한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에 따른 법원의 명령으로 공개된다.
- (d) 아동의 안전, 무사 또는 발달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공개가 제한된다.
- (e) 제 4 조에서 요구하는 공개를 위한 것이다.
- (4)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정보의 자 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에 충돌이나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subsection (2) or (3) prevails despite that Act.

(5) No action may be brought against a person who conduct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der this section for any act done or omitted to be done with respect to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less it is proved that the person acted maliciously and without reasonable and probable cause.

Part 1 Intervention Services

Division 1 Preliminary Matters

4 Reporting child in need

- (1) Any person who has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shall forthwith report the matter to
- (a) a director, or
- (b) a police officer.
- (1.1) A referral received pursuant to section 35 of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Canada) is deemed to be a report made under subsection (1).
- (1.2) A police officer who receives a report pursuant to subsection (1)(b) shall report the matter to a director as soon as practicable.
- (2) Subsection (1) applies notwithstanding that the information on which the belief is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정보의 자유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제 (3)항이 우선한다.

(5) 이 조에 따라 대체적 분쟁 해결을 진행한 자는 대체적 분쟁 해결과 관련한 작위나부작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부 개입서비스

제1절 사전 준비

제4조(구호가 필요한 아동의 신고)

- (1)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는 자는 즉시 그 사안을 다음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신고한다.
- (a) 책임자
- (b) 경찰관
- (1.1) 「(캐나다) 청소년 형사정책법」 제 35 조에 따라 접수된 위탁은 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 (1.2) 제(1)항제(b)호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가급적 신속하게 그 사안을 책임자에게 신고한다.
- (2) 제(1)항은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비밀이며 그 공개가 다른 법률에 따라 금

founded is confidential and its disclosure is prohibited under any other Act.

- (3)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information that is privileged as a result of a solicitor—client relationship.
- (4) No action lies against a person reporting pursuant to this section, including a person who reports inform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3), unless the reporting is done maliciously or without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for the belief.
- (5) Notwithstanding and in addition to any other penalty provided by this Act, if a director has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person has not complied with subsection (1) and that person is registered under an Act regulating a profession or occupation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the director shall advise the appropriate governing body of that profession or occupation of the failure to comply.
- (6) Any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subsection (1)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fine of not more than \$10 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6 months, or to both a fine and imprisonment.

5 Peace officer

If a peace officer, on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believes that a child committed an offence under an Act of the 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3) 이 조는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에 따라 비밀인 정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제(3)항에 규정된 정보를 신고하는 자를 포함하여 이 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소송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가 악의적이거나 믿음에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이 법에서 정한 다른 형벌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에 더하여 책임자는 특정인이 제(1)항을 불이행하였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다면 그 특정인이 규정에서 정한 전문직이나 직업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해당 전문직이나 직업의 관련 자치기구에 불이행 사실을 알린다.
- (6) 제(1)항을 불이행한 자는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으며 이에 따라 10,000 달러 이하 의 벌금 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다.

제5조(치안관)

치안관은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에 따라 12 세 미안인 아동이 캐나다 의회의 법률에 따른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는다면, 그 사안

Parliament of Canada while the child was under the age of 12 years, the peace officer may report the matter to a director.

6 Investigation and response

- (1) If a director receives information in the form of, the director must investigate the child's need for intervention.
- (a) a request for intervention services,
- (b) a report under section 4 or 5, or
- (c) any other allegation or evidence that a child may be in need of intervention,

unless the director is satisfied that the information was provided maliciously or is unfounded or that the report or allegation was made without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 (2) During an investigation, a director may convey a child to any place in order to complete the investigation if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it is necessary.
- (3) If, after an investig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the director is of the opinion that the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 (a) the director must,
- (i) if the director is satisfied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child's need for intervention, provide family enhancement services to the child or to the child's family

을 책임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조사와 대응)

- (1) 책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은 형 식으로 정보를 접수하면, 아동에 대한 개입 필요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 (a) 개입서비스 요청
- (b) 제 4 조나 제 5 조에 따른 신고
- (c)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다른 주장이나 증거

다만, 책임자가 그 정보가 악의적으로 제공 되었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그 신고 나 주장에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책임자는 조사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 완료를 위하여 아동을 특정 장소에 위탁할 수 있다.
- (3) 제(1)항에 규정된 조사 이후에 책임자 가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을 이행한다.
- (a) 책임자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i) 아동에 대한 개입 필요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이 법에 따라 아동 또는 아동의 가족에게 가족증진서비스를 제공한다.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r

- (ii) if the director is not satisfied that the child's need for intervention can be met under subclause (i), take whatever action under this Act that the director considers appropriate, including the provision of protective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nd
- (b) the director may, if the director is satisfied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child's need for intervention, convey the child to the person who has custody of the child or to a person who is temporarily caring for the child.
- (4) If family enhancement services are provided to the child or to the child's family, the person or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providing those services must report to the director any matter respecting the child that may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by the director.

7 Emergency care

(1) If a director is satisfied that without the provision of emergency care a child may be in need of intervention because the guardian of the child cannot be located after a reasonable search or has died or become incapacitated, the director may appoint a person to care for the child until the guardian can be located or other satisfactory arrangements can be made for the care of the child, and the director may

- (ii) 아동에 대한 개입 필요성이 (i)목에 따라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책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 법에 따라 취한다.
- (b) 책임자는 아동에 대한 개입 필요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임시로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자에게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
- (4) 가족증진서비스가 아동 또는 아동의 가 족에게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나 단체의 구성원은 책임자의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사안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 돌봄)

(1) 책임자는 합리적 수색 뒤에도 아동의 후견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그 후견 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어서 긴급 돌봄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후견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거나 아동의 돌봄을 위한 다른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동을 돌볼 자를 임명하고 아동이 그의 돌봄을 받도록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

convey the child for the purpose of placing the child in the care of that person.

- (2) The person appointed under subsection
- (1) may care for the child in the residence in which the child was found and for that purpose may
- (a) enter the residence.
- (b) live in the residence,
- (c) carry on normal housekeeping activities in the residence that are necessary for the care of the child, and
- (d) exercise reasonable control over all children residing in the residence.
- (3) The person appointed under subsection
- (1) may care for the child in the person's own residence for not more than 10 days.
- (4) When a person is appointed under subsection (1), no liability attaches to that person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that person's duties under subsection (2) or to a director assisting that person in carrying out those duties by reason only of the entry into and occupation of the residenc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or occupier.

Division 2 Agreements

8 Family enhancement agreement

(1) A director may enter into an agreement in the prescribed form with the guardian of a child or with another person who, with the

- (2)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자는 아동이 발견되었던 주거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주거에 진입한다.
- (b) 주거에서 생활한다.
- (c) 주거에서 아동의 돌봄에 필요한 정상적 가사 활동을 한다.
- (d) 주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자는 자신의 주 거에서 10 일 이하의 기간으로 아동을 돌볼 수 있다.
- (4) 특정인이 제(1)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진입하여 이를 점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특정인 또는이러한 의무 이행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원하는 책임자에게 채무가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2절 계약

제8조(가족증진계약)

(1)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가족이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아동의 후견인 또는 후견인의 명시적 express or implied consent of the guardian or pursuant to a Court order or an agreement, has custody of the child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the family or the child if,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 (a) the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and
- (b) as a result of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the child's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will be adequately protected if the child remains with the child's guardian or the person who has custody of the child, as the case may be.
- (2) Repealed 2003 c16 s13.

9 Custody agreement

Subject to section 33, a director may enter into an agreement in the prescribed form for terms of not more than 6 months each with the guardian of a child under which custody of the child is given to the director if,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 (a) the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and
- (b) the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of the child cannot be adequately protected if the child remains with the child's guardian.

10 Terms of custody agreement

A custody agreement between a guardian and a director shall include terms

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나 법원 명령이나 계약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는 다른 자와 규정된 양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 (a)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
- (b)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아동이 경우에 따라 후견인이나 자신을 보호하는 자와 계속함께 하여도 아동의 안전, 무사 또는 발달이충분히 보호될 것이다.
- (2)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13 조에 따라 폐지

제9조(보호계약)

제 33 조에 따라,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각각의 기간을 6 개월 이하로하여 아동의 보호를 책임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아동의 후견인과 규정된 양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 (a)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
- (b) 아동이 후견인과 계속 함께 하면 아동의 안전, 무사 또는 발달이 충분히 보호될수 없다.

제10조(보호계약의 조항)

후견인과 책임자 사이의 보호계약에는 다음 을 정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prescribing

- (a) the plan for the care of the child,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services to be provided,
- (b) the visits or other access to be provided between the child and the child's guardian or any other person, and
- (c) the extent of the deleg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guardian to the director.
- (d) repealed 2003 c16 s15.

11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 (1) If a child has been in the actual custody of at least one of the child's guardians for a cumulative period of less than 6 months, all the guardians of the child and a director may enter into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in the prescribed form under which the director will assume the guardianship of the child.
- (2) When an agreement is made pursuant to this section
- (a) the guardianship of any person who was a guardian of the child at the time the agreement was entered into is terminated,
- (b) the agreement is binding on any parent who at the time the agreement was entered into was not a guardian of the child, whether or not that parent had notice of the

- (a)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아동돌봄계획
- (b) 아동 그리고 아동의 후견인이나 다른 자 사이에 제공되는 방문이나 다른 면접
- (c) 후견인의 권한을 책임자에게 위임하는 범위
- (d)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15 조에 따라 폐지

제11조(영구후견계약)

- (1) 아동이 자신의 후견인 중에서 적어도 1 명의 실제 보호를 받은 기간이 누적하여 6 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아동의 후견인 전원 과 책임자는 책임자가 아동의 후견을 맡는 영구후견계약을 규정된 양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 (2) 이 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다음과 같다.
- (a)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아동의 후견인이었 던 자의 후견은 종료된다.
- (b) 계약의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아동의 후견인이 아니었던 부모는 계약의 구속을 받는다.

agreement,

- (c) the director is the sole guardian of the child for all purposes, and
- (d) the agreement may be terminated only pursuant to section 12, 13, 35 or 40(2).

12 Termination of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 (1) A guardian who has entered into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under section 11 may,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the agreement, request the director in writing to terminate the agreement and return the child who is the subject of the agreement to that guardian.
- (2) Subject to subsection (3), a director who receives a request from a guardian under subsection (1) shall notify any other guardian who was a party to the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f the request and shall place the child in the custody of the guardian who makes the request under subsection (1) within 48 hour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or within any other period agreed to by the director and the guardian who makes the request.
- (3)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terminates on the expiration of the 48 hours or any other period agreed to under subsection (2).
- (4) A director who has reasonable and

- (c) 책임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 아동의 단독 후견인이다.
- (d) 계약은 제 12 조, 제 13 조, 제 35 조 및 제 40 조제(2)항에 따르는 경우에만 종료될 수 있다.

제12조(영구후견계약의 종료)

- (1) 제 11 조에 따라 영구후견계약을 체결한 후견인은 계약일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의 대상인 아동이 후견인에게 복귀하는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2) 제(3)항을 조건으로 하여, 후견인의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한 책임자는 영구후견계약의 당사자인 다른 후견인에게 요청을 통지하고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48 시간이내에 또는 책임자와 요청을 한 후견인이합의한 다른 기간에 제(1)항에 따라 요청을한 후견인이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다.

- (3) 영구후견계약은 48 시간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된 다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된다.
- (4) 이 조에 따른 영구후견계약의 종료로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termination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under this section would render the child who is the subject of the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in need of intervention may

- (a) enter into an agreement under section 8 or 9, or
- (b) apply to the Court in the prescribed form for an order under Division 3.

13 Application for order to terminate agreement

- (1) A person claiming to be a parent of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under section 11 may,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the agreement, apply to the Court in the prescribed form for an order terminating the agreement.
- (2) An applicant under subsection (1) shall give not less than one day's notice of the natur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of the application to
- (a) a director, and
- (b) a person who was a guardian of the child immediately before the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was entered into.
- (3) Section 23(5) and (6) apply to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 (4) The Court may adjourn the hearing of

영구후견계약의 대상인 아동에게 개입이 필 요하게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 고 유력한 근거를 가진 책임자는 다음 중 어 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제 8 조나 제 9 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 (b) 규정된 양식으로 제 3 절에 따른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다.

제13조(계약 종료를 구하는 명령의 신청)

- (1) 제 11 조에 따른 영구후견계약의 대상인 아동의 부모라고 주장하는 자는 계약일부터 10 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으로 계약 종료를 구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적어도 1 일 전에 신청에 대한 심리의 성격, 시간 및 장 소를 다음과 같은 자에게 통지한다.
- (a) 책임자
- (b) 영구후견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아동 의 후견인이었던 자
- (3) 제 23 조제(5)항과 제(6)항은 이 조에 따른 신청에 적용된다.
- (4) 법원은 이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for not more than 15 days or for a longer period agreed to by the parties to the application.

- (5)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is a parent of the child, the Court may terminate the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and do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a) declare the applicant to be a parent of the child;
- (b) appoint the applicant as a guardian of the child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 (i) the applicant is capable of assuming and willing to assume the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hip of the child, and
- (ii)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at the applicant be appointed a guardian;
- (c) direct that the child be placed in the custody of any guardian of the child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 (i) the guardian is capable of assuming and willing to assume the custody of the child, and
- (ii)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at the guardian assume the custody of the child.
- (6) If the Court makes an order under subsection (5),
- (a) the guardianship of any person who was

를 15 일 이하의 기간 또는 신청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보다 긴 기간으로 연기할 수 있다.

- (5) 법원은 신청인이 아동의 부모라고 판단 하면, 영구후견계약을 종료하고 다음 중하나 이상을 할 수 있다.
- (a) 신청인이 아동의 부모라고 선언한다.
- (b)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신청인을 아동의 후견인으로 임명한다.
- (i) 신청인이 아동의 후견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를 부담할 의지가 있다.
- (ii) 신청인을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
- (c) 법원이 다음과 같이 확신하면, 아동의 후견인에게 아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한다.
- (i) 후견인이 아동의 보호를 맡을 수 있고 이를 맡을 의지가 있다.
- (ii) 후견인이 아동의 보호를 맡는 것이 아 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
- (6) 법원이 제(5)항에 따라 명령을 하면, 다음과 같다.
- (a) 영구후견계약 체결 전에 아동의 후견인

a guardian of the child before the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was entered into is revived.

- (b) the guardianship of the child by the director is terminated, and
- (c) if a person is appointed as a guardian under subsection (5)(b), that person is an equal guardian of the child with any other guardian of the child.
- (7) If the Court makes an order under subsection (5)(b), it may make a further order terminating the guardianship of any other guardian of the child if
- (a)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other guardian of the child consents to the termination, or
- (b) the Court considers it necessary or desirable to do so.
- (8) An order made under this section does not come into effect until the applicant serves the director with a copy of the order.

14 Access agreements

- (1) A director may enter into an agreement in the prescribed form with
- (a) a guardian of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 (b) any person who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 child who is the subject

이었던 자의 후견이 회복된다.

- (b) 책임자의 아동 후견이 종료된다.
- (c) 특정인이 제(5)항제(b)호에 따라 후견 인으로 임명된 경우 그는 아동의 다른 후견 인과 함께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아동의 후 견인이 된다.
- (7) 법원은 제(5)항제(b)호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아동의 다른 후견인의 후견을 종료하는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아동의 다른 후견인이 후견 종료에 동의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다.
- (b) 후견 종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법원이 판단한다.
- (8) 이 조에 따른 명령은 신청인이 명령의 사본을 책임자에게 송달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다.

제14조(면접 계약)

- (1) 책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규정된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a) 임시후견명령의 대상인 아동의 후견인
- (b) 임시후견명령의 대상인 아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자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 (2) The agreement may include the following:
- (a) the visits or other access to be provided between the child and the guardian or any other person with whom the child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 (b) the conditions, if any, under which the director will consult with the guardians on matters affecting the child;
- (c) repealed 2003 c16 s17;
- (d) any other matter relating to the guardianship of the child.
- (3) No agreement under subsection (1)(b) relating to a child who is 12 years of age or older shall be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child.

15 Minor parent

Any agreement entered into under this Act by a person under 18 years of age is as valid as if that person had attained the age of 18.

Division 3 Court Orders

16 Supervision order application

(1) A director may apply to the Court in the prescribed form for an order under section 28 authorizing the director to

- (2)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a) 아동 그리고 후견인이나 아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다른 자 사이에 제공되는 방문이나 다른 면접
- (b) 해당되는 경우 책임자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후견인과 협의하는 조건
- (c)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17 조에 따라 폐지
- (d) 아동의 후견에 관한 그 밖의 사안
- (3) 12 세 이상인 아동에 관한 제(1)항제(b) 호에 따른 계약은 아동의 동의 없이 체결되지 아니한다.

제15조(미성년자인 부모)

18 세 미만인 자가 이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그가 18 세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제3절 법원 명령

제16조(보호관찰명령 신청)

(1)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 28 조에 따라 자신이 아동 그리고 아동이함께 거주하는 자를 감독하는 것을 허용하는

provide supervision of the child and the persons with whom the child resides if,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 (a) the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 (b) supervision of the child and the persons with whom the child resides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of the child is protected, and
- (c) there are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child's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will be adequately protected as a result of the supervision.
- (2) If a director applies under subsection
- (1), the director shall include with the application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the terms of the proposed supervision.

17 Temporary guardianship application

A director may apply in the prescribed form to the Court for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under section 31 in respect of a child if,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but it can be anticipated that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child may be returned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or, if the child is 16 years of age or older, the child will be able to live independently.

- (a) the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and
- (b) the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of the child cannot be adequately protected if the child remains with the child's guardian,

명령을 규정된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a)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
- (b) 아동 그리고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자에 대한 감독이 아동의 안전, 무사 또는 발달이 보호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c) 아동의 안전, 무사 또는 발달이 감독에 따라 충분히 보호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다.
- (2)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에 예정된 감독의 기간에 관한 제청을 신청에 추가한다.

제17조(임시 후견 신청)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지만 합리적 기간 내에 아동이 후견인의 보호로 복귀할 수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아동이 16 세 이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 제 31조에 따라 아동에 대한 임시후견명령을 규정된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a)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
- (b) 아동이 후견인과 계속 함께 하면 아동의 안전, 무사 또는 발달이 충분히 보호될수 없다.

18 Permanent guardianship application

- (1) A director may make an application in the prescribed form to the Court for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under section 34 in respect of a child if,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 (a) the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or is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 (b) the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of the child cannot adequately be protected if the child remains with or is returned to a guardian other than the director, and
- (c) it cannot reasonably be anticipated that the child could or should be returned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 (2) Repealed 2003 c16 s19.

19 Apprehension order

- (1) If a director has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the director may make an ex parte application to a judge of the Court, or if no judge is reasonably available, to a justice of the peace, for an order
- (a) authorizing the director to apprehend the child, or
- (b) if the judge or justice is satisfied that the child may be found in a place or

제18조(영구 후견 신청)

- (1)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 34 조에 따라 아동에 대한 영구후견명령을 규정된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a)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거나 아동이 임 시후견명령의 대상이다.
- (b) 아동이 책임자가 아니라 후견인과 계속 함께 하거나 후견인에게 복귀하면 아동의 안 전, 무사 또는 발달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 다.
- (c) 아동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후견인의 보호로 복귀할 수 있거나 복귀하여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없다.
- (2)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19 조에 따라 폐지

제19조(체포명령)

- (1) 책임자는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 으면, 법원 판사 또는 합리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판사가 없는 경우에 치안판사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은 명령에 대한 일방당사 자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 (a) 책임자가 아동을 체포하는 것을 허가한 다.
- (b) 판사나 치안판사가 특정 장소나 구내에서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premises, authorizing the director or any person named in the order and any peace officer called on for assistance, to enter, by force if necessary, that place or premises and to search for and apprehend the child.

- (2) If, the director may make an ex parte application to a judge of the Court or, if no judge is reasonably available, to a justice of the peace, for an order under subsection (3).
- (a) a child who is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under Division 2 or this Division has left or been removed from the custody of the direct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director, and
- (b) the director has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child may be found in a place or premises,
- (3) A judge of the Court or a justice of the peace, if satisfied on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hat the child may be found in the place or premises, may make an order authorizing the director or any person named in the order and any peace officer called on for assistance, to enter, by force if necessary, the place or premises specified in the order and to search for and remove the child for the purpose of returning the child to the custody of the director.
- (4) If a director has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child

책임자나 명령에 기재된 자 그리고 지원을 위하여 호출된 치안관이 필요한 경우에 물리 력을 사용하여 해당 장소나 구내에 진입하여 아동을 수색하고 체포하는 것을 허가한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자는 법원 판사 또는 합리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판사가 없 는 경우에 치안판사에게 제(3)항의 명령에 대한 일방당사자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 (a) 제 2 절이나 이 절에 따라 책임자가 보호하는 아동이 책임자의 동의 없이 책임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거나 그 보호가 배제되었다.
- (b) 책임자에게 특정 장소나 구내에서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다.
- (3) 법원 판사나 치안판사는 특정 장소나 구내에서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이 고 유력한 근거에 대하여 납득하면, 아동을 책임자의 보호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책임자 나 명령에 기재된 자 그리고 지원을 위하여 호출된 치안관이 필요한 경우에 물리력을 사 용하여 명령에 명시된 장소나 구내에 진입하 여 아동을 수색하고 데리고 나오는 것을 허 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4) 책임자는 제(2)항에 규정된 아동을 특 정 장소나 구내에서 발견할 수 있고 제(3)

referred to in subsection (2) may be found in a place or premises and that the life or health of the child would be seriously and imminently endangered as a result of the time required to obtain an order under subsection (3) or (5), the director may, without an order and by force if necessary, enter that place or those premises for the purposes specified in subsection (3).

- (5) If,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it would be impracticable to appear personally before a judge or justice of the peace to apply for an order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 or (2), the director may make the application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to a judge of the Court or a justice of the peace.
- (6) The information on which an application for an order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is based shall be given on oath and shall be recorded verbatim by the judge or justice who, as soon as practicable, shall cause the record or a transcription of the record, certified by the judge or justice as to time, date and contents, to be filed with the clerk of the Court.
- (7)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6), an oath may be administered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 (8) The information submitted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shall

항과 제(5)항에 따라 명령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으로 인하여 아동의 생명이나 건 강이 심각하고 급박하게 위태로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 는 경우 제(3)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명령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물리력을 사 용하여 해당 장소나 구내에 진입할 수 있다.

- (5) 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명 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판사나 치안판사 앞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법원 판 사나 치안판사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 (6)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에 의한 명령 신청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선서를 한 후 제출한다. 그리고 판사나 치안판사는 이를 말 그대로 정확히 기록하여 시간, 일자 및 내용에 관하여 공인을 하고 그 기록이나 기록의 필사본이 가급적 신속하게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도록 한다.
- (7) 제(6)항의 목적상,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선서를 집행할 수 있다.
- (8)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제 출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nclude the following:

- (a) a statement of the circumstances that make it impracticable for the director to appear personally before a judge of the Court or a justice of the peace;
- (b) the identity of the child, if known;
- (c)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a statement setting out the director's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 (d)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2), a statement setting out the authority under which the director has custody of the child and the director's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child may be found in the place or premises;
- (e) a statement of the director's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child will be found in the place or premises to be searched;
- (f) a statement as to any prior application for an order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the same child of which the director has knowledge.
- (9) A judge of the Court or a justice of the peace referred to in subsection (5) who is satisfied that an application made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may make an order conferring the same authority respecting search and apprehension as may be

- (a) 책임자가 법원 판사나 치안판사 앞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한 진술서
- (b) 알고 있는 경우 아동의 신원
- (c)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는 책임자의 근거를 기 재한 진술서
- (d)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책임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근거가 되는 권한 그리고 특정 장소나 구내에서 아동을 발견할 수 있 다고 믿는 책임자의 근거를 기재한 진술서
- (e) 수색 예정 장소나 구내에서 아동이 발 견될 것이라고 믿는 책임자의 근거에 대한 진술서
- (f) 책임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동일한 아동에 대하여 과거에 이 조에 따라 명령을 신청한 것에 대한 진술서
- (9) 제(5)항에 규정된 법원 판사나 치안판사는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에 의한신청이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면, 수색과 체포에 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내릴 수 있다.

conferred under subsection (1) or (2).

- (a) conforms to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8), and
- (b) discloses reasonable grounds for dispensing with personal appearance for the purpose of making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or (2)
- (10) If a judge of the Court or a justice of the peace makes an order under subsection (9),
- (a) the judge or justice shall complete and sign an order in the prescribed form, noting on its face the time, date and place at which it was made.
- (b) the director, on the direction of the judge or justice, shall complete, in duplicate, a facsimile of the order in the prescribed form, noting on its face the name of the judge or justice making the order and the time, date and place at which it was made, and
- (c) the judge or justice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order has been made, cause the order to be filed with the clerk of the Court.
- (11) An order made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is not subject to challenge by reason only that the circumstances were not such as to make it reasonable to dispense with personal appearance for the purpose of making an

- (a)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 (b)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직접 출석을 생략하는 정당한 근거를 공개한 다.
- (10) 법원 판사나 치안판사가 제(9)항에 따라 명령을 하면, 다음과 같다.
- (a) 판사나 치안판사는 앞면에 그 시간, 일 자 및 장소가 기재된 명령을 규정된 양식으 로 작성하여 서명한다.
- (b) 책임자는 판사나 치안판사의 지시에 따라 앞면에 명령을 내린 판사나 치안판사의이름 그리고 그 시간, 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명령의 복사본을 규정된 양식으로 2 부작성한다.
- (c) 판사나 치안판사는 명령을 한 이후에 가급적 신속하게 그 명령이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도록 한다.
- (11)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에 의한 명령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직접 출석을 생략하기에 정당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 (12)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a director or peace officer may apprehend a child without an order if the director or peace officer has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child's life or health is seriously and imminently endangered because
- (a) the child has been abandoned or lost or has no guardian.
- (b) the child has left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without the consent of the guardian and, as a result, the guardian is unable to provide the child with the necessities of life, or
- (c) the child has been or there is substantial risk that the child will be physically injured or sexually abused.
- (13) A person who is authorized to apprehend a child under subsection (12) and who has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child may be found in a place or premises may, without an order and by force if necessary, enter that place or those premises and search for the child.
- (14)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a director or peace officer may apprehend a child without an order if the director or peace officer has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child has left or been removed from the custody of the

-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나 치안 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은 이유로 아동 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고 급박하게 위태 롭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 거가 있는 경우 명령 없이 아동을 체포할 수 있다.
- (a) 아동이 유기 또는 실종되었거나 아동에 게 후견인이 없다.
- (b) 아동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후견인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후견인이 아동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 (c) 아동이 상해나 성적 학대를 받았거나 상해나 성적 학대를 받을 실질적 위험이 있다.
- (13) 제(12)항에 따라 아동을 체포할 권한 이 있고 특정 장소나 구내에서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를 가진 자는 명령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물리력을 사용하여 해당 장소나구내에 진입에 진입하여 아동을 수색할 수 있다.
- (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나 치안 관은 아동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후견인의 보호에서 벗어나거나 그 보호가 배제되었다 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는 경우 명령 없이 아동을 체포할 수 있

child's guardian without the consent of the guardian.

19.1 Apprehension in another province

If a child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Alberta is apprehended in another province under the authority of that province's child welfare legislation and placed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by that province's child welfare authorities, the child is deemed to be apprehended under section 19 effective on the day the child is so placed.

20 Notice of apprehension

- (1) If a child has been apprehended, the director shall notify the guardian of the child forthwith
- (a) that the child has been apprehended,
- (b) of the intention, if any, of the director to confine the child pursuant to section 43.1(1), and
- (c) of the intention, if any, of the director to apply for an order pursuant to section 43.1(3).
- (2) Notice under subsection (1) may be by any method and may be oral or in writing.
- (3) Notice under subsection (1)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reasons for the apprehension and the telephone number of the nearest office of the Legal Aid Society of Alberta.

다.

제19.1조(다른 주에서의 체포)

통상적으로 앨버타주에 거주하는 아동은 다른 주의 아동복지 입법권에 따라 다른 주에서 체포되고 다른 주의 아동복지 당국에 의하여 책임자의 보호를 받게 되면, 해당 아동이 보호를 받게 되는 날에 제 19 조에 따라체포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체포통지서)

- (1) 아동이 체포되었다면, 책임자는 즉시 아동의 후견인에게 다음을 통지한다.
- (a) 아동이 체포되었다는 사실
- (b) 해당되는 경우 제 43.1 조제(1)항에 따라 아동을 구금하려는 책임자의 의사
- (c) 해당되는 경우 제 43.1 조제(3)항에 따라 명령을 신청하려는 책임자의 의사
- (2)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할 수 있고 구두 또는 서면일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체포 이유에 대한 진술서와 앨버타주 법률구조협회의 인접 사무소 전화번호가 포함된다.

(4) The validity of proceedings under this Act is not affected if the director is unable, after reasonable effort,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21 Court application after apprehension

- (1) If a child is apprehended under section 19 and is not, within 2 days after being apprehended, returned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or, in the case of a child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another province, placed in the custody of the child welfare authorities of that other province, the director shall apply to the Court in the prescribed form for
- (a) a supervision order,
- (b) a temporary or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 (c) an order returning the child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or
- (d) in the case of a child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another province, an order placing the child in the custody of the child welfare authorities of that other province.
- (2) Repealed RSA 2000 c26(Supp) s11.
- (3)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shall be heard not more than 10 days after the child is apprehended.
- (3.1) Despite section 23(4), notice of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shall be

(4) 이 법에 따른 절차의 유효성은 책임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한 뒤에도 이 조에 따라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체포 이후 법원 신청)

(1) 아동이 제 19 조에 따라 체포되고 체포 후 2 일 이내에 아동의 후견인의 보호로 복귀되지 아니하거나 통상적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에 해당 주 아동복지 당국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책임자는 규정된 양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법원에 신청한다.

- (a) 보호관찰명령
- (b) 임시후견명령이나 영구후견명령
- (c) 아동을 아동의 후견인의 보호로 복귀시 키라는 명령
- (d) 통상적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해당 주 아동복지 당국의 보호를 받으 라는 명령
- (2) RSA 2000 년 법률 제 26 호(Supp) 제 11조에 따라 폐지
- (3)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아동이 체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리를 진행한다.
- (3.1) 제 23 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 항에 따른 신청의 통지서는 적어도 심리기일

served at least 2 days before the date fixed for the hearing.

- (4) If,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referred to in subsection (3), the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may be withdrawn at the time and place scheduled for the hearing of the application.
- (a) a child is returned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or placed in the custody of the child welfare authorities of the province in which the child is ordinarily resident, or
- (b) a family enhancement agreement or custody agreement is entered into in respect of the child,
- (5) to (10) Repealed 2003 c16 s22.
- (11) The Court, on hearing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may
- (a) if it is not satisfied that the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order the director to return the child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or
- (b) if it is satisfied that the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make any order with respect to the child that it may make under this Division.

21.1 Initial custody

(1) If a director makes an application to the Court under section 21(1)(b) for a

2일 전까지 송달한다.

-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3)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 에 대한 심리가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 (a) 아동이 아동의 후견인의 보호로 복귀되 거나 아동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주의 아동 복지 당국의 보호를 받는다.
- (b) 아동에 관하여 가족증진계약이나 보호 계약이 체결된다.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22 조에 따라 폐지

- (11) 법원은 이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동을 아동의 후견인의 보호로 복귀시키라고 책임자에게 명령한다.
- (b)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동에 대하여 이 절에 따라 가능한 명령을 내린다.

제21.1조(초기 보호)

(1) 책임자는 제 21 조제(1)항제(b)호에 따라 법원에 임시후견명령이나 영구후견명령을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the director must also apply for an order for custody of the child until the application for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for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is withdrawn or disposed of.

- (2) On hearing a custody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the Court must, until the director's application for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is withdrawn or disposed of.
- (a) order the child into the custody of a director, or
- (b) order that the child be returned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 (3) If an order is made under subsection(2)(a), the Court may
- (a) include terms for access to be provided between the child and the guardian or any other person with whom the child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and
- (b) require an assessment of the child and of the child's guardian and any other person who may be given custody of the child when the application for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is disposed of.
- (4) Despite section 26,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신청하면, 임시후견명령이나 영구후견명령 신청이 철회되거나 처분될 때까지 아동의 보 호에 관한 명령도 신청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보호 신청 심리에서 법 원은 책임자의 임시후견명령이나 영구후견명 령 신청이 철회되거나 처분될 때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하여야 한다.
- (a) 책임자가 아동을 보호하도록 명령한다.
- (b) 아동을 아동의 후견인의 보호로 복귀시키라고 명령한다.
- (3) 제(2)항제(a)호에 따라 명령을 하면, 법 원은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아동 그리고 후견인이나 아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다른 자 사이에 제공되는 면접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다.
- (b) 아동에 대한 평가, 아동의 후견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임시후견명령 신청이 처분되는 때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자에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 (4) 제 26 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신청 은 다음과 같다.

- (a) is summary in nature, and
- (b) may be adjourned for a period of no more than 14 days at a time unless the parties agree to a longer adjournment;

however, the total adjournment period under this clause shall not exceed 42 days.

- (5) If the Court adjourns a hearing under subsection (4), it must make an interim order providing for the custody of the child, and the order may include terms respecting access to the child.
- (5.1) The Court may hear an application for an adjournment under subsection (4) by videoconference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it is proper to do so.
- (6) Repealed 2008 c31 s7.

22 Custody on apprehension

If a child has been apprehended, a director has exclusive custody of the child and is responsible for the child's care, maintenance and well—being until the director has returned the child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or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21 has been disposed of.

22.1 Health care on apprehension

(1) If the guardian of a child who has been apprehended is unable or unavailable to consent to the provision of essential

- (a) 본질적으로 약식이다.
- (b) 한 번에 14 일 이하의 기간으로 연기될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이보다 긴 연기기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이 호에 따른 전체 연기 기간은 42 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5)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심리를 연기하면, 아동의 보호를 정하는 임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아동의 면접에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 (5.1) 법원은 화상회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제(4)항에 따른 연기 신청을 화상회의로 심리할 수 있다.
- (6)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7 조에 따라 폐지

제22조(체포에 따른 보호)

아동이 체포되면, 책임자는 아동이 아동의 후견인의 보호로 복귀하거나 제 21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동을 배타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돌봄, 생계 및 행복을 책임진다.

제22.1조(체포에 따른 의료)

(1) 체포된 아동의 후견인이 의사나 치과 의사가 권고한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 외 과 치료, 치과 치료나 다른 교정 치료 제공 medical, surgical, dental or other remedial treatment for the child that is recommended by a physician or dentist, a director may authorize the provision of any recommended treatment for the child.

- (2) If the guardian of a child who has been apprehended refuses to consent to essential medical, surgical, dental or other remedial treatment for the child that is recommended by a physician or dentist, the director must apply to the Court for an order authorizing the treatment.
- (3) Despite section 23(4), notice of the date, time and place at which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2) is to be heard must be served not less than one day before the date fixed for the hearing.
- (4) A director may make an application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to a judge of the Court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5) to (10), in which case section 19(11) applies to the order.
- (5) If it is satisfied that the treatmen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e Court may authorize the treatment notwithstanding that the guardian of the child refuses to consent to the treatment.
- (6) If the Court authorizes treatment under this section, the authorization extends to the conclusion of the course of treatment unl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even if a

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후견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책임자는 아동에 게 권고된 치료의 제공을 허가할 수 있다.

- (2) 체포된 아동의 후견인이 의사나 치과 의사가 권고한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 외 과 치료, 치과 치료나 다른 교정 치료에 대 한 동의를 거절한 경우 책임자는 치료를 허 가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3) 제 23 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리하는 일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서는 적어도 심리기일 1 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4) 책임자는 제 19 조제(11)항이 명령에 적용되는 경우에 제 19 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법원 판사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 (5) 치료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아동의 후견인이 치료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더라도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
- (6) 법원이 이 조에 따라 치료를 허가하는 경우 그 허가는 법원이 다르게 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책임자가 아동의 보호나 후견을 종 료하더라도 치료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director ceases to have custody or guardianship of the child.

(7) If a child is treated pursuant to an order under this section, no liability attaches to the person treating the child by reason only that the guardian of the child did not consent to the treatment.

22.2 Health care under guardianship

- (1) If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refuses to consent to essential medical, surgical, dental or other remedial treatment that is recommended by a physician or dentist, the director must apply to the Court for an order authorizing the treatment.
- (2) Despite section 23(4), notice of the date, time and place at which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is to be heard must be served not less than one day before the date fixed for the hearing.
- (3) If the Court authorizes treatment under this section, the authorization extends to the conclusion of the course of treatment unl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even if a director ceases to have guardianship of the child.
- (4) If a child is treated pursuant to an order under this section, no liability attaches to the person treating the child by reason only that the child did not consent to the

된다.

(7) 아동이 이 조의 명령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경우 아동의 후견인이 치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을 치료하는 자에게 채무가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22.2조(후견에 따른 의료)

- (1) 임시후견명령 또는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인 아동이 의사나 치과 의사가 권고한 필수적인 의료, 외과 치료, 치과 치료나 다른 교정 치료에 대한 동의를 거절한 경우 책임자는 치료를 허가하는 명령 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2) 제 23 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리하는 일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서는 적어도 심리기일 1 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3) 법원이 이 조에 따라 치료를 허가하는 경우 그 허가는 법원이 다르게 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책임자가 아동의 후견을 종료하더 라도 치료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 (4) 아동이 이 조의 명령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경우 아동이 치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을 치료하는 자에게 채무가 귀속되지 아니한다.

treatment.

23 Notice of application

- (1) Notice of the nature, date, time and place of every hearing under this Division shall be served by the applicant on
- (a) all the guardians of the child,
- (b) a director, if the applicant is not a director.
- (c)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 (d) a foster parent of the child, if the child was in the continuous care of that foster parent for more than 6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application, and
- (e) any other person in whose care the child was when the child was apprehended, if the child was in the continuous care of that person for more than 6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application.
- (2) Notice under subsection (1) shall be served personally on
- (a) all the guardians of the child, and
- (b)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 (3) Notice under subsection (1) may be served by mail on
- (a) a director,

제23조(신청 통지서)

- (1) 신청인은 이 절에 따른 모든 심리의 성격, 일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서를 다음과 같은 자에게 송달한다.
- (a) 아동의 후견인 전원
- (b) 신청인이 책임자가 아닌 경우 책임자
- (c) 아동이 12세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
- (d) 아동이 신청 직전에 6 개월 이상 위탁부 모의 돌봄을 계속하여 받고 있었던 경우 아 동의 위탁부모
- (e) 아동이 신청 직전에 6 개월 이상 특정인의 돌봄을 계속하여 받고 있었던 경우 아동이 체포되었을 때에 아동을 돌보고 있었던자
- (2) 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직접 송달한다.
- (a) 아동의 후견인 전원
- (b) 아동이 12세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
- (3) 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한다.
- (a) 책임자

- (b) a foster parent, and
- (c) a person in whose care the child was when the child was apprehended.
- (4) Notice under subsection (1) shall be served at least 5 days before the date fixed for the hearing.
- (5)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it is proper to do so, the Court, on the ex parte application of the applicant at any time before the time fixed for the hearing, may do any of the following:
- (a) authorize service ex juris, service by registered mail or any other form of substitutional service;
- (b) if an order is made under clause (a), extend or reduce the time within which service may be effected;
- (c) if an order is made under clause (a), extend the time within which a hearing shall be held;
- (d) authorize service on a guardian appointed under the Adult Guardianship and Trusteeship Act in respect of the guardian of a child instead of on the guardian of the child;
- (e) authorize the giving of a shorter period of notice;
- (f) dispense with service on any person other than the director.

- (b) 위탁부모
- (c) 아동이 체포되었을 때에 아동을 돌보고 있었던 자
- (4) 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적어도 심리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한다.
- (5)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심리기일 전에 언제든지 신청인의 일방당사자 신청 신 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관외송달, 등기우편 송달 또는 다른 형식의 대체송달을 허가한다.
- (b) 제(a)호에 따라 명령을 한 경우 송달이 가능한 시한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 (c) 제(a)호에 따라 명령을 한 경우 심리 개최 시한을 연장한다.
- (d) 아동의 후견인의 경우 아동의 후견인 대신에 「성년 후견 및 수탁법」에 따라 임 명된 후견인에 대한 송달을 허가한다.
- (e) 고지기간의 단축을 허가한다.
- (f) 책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송달을 생략한다.

- (6) Whether or not authorization has been given under subsection (5), the Court may do any of the following at the time of the hearing:
- (a) approve service made in a form it considers adequate in the circumstances;
- (b) approve a shortened period as sufficient notice;
- (c) dispense with service on any person other than the director.

24 Exclusion from hearing

- (1) Subject to subsection (2),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Court may exclude any person including a guardian of the child or the child from all or part of the proceedings if the Court considers that person's presence to be unnecessary to the conduct of the proceedings.
- (a) the evidence or information presented to the Court may be seriously injurious or seriously prejudicial to the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hearing under this Division or to a child who is a witness at a hearing under this Division, or
- (b) it would be in the interest of public morals, the maintenance of order 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to exclude any or all members of the public from the courtroom,
- (2) The Court may not exclude a director

- (6)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은 심리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사정상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의 송 달을 승인한다.
- (b) 단축된 기간을 고지에 충분한 것으로 승인한다.
- (c) 책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송달을 생략한다.

제24조(심리에서의 배제)

- (1) 제(2)항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정인의 출석이 절차 진행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동의 후견인이나 아동을 포함한 자를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배제할 수 있다.
- (a) 법원에 제출된 증거나 정보가 이 절에 따른 심리의 대상인 아동 또는 이 절에 따른 심리의 증인인 아동에게 아주 해롭거나 심각 한 피해를 줄 수 있다.
- (b) 법정에서 일반 방청객의 일부 또는 전 원을 배제하는 것이 공중도덕, 질서 유지 또 는 법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것이다.
- (2) 법원은 책임자 또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or a lawyer representing any of the parties.

(3) At the outset of a hearing under this Division, the Court shall inform the parties of their right to make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to exclude persons.

25 Repealed 2003 c16 s27.

26 Adjournments

- (1) The Court may adjourn a hearing under this Division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42 days or for any longer period that the Court, in its discretion, directs.
- (2) If the Court adjourns a hearing, the Court must make an interim order in respect of the child who is the subject of the hearing providing for the custody of or access to the child during the adjournment.
- (3)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the adjournment of a hearing under section 21.1.

27 General powers of Court

After a hearing under this Division, the Court may make any order it has jurisdiction to make under this Division or Division 4 if it is satisfied as to the appropriateness of that order notwithstanding that it is not the order applied for.

28 Supervision order

변호사를 배제할 수 없다.

(3) 법원은 이 절에 따른 심리를 시작할 때에 제(1)항에 따라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한다.

제25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27조에 따라 폐지

제26조(연기)

- (1) 법원은 이 절에 따른 심리를 42일 이하의 기간 또는 법원이 그 재량으로 이보다 길게 정하는 기간으로 연기할 수 있다.
- (2) 법원은 심리를 연기하면, 심리의 대상인 아동에 대하여 연기 중의 보호와 면접을 정 하는 임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 (3) 이 조는 제 21.1 조에 따른 심리 연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7조(법원의 전권)

법원은 이 절에 따른 심리 이후에 신청된 명령이 아니더라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 절 또는 제 4 절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8조(보호관찰명령)

- (1) The Court may make a supervision order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6 months if it is satisfied that
- (a) a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and
- (b) mandatory supervision of the child and a person residing with the child and the compliance by that person with the terms of the order are necessary to adequately protect the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of the child.
- (2)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recommendations of the director with respect to the terms of the supervision before making an order under this section.
- (3) A supervision order shall
- (a) require that a director supervise the child within the residence of the child, and
- (b) set out reasonable terms in respect of
- (i) the frequency of visits at the residence by a director,
- (ii) the assessment or treatment of the child or any person residing with the child, and
- (iii) any other terms that the Court considers necessary.

29 Breach of supervision order

(1) If, on an application by a director in the prescribed form, the Court is satisfied that a guardian or other person residing with a

- (1)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보호관찰명령을 내린다.
- (a)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
- (b) 아동의 안전, 무사 또는 발달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및 아동과 함께 거주 하는 자 그리고 그 동거인이 명령의 조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의무적 감독이 필요하다.
- (2) 법원은 이 조에 따라 명령을 하기 전에 보호관찰명령의 조항에 관한 책임자의 권고 를 고려한다.
- (3) 보호관찰명령은 다음과 같다.
- (a) 책임자가 아동의 주거 내에서 아동을 감독하도록 요구한다.
- (b) 다음에 대하여 합리적 조항을 정한다.
- (i) 책임자의 주거 방문 빈도
- (ii) 아동 또는 아동과 거주하는 자에 대한 평가나 처우
- (iii)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항

제29조(보호관찰명령의 위반)

(1) 법원은 책임자의 규정된 양식에 따른 신청으로 후견인 또는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자가 보호관찰명령의 조항을 준수하지 child has failed to comply with a term of a supervision order, the Court may, without hearing any further evidence as to the child's need for intervention,

- (a) renew, vary or extend the supervision order, or
- (b) make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in respect of the child.
- (2) Section 23 applies to the service of notice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30 Restraining order

- (1) If a child has been apprehended under section 19 or is the subject of a supervision order or a temporary or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and a director has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person has physically or emotionally injured or sexually abused the child, or is likely to physically or emotionally injure or sexually abuse the child or has encouraged or is likely to encourage the child to engage in prostitution, the director may apply to the Court of Queen's Bench for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orders:
- (a) an order restraining that person from residing with the child;
- (b) an order restraining that person from contacting the child or associating in any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면, 아동에 대한 개입 필요성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심리하지 아니 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보호관찰명령을 갱신, 변경 또는 연장한다.
- (b) 아동에 대하여 임시후견명령이나 영구 후견명령을 내린다.
- (2) 제 23 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심리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통지서의 송달에 적용된다.

제30조(금지명령)

- (1) 아동이 제 19 조에 따라 체포되었거나 보호관찰명령 또는 임시후견명령이나 영구후 견명령의 대상이고 책임자에게 특정인이 아 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손상하거나 성 적으로 학대하거나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 적으로 손상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할 가능성 이 있거나 아동을 매춘에 관여하도록 조장하 거나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으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명령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 두를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a) 특정인이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제 한하는 명령
- (b) 특정인이 아동과 접촉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동과 관계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

way with the child.

- (2) The Court of Queen's Bench may make an order under this section for periods of not more than 6 months each.
- (3) If the Court of Queen's Bench makes an order under this section restraining a parent of the child, the Court may make a further order prescribing the contributions, financial or otherwise, to be made by that parent for the maintenance of the child.
- (4) A person who is restrained under a restraining order may apply to the Court of Queen's Bench for a review of the order.
- (5) On hearing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4), the Court of Queen's Bench may continue, vary or terminate the order.

31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 (1) The Court may make an order appointing a director as a guardian of a child if it is satisfied that, but it can be anticipated that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child may be returned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or, if the child is 16 years of age or older, the child will be able to live independently.
- (a) the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and
- (b) the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of the child may not be adequately protected if the child remains with the child's guardian,
- (2) If the Court makes an order under

령

- (2) 고등법원은 각각의 기간을 6 개월 이하로 하여 이 조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3) 고등법원은 이 조에 따라 아동의 부모를 제한하는 명령을 하면, 그 부모가 아동의 생계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도록 정하는 명령을 추가로 할 수 있다.
- (4) 금지명령으로 제한을 받는 자는 고등법 원에 명령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5) 고등법원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그 명령을 지속,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제31조(임시후견명령)

- (1)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지만 합리적 기간 내에 아동이 후견인의 보호로 복귀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아동이 16 세 이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 책임 자를 아동의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명령을 내 릴 수 있다.
- (a)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다.
- (b) 아동이 후견인과 계속 함께 하면 아동의 안전, 무사 또는 발달이 충분히 보호될수 없다.
- (2) 법원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면, 책

subsection (1), the director becomes a joint guardian with any other guardian of the child and, subject to any order under subsection (4), may exercise all of the authority of a guardian of the child to the exclusion of any other guardian except with respect to a proceeding under Part 2, Division 1.

- (3) Repealed 2003 c16 s32.
- (4) On making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at any time during its term, the Court, on the application of a director, a guardian of the child,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or any other person with whom the child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may, on being satisfied that the matter cannot be resolved by agreement or the terms of an agreement have not been complied with, and on consider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director, make an order prescribing
- (a) the access to be provided between the child and a guardian or any other person with whom the child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 (b)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director must consult with the guardian on matters affecting the child,
- (c) if recommended by a director, participation by the child or the guardian or both in treatment or remedial programs, and

임자는 아동의 다른 후견인과 함께 공동 후 견인이 되며 제(4)항의 명령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다른 후견인을 배제하고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2 부제 1 절에 따른 절차에 관한 권한은 예외로 한다.

- (3)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32 조에 따라 폐지
- (4) 법원은 임시후견명령을 내릴 때 또는 그 기간 중에 언제든지 책임자, 아동의 후견 인, 아동이 12 세 이상인 경우에 그 아동 또는 아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다른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안이 계약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계약의 조항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하면 책임자의 권고를 고려하여 다음을 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아동과 후견인 사이 또는 아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다른 자 사이에 얻게되는 면접
- (b) 책임자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 에 대하여 후견인과 협의하여야 하는 조건
- (c) 책임자가 권고를 하는 경우 아동이나 후 견인 또는 둘 모두의 치료나 복원 활동 참여

- (d) any other terms that the Court considers necessary.
- (5) No order under subsection (4)(a) providing for access between a child who is 12 years of age or older and a person with whom the child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shall be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child.
- (6) An order under this section may provide that a guardian, other than the director, or any person who will have custody of the child shall,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submit to an assessment in order to assist the director or the Court, as the case may be, to determine the fitness of the guardian or other person to assume the custody of the child when the order expires or is terminated.
- (7) The Court shall consider the recommendations of the director in respect of an assessment before making an order under subsection (6).
- 31.1 and 31.2 Repealed 2003 c16 s33.

32 Review of supervision or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1) If a child is the subject of a supervision order or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and the appeal period with respect to the order has expired, may apply to the Court in the prescribed form for an order renewing,

- (d)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항
- (5) 제(4)항제(a)호에 따라 12 세 이상인 아동 그리고 아동과 의미가 있는 관계인 자 사이의 면접을 정하는 명령은 그 아동의 동 의 없이 발부되지 아니한다.
- (6) 임시후견명령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는 때에 경우에 따라 책임자나 법원이 아동을 보호할 후견인이나 다른 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른 명령으로 책임자를 제외한 후견인 또는 아동을 보호하게 될 자에게 임시후견명령의 만료 전에 평가서를 제출하라고 정할 수 있다.

(7) 법원은 제(6)항에 따라 명령을 하기 전에 평가서에 관한 책임자의 권고를 고려한다.

제31.1조와 제31.2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33조에 따라 폐지

제32조(보호관찰명령이나 임시후견명령에 대한 심사)

(1) 아동이 보호관찰명령이나 임시후견명령의 대상이고 그 명령의 항소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중 어느 하나는 기존 명령을 갱신, 변경 또는 종료하는 명령 또는 제 28 조, 제 31 조나 제 34 조에 따른 신규 명령을 규정

varying or terminating the original order or for a new order under section 28, 31 or 34.

- (a) a director, at any time during the term of the order, or
- (b) a guardian of the child or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once during the term of the order,
- (2) On reviewing an order under this section, the Court may consider any matter it thinks is relevant, and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 (a) whether the circumstances that caused the child to be in need of intervention have changed;
- (b) the intervention services that have been provided to the child or the family of the child;
- (c) repealed 2008 c31 s9;
- (d) whether a guardian, other than the director, has complied with the order.
- (3) Unless it is satisfied that it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 order otherwise, the Court shall, despite section 33, extend the period of the original order pending the disposition of the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 33 Total cumulative time in the care of a director

된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a) 책임자. 명령의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b) 아동의 후견인 또는 아동이 12 세 이상 인 경우에 그 아동. 명령의 기간 이내에 1 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2) 이 조에 따라 명령을 심사하는 경우 법 원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음을 검토한다.
- (a)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게 만든 상황이 변하였는지 여부
- (b) 아동 또는 아동의 가족에게 제공되었던 개입서비스
- (c)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9 조에 따라 폐지
- (d) 책임자를 제외한 후견인이 명령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
- (3) 법원은 다르게 명령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면, 제 33 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기존 명령의 기간 을 연장한다.

제33조(책임자 보호의 전체 누적 시간)

- (1)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child is in the care of a director when the child is the subject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a) a custody agreement under section 9 or 57.2(2);
- (b) a custody order under section 21.1(2)(a);
- (c)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under subsection (3) or section 29(1)(b) or 31;
- (d) an extension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under section 32(3);
- (e) an interim order granting custody to a director under section 26(2).
- (2) The total cumulative time during which a child is in the care of a director shall not exceed
- (a) 9 months if the child is under the age of 6 years, or
- (b) 12 months if the child is 6 years of age or older, or if the child attains the age of 6 years while in the care of a director.
- (3) If the total cumulative time during which a child is in the care of a director reaches the maximum set out in subsection (2) in respect of that child, the Court may, notwithstanding subsection (2), make one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for one period of not more than 6 months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 (1) 이 조의 목적상, 아동은 다음 중에서 하나 이상의 대상이면 책임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 (a) 제 9 조나 제 57.2 조제(2)항에 따른 보호계약
- (b) 제 21.1 조제(2)항제(a)호에 따른 보호 명령
- (c) 제(3)항 및 제 29 조제(1)항제(b)호와 제 31 조에 따른 임시후견명령
- (d) 제 32 조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명령의 연장
- (e) 제 26 조제(2)항에 따라 책임자의 보호를 허가하는 임시 명령
- (2) 아동이 책임자의 보호를 받는 전체 누적 시간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a) 아동이 6세 미만인 경우 9개월
- (b) 아동이 6 세 이상이거나 책임자의 보호 중에 6세가 되는 경우 12개월
- (3) 아동이 책임자의 보호를 받는 전체 누적 시간이 해당 아동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한계에 도달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1 회에 한하여 그 기간이 6 개월 이하인 임시후 견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there are good and sufficient reasons to do so, and
- (b) it can be anticipated that the child may be returned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within the period of the order.
- (4) The following shall not be included in a calculation under subsection (2):
- (a) if a period of at least 5 years passes during which a child is not in the care of a director or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any time the child was in the care of a director that preceded that period;
- (b) if a child is the subject of an adoption order or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any time the child was in the care of the director that preceded the date that order was made.
- (5) Despite subsection (2), if the Court adjourns a hearing of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guardianship, the Court shall make an interim order granting custody of the child to a director pending the disposition of the application unless it is satisfied that it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 order otherwise.
- (6) An order under subsection (5) may provide for access to the child.

34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1) The Court, on application pursuant to

- (a)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b) 아동이 명령의 기간 이내에 후견인의 보호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 (4) 다음은 제(2)항에 따른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하다.
- (a) 아동이 책임자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거 나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이 된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전에 아동이 책임자의 보호를 받았던 시간
- (b) 아동이 입양명령이나 개인후견명령의 대상인 경우 해당 명령이 내려진 일자 전에 아동이 책임자의 보호를 받았던 시간
- (5)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영구 후 견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연기하면 신청에 대 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책임자의 아동 보호 를 허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다. 다만, 법 원이 다르게 명령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5)항에 따른 명령으로 아동에 대한 면접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영구후견명령)

(1) 법원은 이 절에 따른 책임자의 신청에

this Division by a director, may make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appointing the director as guardian of the child if it is satisfied that

- (a) the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or is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 (b) the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of the child cannot adequately be protected if the child remains with or is returned to the child's guardian, and
- (c) it cannot be anticipated that the child could or should be returned to the custody of the child's guardian within a reasonable time.
- (2), (3) Repealed 2003 c16 s36.
- (4) If the Court makes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the director is the sole guardian of the person of the child and the Public Trustee is the sole trustee of the estate of the child.
- (5) A director shall, on request, send the Public Trustee a copy of the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 (6), (7) Repealed 2003 c16 s36.
- (8) On making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or at any time during its term, the Court, on the application of a director, a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책임자를 아동의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영구후견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하거나 아동이 임 시후견명령의 대상이다.
- (b) 아동이 후견인과 계속 함께 하거나 후 견인에게 복귀하면 아동의 안전, 무사 또는 발달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다.
- (c) 아동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후견인의 보호로 복귀할 수 있거나 복귀하여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다.
- (2) 및 (3),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36 조 에 따라 폐지
- (4) 법원이 영구후견명령을 내리면, 책임자는 아동의 단독 후견인이 된다. 그리고 공인수탁자는 아동의 재산의 단독 수탁자이다.
- (5) 책임자는 요청에 따라 영구후견명령의 사본을 공인 수탁자에게 발송한다.
- (6), (7)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36 조에 따라 폐지
- (8) 법원은 영구후견명령을 내릴 때 또는 그 기간 중에 언제든지 책임자, 아동의 전 (前) 후견인, 아동이 12 세 이상인 경우에

former guardian of the child,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or any other person with whom the child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may make an order prescribing the access to be provided between the child and the former guardian or that other person.

- (9) No order under subsection (8) relating to a child who is 12 years of age or older shall be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child.
- (10) A director may enter into an agreement in the prescribed form with, providing for visits or other access to be provided between the child and the former guardian or other person.
- (a) a former guardian of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or
- (b) any person who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 (11) No agreement under subsection (10)(b) relating to a child who is 12 years of age or older shall be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child.
- (12) The Court shall not make an order under subsection (8) unless it is satisfied that the access provided by the order will not interfere with the adoption of the child.
- (13) If an order is made under subsection

그 아동 또는 아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다른 자의 신청에 따라 아동 그리고 전 후견 인이나 다른 자 사이에 제공되는 면접을 정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9) 12 세 이상인 아동에 관한 제(8)항에 따른 명령은 아동의 동의 없이 발부되지 아니한다.
- (10) 책임자는 아동 그리고 전 후견인이나 다른 자 사이에 제공되는 방문이나 다른 면 접을 정하는 계약을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 이 규정된 양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 (a)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인 아동의 전 후견 인
- (b)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인 아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자
- (11) 12 세 이상인 아동에 관한 제(10)항제(b)호에 따른 계약은 아동의 동의 없이 체결되지 아니한다.
- (12) 법원은 명령으로 제공되는 면접이 아동의 입양에 개입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제(8)항에 따른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 (13) 제(8)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되면, 책

(8), a director,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or the person to whom access is provided in the order may apply to the Court for a review of the order.

(14) On hearing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3), the Court may continue, vary or terminate the original order.

34.1 Report on guardianship

A director must, with respect to each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for one year or more, report to the Minister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plan for a permanent placement for that child.

35 Termination of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1) If a child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the director, if the director is satisfied that the child should be returned to the guardianship of the person who was the guardian of the child before the agreement or order was made, may apply to the Court for an order terminating the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1.1) I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is terminated pursuant to subsection (1), the person, other than a director, who was the guardian immediately before the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was made is the

임자, 아동이 12 세 이상인 경우에 그 아동 또는 그 명령으로 면접이 제공되는 자는 명 령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4) 법원은 제(1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기존 명령을 지속, 변경 또는 종료 할 수 있다.

제34.1조(후견에 대한 보고)

책임자는 그 기간이 1 년 이상인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인 아동 개개인에 대하여 해당 아동의 영구배치계획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주무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종료)

(1) 아동이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인 경우 책임자는 그 아동이 계약 체결이나 명령 발부 전에 후견인이었던 자의후견으로 복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을 종료하는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1)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이 제 (1)항에 따라 종료되면, 책임자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이나 명령 발부 직전에 후견인이었 던 자가 아동의 후견인이다. 다만, 법원이다르게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guardian of the child unl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2) Repealed 2003 c16 s39.

35.1 Application by former guardian

- (1) If a child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a person who was the child's guardian immediately before the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was made may apply to the Court for an order terminating the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if,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made,
- (a) the child has not been adopted,
- (b) more than one year has elapsed since the period for appealing the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expired or, if the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was appealed, since the appeal was disposed of, and
- (c) more than 2 years has elapsed since the last application brought by the applicant under this section, if any, was disposed of.
- (2) On hearing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the Court may
- (a) terminate the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and appoint the applicant as a guardian of the child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 (i) the applicant is capable of assuming and willing to assume the responsibilities of

(2)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39 조에 따라 폐지

제35.1조(전(前) 후견인)

- (1) 아동이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인 경우 영구후견명령이 내려지기 직전에 아동의 후견인이었던 자는 신청을 할 때에 다음과 같다면 영구후견명령을 종료하는 명령을 법원에신청할 수 있다.
- (a) 아동이 입양되지 아니하였다.
- (b) 영구후견명령의 항소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영구후견명령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때부터 1 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 (c)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이 가장 최근에 이 조에 따라 제기한 신청에 대한 처분이 내려 진 때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 리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 다.
- (a)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영구후견명령을 종료하고 신청인을 아동의 후견인으로 임명 한다.
- (i) 신청인이 아동의 후견 책임을 부담할 수

guardianship of the child, and

- (ii)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at the applicant be appointed a guardian,
- (b) make a supervision order in conjunction with an order described in clause (a), or
- (c) dismiss the application.

36 and 37 Repealed 2003 c16 s39.

38 Parents' marriage

If a child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and subsequently the biological mother and biological father of that child marry each other, the biological father of the child is deemed to have been given or served with all notices required to be given to or served on a guardian of the child before the date of the marriage.

39 Right to custody

A supervision order and the right of a director to the custody of a child when the child is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or the child is the subject of a temporary or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takes precedence over the rights given by any order not made under this Act respecting custody, access, contact, parenting time or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whether that order

(a) was granted to a person who is a party

있고 이를 부담할 의지가 있다.

- (ii) 신청인을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
- (b) 제(a)호에 규정된 명령과 함께 보호관 찰명령을 내린다.
- (c) 신청을 기각한다.

제36조와 제37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39 조에 따라 폐지

제38조(부모의 혼인)

아동이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이고 그 이후에 해당 아동의 생물학적 어머니와 생물학적 아버지가 혼인을 하면,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혼인일 전에 아동의 후견인에게 교부되거나 송달되어야 하는 모든 통지의 교부나송달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양육권)

보호관찰명령 그리고 아동이 책임자의 보호를 받거나 임시후견명령, 영구후견명령이나 영구후견계약의 대상인 경우에 아동을 보호하는 책임자의 권리는 그 명령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법에 따르지 아니한 명령으로 부여되는 보호, 면접, 접견, 면접교섭 또는 아동의 거주지에 관한 권리에 우선한다.

(a) 이 법에 따른 절차의 당사자인 자 또는

to the proceedings under this Act or not, or

- (b) was granted before or after
- (i) the child came into the custody of a director.
- (ii) the making of the supervision order or the temporary or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or
- (iii) the execution of the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40 Duration of order

- (1)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remains in effect until, whichever occurs first.
- (a) the order expires or is terminated by a court,
- (a.1)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is made in respect of the child,
- (b) the child attains the age of 18 years, or
- (c) the child marries.
- (2)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remains in effect until, whichever occurs first.
- (a) the agreement or order is terminated by a court,
- (b)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is made in respect of the child,
- (c) an adoption order is made in respect of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되었다.

- (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i) 아동이 책임자의 보호를 받기 전이나 후 에 부여되었다.
- (ii) 보호관찰명령 또는 임시후견명령이나 영구후견명령이 발부되기 전이나 후에 부여 되었다.
- (iii) 영구후견계약의 집행 전이나 후에 부여 되었다.

제40조(명령의 기간)

- (1) 임시후견명령은 다음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유효하다.
- (a) 명령이 만료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종료 되는 시점
- (a.1) 아동에 대하여 개인후견명령 명령이 내려지는 시점
- (b) 아동이 18 세가 되는 시점
- (c) 아동이 혼인을 하는 시점
- (2)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은 다음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유효하 다.
- (a) 계약이나 명령이 법원에 의하여 종료되는 시점
- (b) 아동에 대하여 개인후견명령 명령이 내려지는 시점
- (c) 아동에 대하여 입양명령이 내려지는 시

the child,

- (d) the child attains the age of 18 years, or
- (e) the child marries.

41 Repealed 2003 c16 s41.

42 Death of child

- (1) When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dies, the director may
- (a) consent to an autopsy of the body of the child, and
- (b) arrange for the burial or other disposition of the body of the child.
- (2) When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dies, the director may arrange for the burial or other disposition of the body of the child if
- (a) the director is unable after making reasonable efforts to locate the other guardian of the child within a reasonable time, or
- (b) the other guardian of the child is unable to pay for the burial or other disposition of the body of the child.

Division 4 Secure Services

43 Repealed 2003 c16 s43.

점

- (d) 아동이 18 세가 되는 시점
- (e) 아동이 혼인을 하는 시점

제41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41조에 따라 폐지

제42조(아동의 사망)

- (1)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 인 아동이 사망하면, 책임자는 다음을 이행 할 수 있다.
- (a) 아동의 시신에 대한 검시에 동의한다.
- (b) 아동의 시신의 매장이나 다른 처리를 준비한다.
- (2) 임시후견명령의 대상인 아동이 사망한 경우 책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아동의 시신의 매장이나 다른 처리를 준 비할 수 있다.
- (a) 책임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한 뒤에도 합 리적 기간 내에 아동의 다른 후견인의 소재 를 파악할 수 없다.
- (b) 아동의 다른 후견인이 아동의 시신의 매장이나 다른 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

제4절 보안서비스

제43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43조에 따라 폐지

43.1 Secure services certificate

- (1) Subject to subsection (2), if a child, and a director has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irector may issue a secure services certificate in the prescribed form, and on issuing it the director may convey the child, and may detain the child while the child is being conveyed, to a secure services facility and may confine the child in a secure services facility.
- (a) other than a youth who is the subject of a custody agreement under section 57.2(2), is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 (b) is the subject of a supervision order,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or
- (c) is the subject of a family enhancement agreement under section 8.
- (d) the child is in a condition presenting an immediate danger to the child or others.
- (e) it is necessary to confine the child in order to stabilize and assess the child, and
- (f) less intrusive measures are not adequate to sufficiently reduce the danger,
- (2) A director may not issue a secure services certificate respecting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supervision order, a custody agreement under section 9 or a

제43.1조(보안서비스 증명서)

- (1) 제(2)항을 조건으로 하여, 아동이 제(a)호, 제(b)호 및 제(c)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책임자는 제(d)호, 제(e)호 및 제(f)호에 해당한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으면, 규정된 양식으로 보안서비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자는 보안서비스 증명서를 발급하면, 아동을 보안서비스시설에 위탁하고 아동이 위탁되는 기간에 아동을 유치할 수 있다. 으며 아동을 보안서비스시설에 구금할 수 있다.
- (a) 제 57.2 조제(2)항의 보호계약의 대상인 청소년을 제외하고, 책임자의 보호를 받는 다.
- (b) 보호관찰명령, 임시후견명령 또는 영구 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이다.
- (c) 제 8 조의 가족증진계약의 대상이다.
- (d) 아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유발하는 상황이다.
- (e) 아동을 안정시키고 평가하기 위하여 구 금이 필요하다.
- (f) 침해가 덜한 조치로는 위험을 충분히 낮 추는 데 적절하지 아니하다.
- (2) 책임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호관찰명령, 제 9 조의 보호계약 또는 제 8 조의 가족증진계약의 대상인 아동에 관한 보안서비스 증명서를 발부할 수 없다.

family enhancement agreement under section 8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guardian.

- (3) If a director confines a child pursuant to subsection (1),
- (a) the director must appear before the Court within 3 days after the confinement to show cause why the certificate was issued, and
- (b) the director may also apply in the prescribed form for a secure services order in respect of the child for a further period of not more than 7 days if it is necessary
- (i) to stabilize the child, or
- (ii) to assess the child and prepare a plan for services in the prescribed form.
- (3.1) The Court may hear a show cause or application for a secure services order under subsection (3) by videoconference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it is proper to do so.
- (3.2) If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it would be impracticable to appear personally before a judge or justice of the peace, the director may show cause or make the application to a judge of the Court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43.2.
- (a) to show cause in accordance with

- (3)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아동을 구금하면 다음을 이행한다.
- (a) 구금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증명서 발급 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 (b)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아동에 대하여 그 기간이 7 일 이 하인 보안서비스명령을 규정된 양식으로 추 가 신청할 수 있다.
- (i) 아동을 안정시킨다.
- (ii) 아동을 평가하고 규정된 양식으로 서비 스 계획을 준비한다.
- (3.1) 법원은 화상회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제(3)항에 따른 이유 증명이나 보안서비스명령 신청을 화상회의로 심리할 수 있다.
- (3.2) 책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판사나 치안판사 앞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제 43.2 조에 따라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판사나 치안판사에게 이유를 증명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 (a) 제(3)항제(a)호에 따라 이유를 증명한

subsection (3)(a), or

- (b) to apply for an order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3)(b),
- (4) If a director confines a child pursuant to subsection (1), the director must serve on the child and on the guardian, if the guardian consented to the issuing of the secure services certificate, not more than one day after the certificate is issued
- (a) a copy of the secure services certificate showing the reason for confinement and the duration of the certificate,
- (b) a notice of the date, time and place at which the appearance to show cause under subsection (3)(a) will be held, and
- (c) an application, if any, for a further period of confinement under subsection (3)(b).
- (5) A secure services certificate or order is sufficient authority for any person to confine the child in a secure services facility.
- (6) An application pursuant to subsection
- (3) may be heard by a judge of the Court, a judge of the Court of Queen's Bench or a justice of the peace.
- (7) The judge or justice of the peace that hears an application pursuant to subsection(3) may make a secure services order in respect of a child for a period of not more

다.

- (b) 제(3)항제(b)호에 따라 명령을 신청한다.
- (4)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아동을 구금 하면, 보안서비스 증명서 발급일부터 1 일 이내에 해당 아동 그리고 그 후견인이 보안 서비스 증명서 발급에 동의한 경우에 후견인 에게 다음을 송달하여야 한다.
- (a) 구금 이유와 증명서의 기간이 기재된 보 안서비스 증명서의 사본
- (b) 제(3)항제(a)호에 따라 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출석하는 일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서
- (c) 제(3)항제(b)호에 따라 구금기간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 그 신청서
- (5) 보안서비스 증명서나 보안서비스명령은 아동을 보안서비스시설에 구금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된다.
- (6) 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또는 치안판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심리할 수 있다.
- (7)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심리한 판사나 치안판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구 금기간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동 에 대하여 그 기간이 7 일 이하인 보안서비

than 7 days if the judge or justice of the peace is satisfied that a further period of confinement is necessary

- (a) to stabilize the child, or
- (b) to assess the child and prepare a plan for services.
- (8) If a judge or justice of the peace makes a secure services order under subsection(7), a director must
- (a) serve a copy of the secure services order on the child not more than one day after it is granted, and
- (b) notify a guardian of the child forthwith by any method, orally or in writing.

43.2 Application for secure services order by telecommunication

- (1) If the director shows cause or makes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43.1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the information on which the application or show cause is based shall be given on oath and shall be recorded verbatim by a judge of the Court who, as soon as practicable, shall cause the record or a transcription of the record, certified by the judge as to time, date and contents, to be filed with the clerk of the Court.
-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an oath may be administered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스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아동을 안정시킨다.
- (b) 아동을 평가하고 서비스 계획을 준비한 다.
- (8) 판사나 치안판사가 제(7)항에 따라 보 안서비스명령을 내리면, 책임자는 다음을 이 행하여야 한다.
- (a) 명령일부터 1 일 이내에 보안서비스명령의 사본을 아동에게 송달한다.
- (b) 구두 또는 서면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아동의 후견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43.2조(원거리 통신에 의한 보안서비스명령 신청)

- (1) 책임자가 제 43.1 조에 따른 이유 증명이나 신청을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하는 경우 신청이나 이유 증명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선서를 한 후 제출한다. 그리고 법원 판사는 이를 말 그대로 정확히 기록하여 시간, 일자 및 내용에 관하여 공인을하고 그 기록이나 기록의 필사본이 가급적신속하게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도록 한다.
- (2) 제(1)항의 목적상,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선서를 집행할 수 있다.

- (3) The information submitted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must include a statement of the circumstances that make it impracticable for the director to appear personally before a judge of the Court or a justice of the peace.
- (4) A judge of the Court referred to in subsection (1) may make an order under section 43.1 if the judge is satisfied that an application made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conforms to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3).
- (5) If a judge of the Court makes an order pursuant to subsection (4),
- (a) the judge shall complete and sign an order in the prescribed form, noting on its face the time, date and place at which it was made,
- (b) the director, on the direction of the judge, shall complete, in duplicate, a facsimile of the order in the prescribed form, noting on its face the name of the judge making the order and the time, date and place at which it was made, and
- (c) the judge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order has been made, cause the order to be filed with the clerk of the Court.
- (6) An order made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is not subject to challenge by reason only that the circumstances were not such as to make it reasonable to dispense with personal

- (3)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제출되는 정보에는 책임자가 법원 판사나 치안 판사 앞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4) 제(1)항에 규정된 법원 판사는 전화나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에 의한 신청이 제(3)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제 43.1 조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5) 법원 판사가 제(4)항에 따라 명령을 하면, 다음과 같다.
- (a) 판사는 앞면에 그 시간, 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명령을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서 명한다.
- (b) 책임자는 판사의 지시에 따라 앞면에 명령을 내린 판사의 이름 그리고 그 시간, 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명령의 복사본을 규정된 양식으로 2부 작성한다.
- (c) 판사는 명령을 한 이후에 가급적 신속하게 그 명령이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도록 한다.
- (6)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에 의한 명령은 신청을 위한 직접 출석을 생략하기에 정당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제 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ppearance for the purpose of making an application.

44 Secure services order

- (1) If a child, the director may make an ex parte application to the Court for a secure services order.
- (a) other than a youth who is the subject of a custody agreement under section 57.2(2), is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 (b) is the subject of a supervision order,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or
- (c) is the subject of a family enhancement agreement under section 8,
- (2) The Court may make a secure services order in respect of a child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5 days if it is satisfied that
- (a) the child is in a condition presenting an immediate danger to the child or others,
- (b) it is necessary to confine the child in order to stabilize and assess the child, and
- (c) less intrusive measures are not adequate to sufficiently reduce the danger.
- (3) If the Court makes a secure services order under subsection (2), a director must
- (a) serve a copy of the secure services order on the child not more than one day

제44조(보안서비스명령)

- (1) 아동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자는 법원에 보안서비스명령에 대한 일 방당사자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 (a) 제 57.2 조제(2)항의 보호계약의 대상인 청소년을 제외하고, 책임자의 보호를 받는 다.
- (b) 보호관찰명령, 임시후견명령 또는 영구 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이다.
- (c) 제 8 조의 가족증진계약의 대상이다.
- (2)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아동에 대하여 그 기간이 5 일 이하인 보안서비스명 령을 내릴 수 있다.
- (a) 아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유발하는 상황이다.
- (b) 아동을 안정시키고 평가하기 위하여 아 동의 구금이 필요하다.
- (c) 침해가 덜한 조치로는 위험을 충분히 낮 추는 데 적절하지 아니하다.
- (3) 법원이 제(2)항에 따라 보안서비스명령을 내리면, 책임자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a) 명령일부터 1 일 이내에 보안서비스명령의 사본을 아동에게 송달한다.

after it is granted, and

- (b) notify a guardian of the child forthwith by any method, orally or in writing.
- (4)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secure services order granted under subsection (2), a director may apply to the Court in the prescribed form for a continuation of the secure services order and the Court may continue the secure services order for an additional period of not more than 5 days if further confinement is necessary
- (a) to stabilize the child, or
- (b) to assess the child and prepare a plan for services in the prescribed form.
- (5) The director must serve the child and a guardian of the child with notice of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4) not less than one day before the hearing date of the application.
- (6)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it is proper to do so, the Court, on the ex parte application of the director, may, at any time before the time fixed for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4), do any of the following:
- (a) authorize service ex juris, service by registered mail or any other form of substitutional service;
- (b) if an order is made under clause (a),

- (b) 구두 또는 서면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아동의 후견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 (4) 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된 보안 서비스명령의 종료 전에 보안서비스명령의 지속을 규정된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추가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 일 이하의 기간을 추가하여 보안서비스명령 을 유지할 수 있다.
- (a) 아동을 안정시킨다.
- (b) 아동을 평가하고 규정된 양식으로 서비 스 계획을 준비한다.
- (5) 책임자는 적어도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 1 일 전에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의 일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서를 아동 그리고 아동의 후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6)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 전에 언제든지 책임자의 일방당사자 신청 신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관외송달, 등기우편 송달 또는 다른 형식의 대체송달을 허가한다.
- (b) 제(a)호에 따라 명령을 한 경우 송달이

extend or reduce the time within which service may be effected;

- (c) if an order is made under clause (a), extend the time within which a hearing shall be held;
- (d) authorize service on a guardian appointed under the Adult Guardianship and Trusteeship Act in respect of the guardian of a child instead of on the guardian of the child;
- (e) authorize the giving of a shorter period of notice;
- (f) dispense with service on any person.
- (6.1) Whether or not authorization has been given under subsection (6), the Court may do any of the following at the time of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4):
- (a) approve service made in a form it considers adequate in the circumstances;
- (b) approve a shortened period as sufficient notice;
- (c) dispense with service on any person.
- (7) A director must specify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in which a child is to be confined pursuant to a secure services order.
- (8) A secure services order is sufficient authority for any person to confine the child

가능한 시한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 (c) 제(a)호에 따라 명령을 한 경우 심리 개최 시한을 연장한다.
- (d) 아동의 후견인의 경우 아동의 후견인 대신에 「성년 후견 및 수탁법」에 따라 임 명된 후견인에 대한 송달을 허가한다.
- (e) 고지기간의 단축을 허가한다.
- (f) 송달을 생략한다.
- (6.1)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유무와 관계 없이 법원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사정상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의 송 달을 승인한다.
- (b) 단축된 기간을 고지에 충분한 것으로 승인한다.
- (c) 송달을 생략한다.
- (7) 책임자는 아동이 보안서비스명령에 따라 구금될 보안서비스시설을 명시하여야 한다.
- (8) 보안서비스명령은 아동을 보안서비스시설에 구금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된다.

in a secure services facility.

- (9) If the Court makes a secure services order, it shall
- (a) inform the child of the reason for doing so,
- (b) provide the child, the child's guardian and the child's lawyer, if any, with a copy of the order and a written statement showing
- (i) the reasons for the confinement,
- (ii) the period of the confinement and the date on which it terminates.
- (iii) that the order may be reviewed or appealed on the application of the child, the child's guardian or a director,
- (iv) that the child may obtain a copy of the form prescribed for making an application for a review from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and
- (v) that the child may be represented by a lawyer at any application to the Court,
- (vi) repealed 2008 c31 s13,
- (c) provide the child with a written statement showing th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the Child and Youth Advocate, and
- (d) provide the child's guardian with a written statement showing the address and

- (9) 법원은 보안서비스명령을 내리면, 다음을 이행한다.
- (a) 아동에게 명령 발부 이유를 고지한다.
- (b) 아동, 아동의 후견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아동의 변호사에게 명령의 사본과 다 음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공한다.
- (i) 구금 이유
- (ii) 구금기간과 구금이 종료되는 일자
- (iii) 아동, 아동의 후견인 또는 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명령이 심사를 받거나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 (iv) 아동이 보안서비스시설 책임자에게서 규정된 양식의 심사 신청서 사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v) 아동의 변호인이 신청과 관련하여 법원 에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사실
- (vi)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13 조에 따라 폐지
- (c) 아동에게 아동·청소년 보호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진술서를 제공한다.
- (d) 아동의 후견인에게 인접한 법률구조협 회 사무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진술

telephone number of the nearest office of the Legal Aid Society.

44.1 Renewal of section 43.1 and 44 orders

- (1) A secure services order granted under section 43.1 or 44 may be renew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procedures of section 44, except subsection (4), on the application by a director in the prescribed form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20 days.
- (2) The total period of confinement of a child in a secure services facility under this section and sections 43.1 and 44 shall not exceed 30 consecutive days.
- (3) Despite subsection (2), if the child ceases to be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or the subject of a supervision order,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or a family enhancement agreement under section 8, the confinement in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terminates immediately.

44.2 Exclusion from proceedings

- (1) Subject to subsection (2),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Court may exclude any person, including a guardian of the child or the child, from all or part of the proceedings if the Court considers that person's presence to be unnecessary to the conduct of the proceedings.
- (a) the evidence or information presented

서를 제공한다.

제44.1조(제43.1조와 제44조에 따른 명령의 갱신)

- (1) 제 43.1 조나 제 44 조에 따라 허가된 보 안서비스명령은 제 44 조의 신청절차에 따라 책임자의 규정된 양식의 신청으로 20 일 이 하의 기간으로 갱신될 수 있다. 다만, 제 44 조제(4)항의 신청절차는 예외로 한다.
- (2) 이 조 그리고 제 43.1 조와 제 44 조에 따라 아동을 보안서비스시설에 구금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은 연속으로 3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책임자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보호관찰명령, 임시후견명령,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 또는 제 8 조에 따른가족증진계약이 종료되면 보안서비스시설 구금은 즉시 종료된다.

제44.2조(절차에서의 배제)

- (1) 제(2)항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정인의 출석이 절차 진행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동의 후견인이나 아동을 포함한 자를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배제할 수 있다.
- (a) 법원에 제출된 증거나 정보가 이 절에

to the Court may be seriously injurious or seriously prejudicial to the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hearing under this Division, or

- (b) it would be in the interest of public morals, the maintenance of order 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to exclude any or all members of the public from the courtroom,
- (2) The Court may not exclude a director or a lawyer representing any of the parties.
- (3) At the outset of a hearing under this Division, the Court shall inform the parties of their right to make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to exclude persons.

45 Secure treatment facility

- (1) A secure services certificate or order is sufficient authority for any peace officer or director to apprehend and convey the child named in it to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specified by a director and to detain the child while the child is being conveyed to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 (2) On the issuing of a secure services certificate or order,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specified by a director must admit the child to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if the child is not already resident in that facility, and the person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 (a) the child is provided with services to stabilize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the

따른 심리의 대상인 아동에게 아주 해롭거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 (b) 법정에서 일반 방청객의 일부 또는 전 원을 배제하는 것이 공중도덕, 질서 유지 또 는 법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것이다.
- (2) 법원은 책임자 또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배제할 수 없다.
- (3) 법원은 이 절에 따른 심리를 시작할 때에 제(1)항에 따라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한다.

제45조(보안치료시설)

- (1) 보안서비스 증명서나 보안서비스명령은 치안관이나 책임자가 그 증명서나 명령에 기 재된 아동을 체포하여 책임자가 명시한 보안 서비스시설에 위탁하고 보안서비스시설에 위 탁 중인 아동을 구금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된다.
- (2) 보안서비스 증명서나 보안서비스명령이 발부되면, 책임자가 명시한 보안서비스시설 의 책임자는 아동이 이미 해당 시설에 거주 중이 아닌 경우에 아동의 시설 입소를 허가 하여야 하며 다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 (a) 서비스에 관하여 규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아동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아동에게 서

standards prescribed for such services in the regulations,

- (b) any assessment required for the preparation of a plan for services for the child is undertaken, and
- (c) the level of security provided to the child meets what is reasonably required for the confinement of the child.

46 Transfer

When the child named in a secure services certificate or order is in a secure services facility, a director may transfer the child to another secure services facility and the certificate or order is sufficient authority for any peace officer, director or member of the staff of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to detain the child while the child is being transferred.

47 Leave of absence

During the term of a secure services certificate or order, a director may grant the child a leave of absence from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for medical, humanitarian or rehabilitative reasons on any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director considers necessary.

48 Search and apprehension order

(1) When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secure services certificate or order, a director may apprehend and convey or

비스가 제공된다.

- (b) 아동을 위한 서비스 계획 준비에 필요 한 평가가 진행된다.
- (c)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안 수준이 아동의 구금에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충족한다.

제46조(인계)

보안서비스 증명서나 보안서비스명령에 기재된 아동이 보안서비스시설에 있는 경우 책임자는 해당 아동을 다른 보안서비스시설로 인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증명서나 명령은 치안관, 책임자 또는 보안서비스시설의 직원이 인계 중인 아동을 구금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된다.

제47조(외출 허가)

보안서비스 증명서나 보안서비스명령 기간에 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아동이 의료나 재활 목적 또는 인도적 이유로 보안서비스시설에서 외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48조(수색·체포명령)

(1) 보안서비스 증명서나 보안서비스명령의 대상인 아동이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하 는 경우 책임자는 해당 아동을 체포하여 보 authorize a peace officer or any other person to apprehend and convey the child, and to detain the child while the child is being conveyed, to a secure services facility.

- (a) leaves a secure services facility when no leave of absence has been granted, or
- (b) leaves a secure services facility pursuant to a leave of absence and fails to return within the time permitted by the leave.
- (2) If a director has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secure services certificate or order, the director may make an ex parte application to a judge of the Court or, if no judge is reasonably available, to a justice of the peace, for an order authorizing the director or any person named in the order and any peace officer called on for assistance, to enter, by force if necessary, any place or premises specified in the order, to search for, apprehend and convey the child to any secure services facility and to detain the child while the child is being conveyed to a secure services facility.
- (a) has left a secure services facility when a leave of absence has not been granted, or
- (b) has left a secure services facility pursuant to a leave of absence but has not returned within the time prescribed,

안서비스시설에 위탁하거나 치안관이나 다른 자가 그 아동을 체포하여 보안서비스시설에 위탁하고 위탁 중인 아동을 구금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a) 외출 허가가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 보안 서비스시설을 벗어난다.
- (b) 외출 허가에 따라 보안서비스시설을 벗어나고 휴가로 허용된 기한 내에 복귀하지아니한다.
- (2) 책임자는 보안서비스 증명서나 보안서 비스명령의 대상인 아동이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한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으면, 책임자나 명령에 기 재된 자 그리고 지원을 위하여 호출된 치안 관이 필요한 경우에 물리력을 사용하여 명령 에 명시된 장소나 구내에 진입하여 수색하고 발견된 아동을 체포하여 보안서비스시설에 위탁하고 보안서비스시설에 위탁 중인 아동 을 구금하는 것을 허가하는 명령에 대한 일 방당사자 신청을 법원 판사 또는 합리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판사가 없는 경우에 치안판 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a) 외출 허가가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 보안 서비스시설을 벗어났다.
- (b) 외출 허가에 따라 보안서비스시설을 벗어났고 휴가로 허용된 기한 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 (3) The judge or justice may make an order under this section if the judge or justice is satisfied that the child may be found in the place or premises specified in the order.
- (4) If,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it would be impracticable to appear personally before a judge or justice of the peace to apply for an order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2), the director may make the application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to a judge of the Court or a justice of the peace.
- (5) The information on which an application for an order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is based shall be given on oath and shall be recorded verbatim by the judge or justice who, as soon as practicable, shall cause the record or a transcription of the record, certified by the judge or justice as to time, date and contents, to be filed with the clerk of the Court.
- (6)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 an oath may be administered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 (7) The information submitted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a) a statement of the circumstances that make it impracticable for the director to appear personally before a judge of the Court or a justice of the peace;

- (3) 판사나 치안판사는 명령에 명시된 장소나 구내에서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 조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4) 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판사나 치안판사 앞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전화나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법원 판사나 치안판사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 (5)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에 의한 명령 신청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선서를 한 후 제출한다. 그리고 판사나 치안판사는 이 를 말 그대로 정확히 기록하여 시간, 일자 및 내용에 관하여 공인을 하고 그 기록이나 기록의 필사본이 가급적 신속하게 법원 서기 에게 제출되도록 한다.
- (6) 제(4)항의 목적상,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선서를 집행할 수 있다.
- (7)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제 출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책임자가 법원 판사나 치안판사 앞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한 진술서

- (b) a statement of the director's belief that the child is the subject of a secure services certificate or order and
- (i) has left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without a leave of absence, or
- (ii) has not returned to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within the time prescribed;
- (c) a statement of the director's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child will be found in the place or premises to be searched;
- (d) a statement as to any prior application for an order under this section in respect of the same child of which the director has knowledge.
- (8) A judge of the Court or a justice of the peace referred to in subsection (4) who is satisfied that an application made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may make an order conferring the same authority respecting search and apprehension as may be conferred under subsection (2).
- (a) conforms to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7), and
- (b) discloses reasonable grounds for dispensing with personal appearance for the purpose of making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2)
- (9) If a judge of the Court or a justice of the peace makes an order under subsection

- (b) 아동이 보안서비스 증명서나 보안서비 스명령의 대상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한다는 책임자의 믿음에 대한 진술서
- (i) 외출 허가 없이 보안서비스시설을 벗어 났다.
- (ii) 규정된 기한 내에 보안서비스시설로 복 귀하지 아니하였다.
- (c) 수색 예정 장소나 구내에서 아동이 발견 될 것이라고 믿는 책임자의 근거에 대한 진 술서
- (d) 책임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동일한 아동에 대하여 과거에 이 조에 따라 명령을 신청한 것에 대한 진술서
- (8) 제(4)항에 규정된 법원 판사나 치안판사는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에 의한신청이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면, 수색과 체포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부여되는 것과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 (b)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직접 출석을 생략하는 정당한 근거를 공개한다.
- (9) 법원 판사나 치안판사가 제(8)항에 따라 명령을 하면, 다음과 같다.

(8),

- (a) the judge or justice shall complete and sign an order in the prescribed form, noting on its face the time, date and place at which it was made,
- (b) the director, on the direction of the judge or justice, shall complete, in duplicate, a facsimile of the order in the prescribed form, noting on its face the name of the judge or justice making the order and the time, date and place at which it was made, and
- (c) the judge or justice shall,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order has been made, cause the order to be filed with the clerk of the Court.
- (10) An order made by telephone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is not subject to challenge by reason only that the circumstances were not such as to make it reasonable to dispense with personal appearance for the purpose of making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2).
- (11) If a director or a peace officer or other person authorized under subsection (1) to apprehend a child has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irector, peace officer or other person may, without an order and by force if necessary, enter that place or those premises and search for and remove the child for the purpose of conveying the child to a secure

- (a) 판사나 치안판사는 앞면에 그 시간, 일 자 및 장소가 기재된 명령을 규정된 양식으 로 작성하여 서명한다.
- (b) 책임자는 판사나 치안판사의 지시에 따라 앞면에 명령을 내린 판사나 치안판사의이름 그리고 그 시간, 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명령의 복사본을 규정된 양식으로 2 부작성한다.
- (c) 판사나 치안판사는 명령을 한 이후에 가 급적 신속하게 그 명령이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도록 한다.
- (10) 전화나 다른 원거리 통신 수단에 의한 명령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직접 출석을 생략하기에 정당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
- (11) 책임자, 치안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체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자는 다음 과 같이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으면, 명령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아동을 보안서비스시설에 위탁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여 해당 장소나 구내에 진입에 진입하여 아동을 수색하고 퇴거시킬수 있으며 보안서비스시설에 위탁 중인 아동을 구금할 수 있다.

services facility and may detain the child while the child is being conveyed to a secure services facility.

- (a) the child may be found in a place or premises, and
- (b) the life or health of the child would be seriously and imminently endangered as a result of the time required to obtain an order under subsection (2) or (4),

49 Review

- (1) A child with respect to whom a secure services order has been made, a guardian of the child or a director may apply to the Court in the prescribed form for a review of the order.
- (2) An application for a review of a secure services order may be made
- (a) by a director,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the order and the period of any renewal of the order, or
- (b) by the child who is the subject of the secure services order or a guardian of the child, once during the period of the order and once during the period of any renewal of the order.
- (3) The hearing of a review shall be held not more than 3 days after the application is filed with the Court or within any further period that the Court directs.
- (4) If a director is not the applicant, the

- (a) 특정 장소나 구내에서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
- (b)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으로 인하여 아동의 생명 이나 건강이 심각하고 급박하게 위태로울 수 있다.

제49조(심사)

- (1) 보안서비스명령의 대상인 아동, 해당 아동의 후견인 또는 책임자는 규정된 양식으로 명령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2) 보안서비스명령에 대한 심사 신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다.
- (a)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명령의 기간과 그 갱신 기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b) 보안서비스명령의 대상인 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명령의 기간과 그 갱신 기간에 1 회에 한하여 할 수있다.
- (3) 심사 신청에 대한 심리는 그 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날부터 3일 이내 또는 법원이이보다 길게 지시한 기간 내에 개최된다.
- (4) 책임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법원 서

clerk of the Court shall notify a director of the application.

- (5) The applicant shall send a notice of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of the review by the Court by registered mail or by any other method approved by the Court to, not less than one day before the date fixed for the hearing.
- (a) the child,
- (b) a guardian of the child if a director is not the guardian of the child, and
- (c)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in which the child is confined
- (6)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it is proper to do so, the Court, on the ex parte application of the director, may, at any time before the time fixed for the hearing, do any of the following:
- (a) authorize service ex juris, service by registered mail or any other form of substitutional service;
- (b) if an order is made under clause (a), extend or reduce the time within which service may be effected;
- (c) if an order is made under clause (a), extend the time within which a hearing shall be held;
- (d) authorize service on a guardian appointed under the Adult Guardianship and

기는 책임자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5) 신청인은 적어도 심리기일 하루 전까지 심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일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법 원이 승인한 다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자 에게 발송한다.

(a) 아동

- (a) 책임자가 아동의 후견인이 아닌 경우 아 동의 후견인
- (c) 아동이 구금된 보안서비스시설 책임자
- (6)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심리기일 전에 언제든지 책임자의 일방당사자 신청 신 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관외송달, 등기우편 송달 또는 다른 형식의 대체송달을 허가한다.
- (b) 제(a)호에 따라 명령을 한 경우 송달이 가능한 시한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 (c) 제(a)호에 따라 명령을 한 경우 심리 개최 시한을 연장한다.
- (d) 아동의 후견인의 경우 아동의 후견인 대신에 「성년 후견 및 수탁법」에 따라 임

Trusteeship Act in respect of the guardian of a child instead of on the guardian of the child;

- (e) authorize the giving of a shorter period of notice;
- (f) dispense with service on any person.
- (7) Whether or not authorization has been given under subsection (6), the Court may do any of the following at the time of the hearing:
- (a) approve service made in a form it considers adequate in the circumstances;
- (b) approve a shortened period as sufficient notice;
- (c) dispense with service on any person.

50 Order of Court on review

- (1) After hearing an application for the review of a secure services order, the Court may make an order in accordance with section 44 confirming, varying or terminating the secure services order.
- (2) An order made under subsection (1) shall not extend the period of the secure services order reviewed.
- (3) The director shall provide the child, the child's guardian, the child's lawyer, if an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in which the child is confined with a copy of the order made

명된 후견인에 대한 송달을 허가한다.

- (e) 고지기간의 단축을 허가한다.
- (f) 송달을 생략한다.
- (7)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은 심리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사정상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의 송 달을 승인한다.
- (b) 단축된 기간을 고지에 충분한 것으로 승인한다.
- (c) 송달을 생략한다.

제50조(심사에 따른 법원의 명령)

- (1) 법원은 보안서비스명령에 대한 심사 신청을 심리한 이후에 제 44 조에 따라 보안서비스명령을 확인, 변경 또는 종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심사 대상 보안서비스명령의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 (3) 책임자는 아동, 아동의 후견인, 경우에 따라 아동의 변호사 그리고 아동이 구금된 보안서비스시설의 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사본을 제공한다.

under subsection (1).

51 Adjournment and extension of confinement

- (1) The Court may adjourn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43.1, 44, 44.1 or 49
- (a)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application, or
- (b)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adjourn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obtain evidence to assist the Court in determining whether a secure services order should be made, or confirmed, varied or terminated.
- (1.1) A justice of the peace may adjourn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43.1(3) for a hearing before a judge of the Court
- (a)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application, or
- (b) if the justice of the peace is satisfied that the adjourn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obtain evidence to assist in determining whether a secure services order should be issued.
- (2) Unless it is satisfied that it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 order otherwise, the Court shall in respect of a child who is confined under this Division extend the confinement pending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44 or 44.1

제51조(구금의 연기 및 연장)

- (1) 법원은 제 43.1 조, 제 44 조, 제 44.1 조 및 제 49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를 다 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연기할 수 있다.
- (a) 신청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다.
- (b) 법원이 보안서비스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를 확인, 변경이나 종료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증거를 얻기 위하여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에 그에 따른다.
- (1.1) 치안판사는 법원 판사의 심리를 위하여 제 43.1 조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를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연기할 수 있다.
- (a) 신청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다.
- (b) 치안판사가 보안서비스명령을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증 거를 얻기 위하여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2) 법원은 다르게 명령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면, 경우에 따라 제 44 조나 제 44.1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 또는 제 49 조에 따른 심사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을 때까지 이 절에 따라 구금된 아동에 대한 구금을 연장한다.

or the hearing of a review under section 49, as the case may be.

(3) The number of days that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43.1, 44, 44.1 or 49 is adjourned shall be included in a calculation of the duration of the order made at the hearing if the child is confined in the secure services facility during the adjournment.

Division 5 Private Guardianship

52 Private guardianship

- (1) Any adult may apply to the Court in the prescribed form for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in respect of a child who is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or is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 (1.01) Notwithstanding any other enactment, a person may not apply to any court to be appointed as a guardian of a child who is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or is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except under this Act.
- (1.1)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must include a home study report in the form required in the regulations prepared by a qualified person respecting
- (a) the suitability of the applicant as a guardian,

(3) 제 43.1 조, 제 44 조, 제 44.1 조 및 제 49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연기된 일수는 아동이 연기 중에 보안서비스시설에 구금된 경우에 심리에서 결정되는 명령의 기간으로 산입된다.

제5절 개인 후견

제52조(개인 후견)

- (1) 모든 성인은 책임자의 보호를 받거나 임시후견명령 또는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 견명령의 대상인 아동에 대하여 규정된 양식 으로 법원에 개인후견명령을 신청할 수 있 다.
- (1.01)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책임자의 보호를 받거나 임시후견명령 또는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인 아동의 후견인임명을 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
- (1.1)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자격자가 다음에 관하여 준 비한 가정조사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a) 신청인의 후견인 적합성

- (b) the ability and willingness of the applicant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a guardian with respect to the child, and
- (c) whether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at the applicant be appointed as a guardian of the child.
- (1.2) If the child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the report required under subsection (1.1) must be prepared by a director.
- (1.3) If an applicant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child is an Indigenous child, the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must include a pla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that addresses how the child's Indigenous identity, culture, heritage, spirituality, language and traditions will be respected, supported and preserved.
- (2) A director may, on behalf of an applicant, make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if
- (a) the applicant consents in writing, and
- (b) the director is satisfied that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for the child to be placed under the guardianship of the applicant.
- (3) to (5) Repealed 2003 c16 s55.

53 Notice

(1) The applicant shall serve notice of the

- (b)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 책임을 부담할 신청인의 능력과 의사
- (c) 신청인을 아동의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
- (1.2) 아동이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 령의 대상인 경우 제(1.1)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는 책임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1.3) 신청인에게 아동이 토착 아동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규정에 따라 수립되며 아동이 토착민으로서 가지는 정체성, 문화, 전승, 영 성, 언어 및 전통을 존중하고 유지하고 보존 하는 방법을 다루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 다.
- (2) 책임자는 다음의 경우 신청인을 대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 (a) 신청인이 서면으로 동의한다.
- (b) 책임자가 아동이 신청인의 후견을 받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다.
- 제(3)항부터 제(5)항까지 2003 년 법률 제 16호 제 55조에 따라 폐지

제53조(통지)

(1) 신청인은 제 52 조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nature, dat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of the application under section 52, a copy of the report described in section 52(1.1) and a copy of the plan described in section 52(1.3) if one was required under that section, not less than 3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hearing on

- (a) the guardian of the child,
- (b)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and
- (c) a director, if a director is not the guardian.
- (1.1) In addition to serving notice on the persons listed in subsection (1), if the child is a First Nation Individual or a member of a band, the applicant shall serve notice of the nature, dat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of the application under section 52 not less than 3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hearing on the band or bands identified by a director as the band or bands of which the child is a member or is entitled to be a member.
- (2) The Court may, if it considers it appropriate to do so,
- (a) order that service of the notice of the application, the copy of the report described in section 52(1.1) and the copy of the plan described in section 52(1.3) if one was required under that section, be made substitutionally or ex juris,

제 52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의 성격, 일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서, 제 52 조 제(1.1)항에 규정된 보고서의 사본 그리고 제 52 조제(1.3)항에 규정된 계획의 사본을 적어도 심리기일 30 일 전까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송달한다.

- (a) 아동의 후견인
- (b) 아동이 12세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
- (a) 책임자가 아동의 후견인이 아닌 경우 책임자
- (1.1) 제(1)항에 열거된 자에 대한 통지서의 송달에 더하여 아동이 원주민이거나 부족민인 경우에 신청인은 제 52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의 성격, 일자, 시간 및 장소에대한 통지서를 적어도 심리기일 30 일 전까지 책임자가 아동이 소속되거나 소속 자격이었는 부족으로 확인한 부족에 송달한다.

- (2)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제 52 조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신청 통지서, 제 52 조제(1.1)항에 규정된 보고서의 사본 및 제 52 조제(1.3)항에 규정된 계획의 사본의 송달을 대체송달이나 관외송달로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 (b) shorten the period of service required under subsection (1), or
- (c) dispense with service on any band or any person other than the director.

53.1 Band participation in proceedings

- (1) A band that is required to be served with notice of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53(1.1) may attend Court the first time the matter is heard in Court and may make submissions to the Court regarding the band's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 (2) In any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relating to the application, a band that is required to be served under section 53(1.1) and that attends Court the first time the matter is heard in Court may
- (a) appear,
- (b) be represented by a lawyer,
- (c) make representations to the Court, and
- (d) if the Court grants leave,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the Court may impose, take further part in the proceedings.
- (3) If a band is serv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53(1.1) and does not attend Court the first time the matter is heard in Court, no further notice to the band is required, and the Court may proceed to hear the application if the Court considers it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 do so.

- (b) 제(1)항에서 요구하는 송달기간을 단축 한다.
- (c) 부족 또는 책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송 달을 생략한다.

제53.1조(부족의 절차 참여)

- (1) 제 53 조제(1.1)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하는 부족은 법원에서 그 사안을 처음 심리할 때에 법원에 출석할 수 있고 부족의 절차 참여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2) 신청에 관한 법원의 절차에서 제 53 조 제(1.1)항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 그 사안을 처음 심리할 때에 법원에 출석한 부족은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출석한다.
- (b) 변호사가 대리한다.
- (c) 법원에 의견을 개진한다.
- (d) 법원이 허가하면, 법원이 부과하는 조건에 따라 절차에 추가로 참여한다.
- (3) 부족이 제 53 조제(1.1)항에 따라 송달을 받고 법원에서 그 사안을 처음 심리할 때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부족에 대한 추가 통지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법원은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4) A band that makes submissions to the Court regarding the band's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may appeal the Court's decis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2)(d) to the Court of Queen's Bench.

54 Repealed 2003 c16 s57.

55 Consent to guardianship

- (1)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shall not be made without the consent in the prescribed form of
- (a) the guardian of the child, and
- (b)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 (2)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the Court may make an order dispensing with the consent of,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 do so.
- (a) the guardian of the child, or
- (b) the child,
- (3) A consent to guardianship executed in any province or territory in a form prescribed for consents in that province or territory is as good and sufficient as if it had been executed in the form prescribed under this Act.

56 Private guardianship order

(1)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Court

(4) 부족의 절차 참여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개진한 부족은 제(2)항제(d)호에 규정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할수 있다.

제54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57조에 따라 폐지

제55조(후견에 대한 동의)

- (1) 개인후견명령은 다음과 같은 자가 규정 된 양식으로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발부되지 아니하다.
- (a) 아동의 후견인
- (b) 아동이 12세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아동의 후견인
- (b) 아동
- (3) 특정 주나 준주에서 해당 주나 준주에서 이루어지는 동의에 관하여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된 후견에 대한 동의는 이 법에 따라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고 충분하다.

제56조(개인후견명령)

(1)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신청인을

may make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appointing the applicant as a guardian of the child.

- (a) the applicant is able and willing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a guardian toward the child.
- (b)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 (c) the child has been in the continuous care of the applicant for a period of at least 3 months immediately prior to the hearing,
- (1.01) If it is satisfied that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 do so, the Court may waive the requirement in subsection (1)(c).
- (1.1) On making an order under subsection(1), the Court may include terms respecting custody of and contact with the child.
- (1.2) On making an order under subsection (1) appointing a guardian of an Indigenous child, the Court shall advise the guardian of the guardian's obligations under section 57.01.
- (2) The clerk of the Court shall provide a certified copy of an order made under subsection (1) to
- (a) the applicant,
- (b) any person who was a guardian of the child immediately before the making of the

아동의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개인후견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신청인이 아동에 대한 후견인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를 부담할 의지가 있다.
- (b)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
- (c) 아동이 심리 직전 최소 3 개월간 신청인의 돌봄을 계속하여 받았다.
- (1.01) 법원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제(1)항제(c)호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1.1)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 아동의 보호와 접견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 (1.2)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토착 아동의 후견인을 임명하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 제 57.01 조에 따른 후견인의 의무를 후견인에 게 알린다.
- (2) 법원 서기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등 본을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제공한다.
- (a) 신청인
- (b) 명령 발부 직전에 아동의 후견인이었던 자

order,

- (c)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 (d) a director, if a director was not the guardian of the child immediately before the making of the order, and
- (e) any other person that the Court directs.
- 56.1 Repealed 2018 c24 s10.

56.2 Review of contact terms in order

- (1) If an order made under section 56 includes terms respecting contact with a child, the following may apply to the Court in the prescribed form for a review of those terms:
- (a)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 (b) a person who has been granted contact with the child under the order;
- (c) a guardian of the child;
- (d) a person who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child.
- (2) The applicant shall send a notice of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of the review by the Court by registered mail or by any other method approved by the Court to, not less than 15 days before the date fixed for the hearing.

- (c) 아동이 12 세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
- (d) 책임자가 명령 발부 직전에 아동의 후 견인이 아니었던 경우 책임자
- (e) 법원이 지시하는 다른 자

제56.1조 2018년 법률 제24호 제10조에 따라 폐지

제56.2조(명령의 접견 조항에 대한 심사)

- (1) 제 56 조에 따른 명령에 아동의 접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 는 규정된 양식으로 접견 관련 조항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a) 아동이 12 세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
- (b) 명령으로 아동 접견이 허용되었던 사람
- (c) 아동의 후견인
- (d) 아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자
- (2) 신청인은 적어도 심리기일 15일 전까지 법원의 심사에 대한 심리 일자, 시간 및 장 소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법원이 승인한 다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자에게 발송한다.

- (a)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 (b) a person who has been granted contact with the child under the order, if that person is not the applicant, and
- (c) a guardian of the child
- (3) The Court may, if it considers it appropriate to do so,
- (a) order that service of the notice of the application be made substitutionally or ex juris,
- (b) shorten the period of notice required under subsection (2), or
- (c) dispense with service on any person.
- (4) On hearing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the Court may continue, vary or terminate the terms respecting contact contained in the order.

57 Effect of order

- (1) Notwithstanding Part 2 of the Family Law Act, for all purposes when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is made the applicant is a guardian of the child.
- (2) Notwithstanding Part 2 of the Family Law Act, if the Court makes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it may make a further order terminating the guardianship of any other guardian of the child if
- (a)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other

- (a) 아동이 12세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
- (b) 명령으로 아동 접견이 허용되었던 사람. 다만, 신청인과 동일인인 경우에는 제외한 다.
- (c) 아동의 후견인
- (3)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신청 통지서의 송달을 대체송달이나 관 외송달로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 (b)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고지기간을 단축 한다.
- (c) 송달을 생략한다.
- (4)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명령에 포함된 접견 관련 조항을 지속,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제 57 조(명령의 효과)

- (1) 「가족법에 관한 법률」 제 2 부에도 불구하고, 개인후견명령이 발부되면 모든 목적을 위하여 신청인이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 (2) 「가족법에 관한 법률」 제 2 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개인후견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아동의 다른 후견인의 후견을 종료하는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아동의 다른 후견인이 후견 종료에 동의

guardian of the child consents to the termination, or

- (b) for reasons that appear to it to be sufficient, the Court considers it necessary or desirable to do so.
- (3) to (5) Repealed 2003 c16 s61.

57.01 Private guardianship of Indigenous child

If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is made under section 56 appointing a guardian of an Indigenous child, that guardian shall

- (a) take reasonable steps to comply with the plan included in the application in respect of that child under section 52(1.3), and
- (b) if the Indigenous child is a First Nation Individual.
- (i) take reasonable steps on behalf of the child necessary for the child to exercise any rights the child may have as a First Nation Individual, and
- (ii) inform the child of the child's status as a First Nation Individual as soon as, in the opinion of that guardian, the child is capable of understanding the child's status as a First Nation Individual.

57.1 Termination of order

(1) If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is made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다.

(b)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 따라, 후 견 종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법원이 판단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 2003 년 법률 제 16호 제 61조에 따라 폐지

제57.01조(토착 아동의 개인 후견)

제 56 조에 따라 토착 아동의 후견인을 임명하는 개인후견명령이 발부되면, 그 후견인은 다음을 이행한다.

- (a) 제 52 조제(1.3)항에 따라 아동에 대한 신청에 포함된 계획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리 적 조치를 취한다.
- (b) 토착 아동이 원주민인 경우 다음을 이 행한다.
- (i) 아동이 원주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조치를 아동을 대리하여 취한다.
- (ii) 아동이 자신의 원주민 신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후견인이 판단하는 즉시 아동의 원주민 신분을 아동에게 알린다.

제57.1조(명령의 종료)

(1) 이 절에 따라 개인후견명령이 발부되면,

under this Division, a guardian whose guardianship is not terminated under section 57 may apply to the Court in the prescribed form to terminate the private guardianship order and,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Court may, subject to subsection (3), terminate the private guardianship order.

- (a) the applicant is capable of fully resuming and willing to fully resume the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hip of the child, and
- (b)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 do so.
- (2) If the Court terminates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the applicant and any other person whose guardianship was not terminated under section 57 are the guardians of the child.
- (3) No order shall be made under subsection (1) relating to a child who is 12 years of age or older without the consent of the child.
- (4) Sections 53 and 55 apply to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and the applicant must include a report described in section 52(1.1) in the application.

Division 6 Agreements with Youths

57.2 Family enhancement, custody agreements

(1) A director may enter into an agreement

그 후견이 제 57 조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한 후견인은 개인후견명령의 종료를 규정된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제(3)항에 따라개인후견명령을 종료할 수 있다.

- (a) 신청인이 아동의 후견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할 수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부담할 의지가 있다.
- (b)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
- (2) 법원이 개인후견명령을 종료하면, 신청 인 그리고 그 후견이 제 57 조에 따라 종료 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자는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 (3) 12 세 이상인 아동에 관한 명령은 아동 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라 종료되지 아 니한다.
- (4) 제 53 조와 제 55 조는 이 조에 따른 신청에 적용된다. 그리고 신청인은 제 52 조제 (1.1)항에 규정된 보고서를 신청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절 청소년과의 계약 제57.2조(가족증진계약과 보호계약)

(1) 책임자는 다음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in the prescribed form with a youth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the youth if the director is

- (a) satisfied that the youth is living independently of the youth's guardian, and
- (b) of the opinion that
- (i) the youth is in need of intervention, and
- (ii) as a result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the youth's safety, security or development will be adequately protected while the youth continues to live independently of the youth's guardian.
- (2) Subject to section 33, a director may enter into a custody agreement in the prescribed form for terms of not more than 6 months each with a youth under which custody is given to the director if the director is
- (a) satisfied that the youth is living independently of the youth's guardian, and
- (b) of the opinion that
- (i) the youth is in need of intervention, and
- (ii) the survival, security and development of the youth can be adequately protected through the agreement.
- (3) The terms of an agreement under this section must include
- (a) in the case of a custody agreement, the visits or other access to be provided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규정된 양식으로 청소년과 체결할 수 있다.

- (a) 청소년이 후견인에게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책임자가 판단한다.
- (b) 책임자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i) 청소년에게 개입이 필요하다.
- (ii)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청소년이 후견인에게서 독립하여 계속 생활하여도 청소년의 안전, 무사 또는 발달이 충분히 보호될 것이다.
- (2) 제 33 조를 조건으로 하여, 책임자는 다음의 경우 각각의 기간을 6 개월 이하로 하여 청소년의 보호를 책임자에게 위탁하는 보호계약을 청소년과 규정된 양식으로 체결할수 있다.
- (a) 청소년이 후견인에게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책임자가 판단한다.
- (b) 책임자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i) 청소년에게 개입이 필요하다.
- (ii) 계약을 통하여 청소년의 생존, 무사 및 발달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 (3) 이 조에 따른 계약의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보호계약의 경우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의 후견인이나 다른 자 사이에 제공되는 방

between the youth and the youth's guardian or any other person, and

(b) a plan of care, in the prescribed form, that addresses the youth's need for preparation for the transition to independence and adulthood.

57.3 Post-18 care and maintenance

When a youth who is the subject of a family enhancement agreement under section 57.2(1), a custody agreement under section 57.2(2),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attains the age of 18 years, a director may continue to provide the person with support and financial assistance,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 (a) for the periods and the purposes, and
- (b) on the conditions

Division 7 Child Support Agreements and Orders

57.4 Child support agreement

- (1) If, a director may enter into an agreement in the prescribed form with the parent of the child whereby the parent agrees to provide child support.
- (a) a child is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or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문이나 그 밖의 면접

(b) 규정된 양식으로 독립과 성년 전환에 대한 청소년의 준비 필요성을 다루는 돌봄 계획

제57.3조(18세 이후 돌봄과 생계)

제 57.2 조제(1)항에 따른 가족증진계약, 제 57.2 조제(2)항에 따른 보호계약, 임시후견 명령 또는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인 청소년이 18 세가 되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부양과 재정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 (a) 규정에서 정한 기간과 목적에 따라 제공 한다.
- (b)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제공한다.

제7절 자녀부양계약과 명령

제57.4조(자녀부양계약)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자는 부모가 자녀 부양에 합의하는 계약을 규정된 양식으로 아동의 부모와 체결할 수있다.
- (a) 아동이 책임자의 보호를 받거나 임시후 견명령 또는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 의 대상이다.

agreement or order, or

- (b) a director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a child under section 57.2,
- (2) An agreement for child support entered into under subsection (1) does not prevent the director from applying to the Court for an order under section 57.5.

57.5 Child support order

- (1) If a child is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or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or if a director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the child under section 57.2, a director may apply in the prescribed form to the Court for an order requiring any or all of the parents of the child to provide child support.
- (2) The Court on hearing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may make an order requiring a parent to provide child support.
- (3) An order of the Court under subsection
- (2) may be retroactive in effect to the commencement of the child's being
- (a)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 (b)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or
- (c) the subject of an agreement under section 57.2.

- (b) 책임자가 제 57.2 조에 따라 아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자녀부양계약은 책임자가 제 57.5 조에 따라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자녀부양명령)

- (1) 아동이 책임자의 보호를 받거나 임시후 견명령 또는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 의 대상인 경우 또는 책임자가 제 57.2 조에 따라 아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책임자는 아동의 부모 일방이나 쌍방에게 자녀 부양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규정된 양식으 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 리에서 부모에게 자녀 부양을 제공하도록 요 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법원 명령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소급하 여 적용될 수 있다.
- (a) 책임자의 보호를 받는 아동
- (b) 임시후견명령 또는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인 아동
- (c) 제 57.2 조에 따른 계약의 대상인 아동

- (4) In making an order requiring a parent to provide child support for a child under this section, the Court may consider
- (a) the income, earning capacity and other financial resources or benefits of the parent, and
- (b) the child support guidelines made or adopted under the Family Law Act.
- (5) Notice of the nature, date, time and place of a hearing under this section must be served personally by the applicant on the parent of the child at least 5 days before the date fixed for the hearing.
- (6) Section 23(5) and (6) apply to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57.6 Review of child support order

- (1) If an order is made under section 57.5, the following may apply to the Court for a review of the order:
- (a) a director;
- (b) a parent who is required to provide child support under the order;
- (c) a private guardian who is entitled under section 57.7 to receive child support in respect of the child who is the subject of the order.
- (2) On reviewing an order made under section 57.5, the Court may vary, suspend or terminate the order or may reduce or

- (4) 이 조에 따라 자녀 부양을 제공하라고 부모에게 요구하는 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 (a) 부모의 수입, 소득 능력 그리고 다른 재 원이나 혜택
- (b) 「가족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 거나 채택된 자녀 부양 기준
- (5) 신청인은 이 조에 따른 심리의 성격, 일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서를 적어도심리기일 5일 전까지 아동의 부모에게 직접송달하여야 한다.
- (6) 제 23 조제(5)항과 제(6)항은 이 조에 따른 신청에 적용된다.

제57.6조(자녀부양명령에 대한 심사)

- (1) 제 57.6 조에 따라 명령이 발부되면, 다음과 같은 자는 명령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a) 책임자
- (b) 그 명령에 따라 자녀 부양을 제공하여 야 하는 부모
- (c) 제 57.7 조에 따라 명령의 대상인 아동에 대한 자녀 부양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개인후견인
- (2) 제 57.5 조에 따른 명령을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부모의 자녀 부양 능력에 실질적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변경, 정지

cancel arrears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re has been a substantial change in the ability of the parent to provide the child support.

- (3) Notice of the nature, date, time and place of a hearing under this section must be served personally by the applicant, at least 5 days before the date fixed for the hearing.
- (a) on the parent, if the applicant is the director or a private guardian of the child referred to in subsection (1)(c), and
- (b) on the director and on a private guardian of the child referred to in subsection (1)(c), if the applicant is the parent,
- (4) Section 23(5) and (6) apply to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57.7 Transfer of child support

- (1) If the Court makes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with respect to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n agreement under section 57.4 or an order under section 57.5, the Court may direct that child support provided pursuant to the agreement or order shall be provided to the private guardian, notwithstanding that the private guardian was not a party to the agreement or the application for the order.
- (2) Until the Director of MaintenanceEnforcement receives a copy of the private

또는 종료하거나 연체금을 감액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3) 신청인은 이 조에 따른 심리의 성격, 일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서를 적어도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다음과 같은 자에게직접 송달하여야 한다.
- (a) 신청인이 책임자 또는 제(1)항제(c)호 에 규정된 아동의 개인 후견인인 경우 부모
- (b) 신청인이 부모인 경우 책임자 또는 제 (1)항제(c)호에 규정된 아동의 개인후견인
- (4) 제 23 조제(5)항과 제(6)항은 이 조에 따른 신청에 적용된다.

제57.7조(자녀 부양의 인계)

(1) 법원은 제 57.4 조에 따른 계약이나 제 57.5 조에 따른 명령의 대상인 아동에 대하여 개인후견명령을 내리면, 개인후견인이 계약이나 명령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계약이나 명령에 따라 제공되는 자녀 부양을 개인후견인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양육비 관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개인후견명령의 사본을 수령할 때까지 양육

guardianship order referred to in subsection (1), the Director of Maintenance
Enforcement is not responsible for the repayment of any money disbursed by the Director of Maintenance Enforcement after the private guardianship order is made.

57.8 Financial information

- (1) In order to assist a director in determining terms of an agreement under section 57.4 or to assist the Court in determining terms of an order under section 57.5, the director may request a parent to disclose financi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 (2) If the parent refuses to disclose the financial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director, the director may apply to the Court in the prescribed form for an order for financial disclosure.
- (3) If a parent refuses to disclose financial information requested or ordered under this section, in making an order under section 57.5, the Court may draw an adverse inference against the parent and impute income to the parent in the amount that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Part 2 Adoption

58 Interpretation

(1) In this Part,

비 관리청장이 개인후견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지출하는 금전의 상환을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57.8조(금융정보)

- (1) 제 57.4 조에 따른 계약의 조항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책임자를 지원하거나 제 57.5 조에 따른 명령의 조항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자는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를 공개하라고 부모에게 요청할수 있다.
- (2) 부모가 책임자가 요청한 금융정보의 공 개를 거절하면, 책임자는 규정된 양식으로 재산공개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3) 부모가 이 조에 따라 요청되거나 명령이 내려진 금융정보의 공개를 거절하면, 법원은 제 57.5 조에 따라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불리한 추론을 하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부모의 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제2부 입양

제58조(해석)

(1) 이 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 (a) "Court", notwithstanding section1(1)(h), means the Court of Queen'sBench;
- (b) "descendant", in respect of a deceased adopted person, means an adult child or adult grandchild of the adopted person;
- (c) "licensed adoption agency" means an adoption agency that holds a licence issued under section 88.
- (d), (e) repealed 2003 c16 s64.
- (2) An appeal from an order of the Court under this Part may be made to the Court of Appeal not more than 3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order is made.

58.1 Matters to be considered

A Court and all persons who exercise any authority or make any decision under this Act relating to the adoption of a child must do so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must consider the following as well as any other relevant matter:

- (a) the importance of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 parent, and a secure place as a member of a family, in the child's development;
- (b) the benefits to the child of stability, permanence and continuity of care and relationships;
- (c) the mental, emotional, spiritual and

- (a) "법원"이란 제 1 조제(1)항제(h)호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을 말한다.
- (b) "자손" 이란 사망한 입양자와 관련하여 입양자의 성인 자녀나 성인 손자녀를 말한 다.
- (c) "인가 입양기관"이란 제 88 조에 따라 부여된 허가를 보유한 입양기관을 말한다.
- (d), (e)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64 조에 따라 폐지
- (2) 이 부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대한 항소 는 명령일부터 30 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 기할 수 있다.

제58.1조(고려되는 사안)

법원 그리고 아동의 입양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거나 결정을 하는 모든 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하여야 하며 다음 사안과 그 밖의 관련사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아동의 발달에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안정적 위치의 중요성
- (b) 돌봄과 관계의 안정성, 영속성 및 계속 성이 아동에게 주는 이점
- (c) 아동의 정신적, 정서적, 영적 및 신체적

physical needs of the child and the child's mental, emotional and physical stage of development;

- (d) the benefits to the child of maintaining, wherever possible, the child's familial, cultural, social, linguistic and spiritual heritage;
- (e) the child's views and wishes, if they can be reasonably ascertained;
- (f) the effects on the child of a delay in decision-making;
- (g) in the case of an Indigenous child,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supporting and preserving the child's Indigenous identity, culture, heritage, spirituality, language and traditions.

Division 1 Adoption Process

59 Consent to adoption

- (1) An adoption order in respect of a child must not be made without the consent in the prescribed form of
- (a) all the guardians of the child other than a guardian who is applying to the Court under section 62 for the order, and
- (b)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 (2) If the person who is applying to the court under section 62 for an adoption order is the sole guardian of the child, an adoption

요구와 아동의 정신적, 정서적 및 신체적 발 달 단계

- (d) 가능한 경우에 아동의 가족, 문화, 사회, 언어 및 영성에 관한 전승이 유지되는 것이 아동에게 주는 이점
- (e) 합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아동 의 의견과 희망
- (f) 의사결정의 지연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g) 토착 아동의 경우 아동이 토착민으로서 가지는 정체성, 문화, 전승, 영성, 언어 및 전통을 존중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 요성

제1절 입양 과정

제59조(입양에 대한 동의)

- (1) 다음과 같은 자가 규정된 양식으로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입양명령을 내릴 수 없다.
- (a) 제 62 조에 따라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고 있는 후견인을 제외한 아동의 후견인 전원
- (b) 아동이 12 세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
- (2) 제 62 조에 따라 법원에 입양명령을 신청하고 있는 자가 아동의 단독 후견인인 경우 입양명령은 신청인이 후견인이 되기 전에

order in respect of the child shall not be made without the consent in the prescribed form of the person who was the child's guardian before the applicant became the guardian.

(3) A consent to an adoption given in a jurisdiction outside Alberta in a form that is valid in that jurisdiction is deemed to be a consent under this Act.

60 Automatic joint guardianship status

- (1) A prospective adopting parent named in a consent required under section 59 is, on the giving of the consent, a joint guardian of the child with the guardian who gave the consent.
- (2) The prospective adopting parent's status as a joint guardian under subsection(1) terminates
- (a) if a consent given under section 59 is revok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61(1),
- (b) when the adoption order is made or the application for the adoption order is dismissed,
- (b.1) when the child leaves the care and custody of the prospective adopting parent because of a breakdown in the adoption placement, or
- (c) if the Court makes an order declaring the status of the joint guardian to be terminated.

아동의 후견인이었던 자가 규정된 양식으로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발부되지 아니한다.

(3) 앨버타주 외의 관할권에서 해당 관할권에서 유효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입양에 대한 동의는 이 법에 따른 동의로 본다.

제60조(자동적인 공동 후견인의 지위)

- (1) 제 59 조에서 요구하는 동의서에 기재된 예비 양부모는 동의에 따라 동의를 한 후견 인과 함께 아동의 공동 후견인이 된다.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1)항에 따른 예비 양부모의 공동 후견인 지위는 종료된다.
- (a) 제 59 조에 따른 동의가 제 61 조제(1)항 에 따라 취소된다.
- (b) 입양명령이 발부되거나 입양명령 신청 이 기각된다.
- (b.1) 입양 배치의 취소로 아동이 예비 양부 모의 돌봄과 보호에서 벗어난다.
- (c) 법원이 공동 후견인 지위가 종료된다고 선언하는 명령을 내린다.

61 Revocation of consent

- (1) A person who has consented to the adoption of a child under section 59(1)(a) or (2) may, not later than 10 days after the date of the consent, revoke the consent by providing written notice of the revocation to a director.
- (2) The director who receives a notice under subsection (1) shall ensure that the person in whose custody the child has been placed and any other person who has consented under section 59(1)(a) or (2) to the adoption of the child are notified forthwith of the revocation of consent.
- (3) On receiving notification of a revocation of consent by the guardian who surrendered custody of the child, the person in whose custody the child has been placed shall forthwith return the child
- (a) if the child was placed in the custody of that person directly by the guardian who surrendered custody of the child, to the custody of that guardian, or
- (b) if the child was placed in the custody of that person by a licensed adoption agency, to the agency.
- (4) A licensed adoption agency to which a child is returned under subsection (3)(b) shall forthwith return the child to the custody of the guardian who surrendered custody of the child.

제61조(동의의 취소)

- (1) 제 59 조제(1)항제(a)호 및 제(2)항에 따라 아동의 입양에 동의를 하였던 자는 동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소 통지서를 책임자에게 교부하여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접수한 책임 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 그리고 제 59 조제 (1)항제(a)호 및 제(2)항에 따라 아동의 입 양에 동의를 하였던 다른 자에게 동의의 취 소가 즉시 통지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 (3) 아동의 보호를 포기하였던 후견인의 동의 취소의 통지서를 수령하면,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 (a) 아동의 보호를 포기하였던 후견인이 직접 아동의 보호를 인계한 경우 아동을 해당 후견인의 보호로 즉시 복귀시킨다.
- (b) 인가 입양기관이 아동의 보호를 인계한 경우 아동을 해당 기관으로 즉시 복귀시킨 다.
- (4) 제(3)항제(b)호에 따라 아동이 복귀한 인가 입양기관은 아동의 보호를 포기하였던 후견인의 보호로 아동을 즉시 복귀시킨다.

62 Application for adoption order

- (1) Subject to this section, an adult who, may apply to the Court in the prescribed form for an adoption order.
- (a) maintains the adult's usual residence in Alberta, or
- (b) maintained the adult's usual residence in Alberta at the time the adult received custody of a child under this Division,
- (2) Repealed 2003 c16 s68.
- (3) No application for an adoption order shall be filed in respect of a child unless the child is a Canadian citizen or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Canada for permanent residence and
- (a) the period for revoking a consent to adoption under section 61(1) has expired,
- (b) if the child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the period for appealing the order has expired or an appeal of the order has been disposed of, or
- (c) if the child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the period for terminating the agreement has expired or an application for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has been disposed of.

63 Documentation to accompany application

(1) An application for an adoption order in

제62조(입양명령 신청)

- (1) 이 조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인은 규정된 양식으로 입 양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a) 앨버타주에 통상적으로 거주한다.
- (b) 이 절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인계할 때에 앨버타주에 통상적으로 거주한다.
- (2)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68 조에 따라 폐지
- (3) 아동이 캐나다 시민이 아니거나 영주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지 아니 하였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아동에 대하여 입양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한 다.
- (a) 제 61 조제(1)항에 따른 입양 동의 취소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
- (b) 아동이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인 경우 명령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명령에 대한 항소가 처분되지 아니하였다.
- (c) 아동이 영구후견계약의 대상인 경우 계약 종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 종료 신청이 처분되지 아니하였다.

제63조(신청에 첨부할 서류)

(1)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

respect of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or who is the subject of an equivalent order or agreement in another country and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Canada for permanent residence shall be filed with the Court by a director and must be accompanied with the following documentation:

- (a) the affidavit of the director setting out
- (i) the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gender and parentage of the child, so far as is known.
- (ii) a statement that the director is the guardian of the child pursuant to the agreement or order,
- (iii) the terms of any agreement or order respecting access to the child,
- (iv) a statement that the applicant,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is a fit and proper person to have the care and custody of the child, and
- (v) if the child is a First Nation Individual, a statement that section 67 has been complied with;
- (b) the affidavit of the applicant setting out the age, address,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of the applicant and the relationship, if any, of the applicant to the child;

이거나 다른 국가의 이에 상응하는 명령이나 계약의 대상이며 영주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아동에 대한 입양명령 신청 은 책임자가 법원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a) 다음을 기재한 책임자의 선서진술서
- (i) 알고 있는 범위에서 아동의 이름, 출생 일자와 장소, 성(性) 및 혈통
- (ii) 계약이나 명령에 따라 책임자가 아동의 후견인이라는 진술서
- (iii) 계약이나 명령의 아동 면접 관련 조항
- (iv) 책임자의 판단에 따르면, 신청인이 아 동의 돌봄과 보호에 적합한 자라는 진술서
- (v) 아동이 원주민인 경우 제 67 조가 준수 되었다는 진술서
- (b) 신청인의 연령, 주소, 혼인 상태와 직업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인과 아동의 관 계를 기재한 신청인의 선서진술서

- (c) the consents required under section 59 or an affidavit indicating the reasons why the applicant is requesting that the Court dispense with one or more of the consents;
- (d) a home study report in the form required in the regulations prepared by a qualified person on behalf of the director respecting
- (i) the suitability of the applicant as an adoptive parent, and
- (ii) the capability and willingness of the applicant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a parent toward the child;
- (e) the affidavit of any person acceptable to the director respecting the fitness of the applicant to adopt the child, or any other material that the director may require;
- (f) if the applicant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child is an Indigenous child, a pla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that addresses how the child's Indigenous identity, culture, heritage, spirituality, language and traditions will be respected, supported and preserved.
- (2) An application for an adoption order in respect of a child who is placed in the custody of the applicant by a licensed adoption agency shall be filed with the Court by an officer of the licensed adoption agency and must be accompanied with the following documentation:

- (c) 제 59 조에서 요구하는 동의서 또는 신 청인이 동의서를 1 건 이상 생략하도록 법원 에 요청하는 이유가 기재된 선서진술서
- (d) 자격자가 책임자를 대리하여 규정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다음에 관하여 준비한 가 정조사보고서
- (i) 신청인의 양부모 적합성
- (ii) 아동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을 부담할 신청인의 능력과 의사
- (e) 신청인의 아동 입양 적합성 또는 책임 자가 요구하는 다른 사안에 관하여 책임자가 인정할 수 있는 자의 선서진술서
- (f) 신청인에게 아동이 토착 아동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립되며 아동이 토착민으로서 가지는 정체성, 문화, 전승, 영성, 언어 및 전통을 존중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다루는 계획
- (2) 인가 입양기관이 신청인의 보호를 받게 한 아동에 대한 입양명령 신청은 해당 인가 입양기관의 담당관이 법원에 제출하며 다음 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a) the affidavit of an officer of the licensed adoption agency setting out
- (i) the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gender and parentage of the child, so far as is known,
- (ii) a statement that the applicant, in the opinion of the officer, is a fit and proper person to have the care and custody of the child, and
- (iii) if the child is a First Nation Individual, a statement that section 67 has been complied with;
- (iv) repealed 2003 c16 s69;
- (b) the affidavit of the applicant setting out
- (i) the age, address,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of the applicant and the relationship, if any, of the applicant to the child.
- (ii) the terms of any agreement and any document or writing relating to any agreement under which payment or other consideration passes from the applicant in respect of care, maintenance, medical treatment or other necessities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parent of the child, and
- (iii) the terms of any agreement or order respecting time with the child or contact with the child;
- (c) the consents required under section 59

- (a) 다음을 기재한 인가 입양기관 담당관의 선서진술서
- (i) 알고 있는 범위에서 아동의 이름, 출생 일자와 장소, 성(性) 및 혈통
- (ii) 담당관의 판단에 따르면, 신청인이 아동 의 돌봄과 보호에 적합한 자라는 진술서
- (iii) 아동이 원주민인 경우 제 67 조가 준수 되었다는 진술서
- (iv)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69 조에 따라 폐지
- (b) 다음을 기재한 신청인의 선서진술서
- (i) 신청인의 연령, 주소, 혼인 상태와 직업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인과 아동의 관 계
- (ii) 신청인이 아동의 부모에게 또는 아동의 부모를 위하여 돌봄, 생계, 의료 또는 다른 필수품에 대하여 금전이나 다른 대가를 지급 하는 것에 관한 계약 조항과 계약 관련 문서 나 서면
- (iii) 계약이나 명령의 아동과의 시간이나 접 견 관련 조항
- (c) 제 59 조에서 요구하는 동의서 또는 신

or an affidavit indicating the reasons why the applicant is requesting that the Court dispense with one or more of the consents;

- (d) a home study report in the form required in the regulations prepared by a qualified person on behalf of an officer of the licensed adoption agency respecting
- (i) the suitability of the applicant as an adoptive parent, and
- (ii) the capability and willingness of the applicant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a parent toward the child;
- (e) the affidavit of any person acceptable to an officer of the licensed adoption agency respecting the fitness of the applicant to adopt the child, or any other material that the officer may require;
- (f) if the applicant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child is an Indigenous child, a pla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that addresses how the child's Indigenous identity, culture, heritage, spirituality, language and traditions will be respected, supported and preserved.
- (3) An application for an adoption order in respect of a child whose step—parent is the applicant or a child who is placed by a parent directly in the custody of an applicant shall be filed with the Court and must be accompanied with the following documentation:

청인이 동의서를 1 건 이상 생략하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이유가 기재된 선서진술서

- (d) 자격자가 인가 입양기관의 관리를 대리 하여 규정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다음에 관 하여 준비한 가정조사보고서
- (i) 신청인의 양부모 적합성
- (ii) 아동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을 부담할 신청인의 능력과 의사
- (e) 신청인의 아동 입양 적합성 또는 책임 자가 요구하는 다른 사안에 관하여 인가 입 양기관의 담당관이 인정할 수 있는 자의 선 서진술서
- (f) 신청인에게 아동이 토착 아동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립되며 아동이 토착민으로서 가지는 정체성, 문화, 전승, 영성, 언어 및 전통을 존중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다루는 계획
- (3) 의붓부모가 신청인인 아동에 대한 입양 명령 또는 부모가 직접 신청인의 보호를 받 게 한 아동에 대한 입양명령 신청은 법원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 (a) the affidavit of the applicant setting out
- (i) the name, date and place of birth, gender and parentage of the child, so far as is known,
- (ii) the age, address,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of the applican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applicant to the child,
- (iii) where the applicant is the step-parent of the child, the name of the parent who has lawful custody of the child, and
- (iv) the terms of any agreement or order respecting time with the child or contact with the child;
- (b) the consents required under section 59 or an affidavit indicating the reasons why the applicant is requesting that the Court dispense with one or more of the consents;
- (c) family and medical history of the child's biological parent as required by the regulations;
- (d) the results of a criminal record check of the applicant;
- (e) in the case of an applicant who is not a step-parent of the child, if the applicant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child is an Indigenous child, a pla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that addresses how the child's Indigenous identity, culture, heritage, spirituality, language and traditions will be respected, supported and

- (a) 다음을 기재한 신청인의 선서진술서
- (i) 알고 있는 범위에서 아동의 이름, 출생 일자와 장소, 성(性) 및 혈통
- (ii) 신청인의 연령, 주소, 혼인 상태와 직업 그리고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 (iii) 신청인이 아동의 의붓부모인 경우 해당 아동을 법률상으로 보호하는 부모의 이름
- (iv) 계약이나 명령의 아동과의 시간이나 접 견 관련 조항
- (b) 제 59 조에서 요구하는 동의서 또는 신청인이 동의서를 1 건 이상 생략하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이유가 기재된 선서진술서
- (c) 규정에서 요구하는 아동의 생물학적 부 모의 가족력과 병력
- (d) 신청인의 전과 조회 결과
- (e) 아동의 의붓부모가 아닌 신청인의 경우에 신청인에게 아동이 토착 아동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립되며 아동이 토착민으로서 가지는 정체성, 문화, 전승, 영성, 언어 및 전통을 존중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다루는 계획

preserved.

64 Service of notice of hearing

- (1) An applicant under section 62 shall serve, by personal service, together with the documentation required under section 63, on
- (a) a notice of the nature, dat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of the application not less than 3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hearing, or
- (b) a notice of objection in the prescribed form,
- (c) the guardians of the child other than the applicant,
- (d) if the applicant is the sole guardian of the child, the person who consented to the adoption under section 59(2),
- (e)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 (f) the Minister, if a person other than a director is filing the application, and
- (g) in the case of the adoption of a child who is not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the biological father of the child.
- (2) Any guardian who has indicated a desire not to be notified of the hearing need not be served under subsection (1).
- (3) A child referred to in subsection (1)(e)

제64조(심리 통지서의 송달)

- (1) 제 62 조에 따른 신청인은 제(a)호 및 제(b)호 중 어느 하나를 제 63 조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제(c)호부터 제(g)호까지해당하는 자에게 교부송달로 송달한다.
- (a) 적어도 심리기일 30 일 전까지 신청에 대한 심리의 성격, 일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서
- (b) 규정된 양식의 이의제기 통지서
- (c) 신청인을 제외한 아동의 후견인
- (d) 신청인이 아동의 단독 후견인인 경우 제 59 조제(2)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하였던 자
- (e) 아동이 12세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
- (f) 책임자 이외의 자가 신청을 한 경우 주 무장관
- (g)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의 대상 이 아닌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아동의 생물 학적 아버지
- (2) 심리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견인에게는 제(1)항에 따라 송달을 할 필요가 없다.
- (3) 제(1)항제(e)호에 규정된 아동에게는

need not be served with the home study report under subsection (1) or the results of a criminal record check under section 63(3).

- (4) A person who is served with a notice of objection form under subsection (1) may, within 10 days after being served, file a notice of objection with the clerk of the Court.
- (5) If no notice of objection is filed within 10 days after service on all the persons required to be served under subsection (1), the Court may consider the application in the absence of the applicant and all the pers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 (6) If a notice of objection is filed or if the Court considers that a hearing is necessary, the applicant must, at least 10 days before the date the application is to be heard, serve a notice of the nature, dat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 (7) No order for service ex juris is necessary for service of a copy of a notice on any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in a province or territory of Canada other than Alberta or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service must be effected at least
- (a) 30 days before the date the application is to be heard in the case of a person in a province or territory other than Alberta, or
- (b) 45 days before the date the application

제(1)항에 따른 가정조사보고서 또는 제 63 조제(3)항에 따른 전과 조회 결과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 (4)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 통지서 서식의 송달을 받은 자는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통지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 (5) 제(1)항에 따라 송달되어야 하는 모든 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이의제기 통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법원은 신청인 및 제(1)항에 규정된 자 전원의 출석없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 (6) 이의제기 통지서가 제출되거나 법원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은 적어 도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 10 일 전까지 심리 의 성격, 일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서 를 송달하여야 한다.
- (7) 제(1)항에 규정되며 앨버타주를 제외한 캐나다의 주나 준주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통지서 사본의 송달에는 관외송달 명령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만, 송달은 다 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a) 앨버타주를 제외한 캐나다의 주나 준주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적어도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 30일 전까지
- (b)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적어도 신

is to be heard in the case of a pers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8) The Court may, if it considers it appropriate to do so,
- (a) shorten the time for service on all orany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subsection(1), and
- (b) direct the manner of service, or approve the manner of service that has been effected, on all or any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65 Repealed 2003 c16 s71.

66 Investigation by the Minister

- (1) On being served with a notice under section 64, the Minister may conduct an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adoption and may file a report of the investigation with the clerk of the Court.
- (2) The Minister shall serve on the applicant forthwith a copy of any report filed by the Minister under subsection (1).

67 Consultation with band of First Nation child

(1) If a director or an officer of a licensed adoption agency, as the case may be,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child who is being placed for adoption is a First Nation Individual and a member of a band and that the guardian who is surrendering custody of

청에 대한 심리기일 45일 전까지

- (8)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음을 이 행할 수 있다.
- (a)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송달 시간을 단축한다.
- (b)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송달방식을 지시하거나 실행된 송달 방식을 승인한다.

제65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77조에 따라 폐지

제66조(주무장관의 조사)

- (1) 주무장관은 제 64 조에 따라 통지서의 송달을 받으면, 예정된 입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조사보고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 (2) 주무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을 즉시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제67조(원주민 아동의 부족과의 협의)

(1) 경우에 따라 책임자 또는 인가 입양기 관의 관리는 입양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이 원주민이며 부족민이고 아동의 보호를 포기 하고 있는 후견인이 보호구역 거주자라고 믿 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아동의 입양 관련 결정에 부족의회가 지정한 자를 포함시

the child is a resident of a reserve, the director or officer shall involve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uncil of the band in decisions relating to the adoption of the child.

- (2) If a director or an officer of a licensed adoption agency, as the case may be,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child who is being placed for adoption is a First Nation Individual and a member of a band and that the guardian who is surrendering custody of the child is not a resident of a reserve, the director or officer shall
- (a) request the guardian who is surrendering custody of the child to consent to the involvement of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uncil of the band in decisions relating to the adoption of the child, and
- (b) if the guardian consents to the involvement under clause (a), involve the person designated by the council of the band in decisions relating to the adoption of the child.

68 Court proceedings

- (1) If the Court considers, under section 64, that a hearing is necessary, the proceedings relating to the adoption of a child shall be heard in private unl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 (2) The applicant and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are entitled to be heard, in person or by counsel, at the

킨다.

- (2) 경우에 따라 책임자 또는 인가 입양기 관의 관리는 입양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이 원주민이며 부족민이고 아동의 보호를 포기 하고 있는 후견인이 보호구역 거주자가 아니 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을 이행 한다.
- (a) 해당 아동의 입양 관련 결정에 부족의회가 지정한 자가 관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아동의 보호를 포기하고 있는 후견인에게 요청한다.
- (b) 후견인이 제(a)호에 따라 관여에 동의 하면, 해당 아동의 입양 관련 결정에 부족의 회가 지정한 자를 포함시킨다.

제68조(법원 절차)

- (1) 법원은 제 64 조에 따라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동 입양 관련 절차를 비공개로 심리한다. 다만, 법원이 다르게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 신청인 그리고 12 세 이상인 아동은 법 원 심리에서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심

hearing before the Court.

- (3) The Court may adjourn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under this Division for not more than 30 days
- (a)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to the application, or
- (b)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adjourn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obtain evidence to assist the Court in determining whether an adoption order should be made.
- (4) Notwithstanding sections 59 and 63, on considering an application under this Division, the Court may make an order dispensing with the consent of, if the Court, for reasons that appear to it to be sufficient, considers it necessary or desirable to do so.
- (a) a guardian of the child other than a director,
- (b) a person who is required under section 59(2) to provide a consent, or
- (c) the child

69 Direct placement adoption

The Court may, if it considers it appropriate to do so, require a person who has applied to the Court for an adoption order in respect of a child referred to in section 63(3) to submit to the Court a home study report in the form required in the regulations prepared by a qualified person

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

- (3) 법원은 이 절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를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30 일 이하의 기간으로 연기할 수 있다.
- (a) 신청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다.
- (b) 법원이 입양명령을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증거를 얻기 위하여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4) 제 59 조와 제 63 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절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 따라, 동의의 생략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동의를 생략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책임자를 제외한 아동의 후견인
- (b) 제 59 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하여야 하는 자
- (c) 아동

제69조(직접 입양)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제 63 조제(3) 항에 규정된 아동에 대한 입양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자에게 규정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다음에 관하여 자격자가 준비한 가정조사보 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respecting

- (a) the suitability of the applicant as an adoptive parent, and
- (b) the capability and willingness of the applicant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a parent toward the child.

70 Adoption order

- (1)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Court may order the adoption of the child by the applicant.
- (a) the applicant is capable of assuming and willing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a parent toward the child, and
- (b)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at the child be adopted by the applicant,
- (2) An adoption order shall be in the prescribed form and shall show the name of the child prior to the adoption.
- (2.1) On making an adoption order in respect of a child who the Court has reason to believe is an Indigenous child, the Court shall advise the adopting parent of the adopting parent's obligations under section 71.1.
- (3) If the adopting parent is a widow or widower whose deceased spouse was a party to the application for the adoption order, or if on and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ct the adopting parent is an

- (a) 신청인의 양부모 적합성
- (b) 아동에 대하여 부모의 책임을 부담할 신청인의 능력과 의사

제70조(입양명령)

- (1)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신청인의 아동 입양을 명령할 수 있다.
- (a) 신청인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부 담할 수 있고 이를 부담할 의지가 있다.
- (b) 신청인이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아동에 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
- (2) 입양명령은 규정된 양식을 따르며 아동 의 입양 전 이름이 기재된다.
- (2.1) 법원은 토착 아동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입양명령을 내리면, 제 71.1 조에 따른 양부모의 의무를 양부모에게 알린다.
- (3) 입양명령 신청 당사자였던 배우자가 사망한 홀어미나 홀아비가 양부모인 경우 또는 「성인 상호의존적 관계법」의 시행 이후에 신청 당사자였던 성인 상호의존적 배우자 (「성인 상호의존적 관계법」에 정의된 바와같은 의미이다)가 사망한 성인 상호의존적

adult interdependent partner, as defined in that Act, whose deceased adult interdependent partner was a party to the application, the Court may, on the request of the adopting parent and with the consent of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name both the applicant and the deceased spouse as the adopting parents of the child.

- (4) On the request of the adopting parent and with the consent of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the Court may change the given name of the child in the adoption order.
- (5) When an adoption order is made, the surname of the adopting parent becomes the surname of the child unl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71 Subsequent application

- (1) If the Court dismisses an application for an adoption order, no further application for an adoption order under this Division shall be filed with the Court by or on behalf of that applicant until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not less than 2 years after the date of the hearing of the application.
- (2)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an application may be fil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within the 2-year period set out in subsection (1)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reasons for dismissal of the previous application no longer exist.

배우자가 양부모인 경우 법원은 양부모의 요 청에 따라 그리고 아동이 12 세 이상인 경우 에 아동의 동의에 따라 신청인과 사망한 배 우자 모두를 아동의 양부모로 기재할 수 있 다.

- (4) 양부모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아동이 12 세 이상인 경우에 아동의 동의에 따라, 법원은 입양명령에 기재된 아동의 성을 제외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 (5) 입양명령이 발부되면, 양부모의 성은 아동의 성이 된다. 다만, 법원이 다르게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1조(후속 신청)

- (1) 법원이 입양명령 신청을 기각하면, 그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부터 2 년 이상의 기간 이 경과할 때까지 이 절에 따른 입양명령 신 청은 해당 신청인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 하여 법원에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과거 신청의 기각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제(1)항에 규정된 2 년의 기간 내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71.1 Adoption of Indigenous child

If an adoption order is made in respect of an Indigenous child, the adopting parent shall

- (a) take reasonable steps to comply with the plan filed in respect of that child under section 63, and
- (b) if the Indigenous child is a First Nation Individual.
- (i) take reasonable steps on behalf of the child necessary for the child to exercise any rights the child may have as a First Nation Individual, and
- (ii) inform the child of the child's status as a First Nation Individual as soon as, in the opinion of that adopting parent, the child is capable of understanding the child's status as a First Nation Individual.

72 Effect of adoption order

- (1) For all purposes, when an adoption order is made, the adopted child is the child of the adopting parent and the adopting parent is the parent and guardian of the adopted child as if the child had been born to that parent.
- (2) Subject to subsection (3), for all purposes, when an adoption order is made, the adopted child ceases to be the child of that child's previous parents, whether that child's biological mother and biological

제71.1조(토착 아동의 입양)

토착 아동에 대하여 입양명령이 발부되면, 양부모는 다음을 이행한다.

- (a) 제 63 조에 따라 아동에 대하여 제출된 계획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한 다.
- (b) 토착 아동이 원주민인 경우 다음을 이 행한다.
- (i) 아동이 원주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조치를 아동을 대리하여 취한다.
- (ii) 아동이 자신의 원주민 신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양부모이 판단하는 즉시 아동의 원주민 신분을 아동에게 알린다.

제72조(입양명령의 효과)

- (1) 입양명령이 발부되면 모든 목적을 위하여 그 아동이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자녀이고 양부모는 입양 아동의 부모이며 후견인이다.
- (2) 제(3)항을 조건으로 하여, 입양명령이 발부되면 모든 목적을 위하여 입양 아동은 과거 부모, 즉 아동의 생물학적 어머니와 생 물학적 아버지 또는 과거 입양명령에 따른 양부모의 자녀가 아니고 아동의 과거 부모는

father or that child's adopting parents under a previous adoption order, and that child's previous parents cease to be that child's parents and guardians.

- (3) If a child is adopted by the step-parent of the child, the child does not cease to be the child of the parent who has lawful custody and that parent does not cease to be the parent and guardian of the child.
- (4) In any testamentary or other document, whether made before or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section, unless the contrary is expressed, a reference to a person or a group or class of persons described in terms of their relationship by blood or marriage to another person is deemed to refer to or to include, as the case may be, a person who comes within the description as a result of the person's own adoption or the adoption of another person.
- (5) For all purposes, when an adoption order is ma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pted child and any other person is the same as it would have been if the adopting parent were the biological mother or biological father of the adopted child.
- (6) Subsections (2), (4) and (5) do not apply
- (a) for the purposes of the laws relating to incest, and
- (b) with respect to the prohibited degrees

아동의 부모와 후견인이 아니다.

- (3) 아동이 그 의붓부모에게 입양되면 아동 은 계속하여 자신을 법률상으로 보호하는 부 모의 자녀이고 부모는 계속하여 자녀의 부모 이며 후견인이다.
- (4) 이 조의 시행 전이나 후에 작성되었는 지에 관계없이 유언장이나 다른 서류에서 다른 사람과의 혈족 관계나 인척 관계로 설명되는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이나 범주는 경우에 따라 자신의 입양 또는 다른 사람의 입양에 따라 그 설명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하거나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에반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입양명령이 발부되면 모든 목적을 위하여 입양 아동과 다른 자 사이의 관계는 양부모가 입양 아동의 생물학적 어머니나 생물학적 아버지인 경우와 동일하다.
- (6) 다음을 위하여서는 제(2)항, 제(4)항및 제(5)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근친상간에 관한 법률의 목적
- (b) 결혼 금지 촌수의 경우 이 조가 아니라

of marriage, to remove a person from a relationship in consanguinity that, but for this section, would have existed between them.

(7) A marriage between 2 persons is prohibited if, as a result of an adoption or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such that their marriage would be prohibited by the law respecting those relationships that bars the lawful solemnization of marriage.

(8) This section

- (a) applies and is deemed always to have applied to an adoption made under any enactment previously in force, and
- (b) is binding on the Crown for the purpose of construing this Act and the rights of succession affecting adopted children,

but nothing in this section affects an interest in property that has vested in a person before the making of an adoption order.

(9) An adoption order in respect of a child terminates any agreement or order made under this Act relating to the child except a restraining order made under section 30.

72.1 Adoption of non-resident of Canada

A resident of Alberta who wishes to adopt a child who is not lawfully admitted to reside in Canada must apply to a director, in 면 존재하였을 혈족 관계에서 특정인을 배제

(7) 입양명령의 결과로, 만일 2 명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합법적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 에 의해 그들의 결혼이 금지된다면, 그들의 결혼은 금지된다.

- (8) 이 조는 다음과 같다.
- (a) 과거에 시행되었던 입법에 따른 입양에 적용되며 언제나 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다.
- (b) 이 법 그리고 입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권의 해석을 위하여 국가를 구속한다.

다만, 이 조는 입양명령 발부 전에 특정인에 게 귀속된 재산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 아동에 대한 입양명령으로 이 법에 따른 아동에 관한 계약이나 명령이 종료된다. 다만, 제 30 조에 따른 금지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72.1조(비(非)캐나다 거주자의 입양)

캐나다 거주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아니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앨버타주 거주자 는 아동 배치의 진행을 위하여 규정에 따라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for approval to proceed with the placement of the child.

73 Effect of foreign order

An adoption effected according to the law of any jurisdiction outside Alberta has the effect in Alberta of an adoption order made under this Act, if the effect of the adoption order in the other jurisdiction is to create a permanent parent—child relationship.

73.1 Setting aside an adoption order

- (1) No application to set aside an adoption order shall be made after the expiration of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adoption order except on the ground that the order was procured by fraud, in which case it may be set aside only if it i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adopted child.
- (2) Notice of the nature, dat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must be served by the applicant on
- (a) the Minister,
- (b) the adopting parent, if the adopting parent is not the applicant,
- (c) the adopted child, if the adopted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and is not the applicant,
- (d) the person who was the guardian of the child immediately before the adoption order

책임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3조(외국 명령의 효과)

앨버타주 이외의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유효한 입양은 다른 관할권의 입양명령의 효과로 영구적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앨버타주에서 이 법에 따른 입양명령의 효과가 있다.

제73.1조(입양명령의 취소)

- (1) 입양명령일부터 1 년이 경과된 뒤에는 입양명령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명령이 위계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가 있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경우 입양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명령 을 취소할 수 있다.
- (2)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의 성격, 일자,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 지서를 다음과 같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 다.
- (a) 주무장관
- (b) 양부모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양부모
- (c) 입양 아동이 12 세 이상 신청인이 아닌 경우 입양 아동
- (d) 신청인이 아닌 경우 입양명령 발부 직

was made, if the person is not the applicant,

- (e) the Public Trustee, if a director was the guardian of the child immediately before the adoption order was made, and
- (f) any other person who in the opinion of the Court should be served.
- (3) If the adoption order is set aside, the applicant for the order setting it aside shall serve a copy of the order setting it aside on all those required to be served under subsection (2).
- (4) The clerk of the Court shall send a certified copy of an order setting aside an adoption order to
- (a) the 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and
- (b) the Registrar under the Indian Act (Canada) if the adopted child is a First Nation Individual.
- (5) When an adoption order is set aside,
- (a) the child ceases to be the child of the adopting parent,
- (b) the adopting parent ceases to be the parent and guardian of the child,
- (c)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ild and all persons as they were immediately before the adoption order was made are re-established.
- (d) unl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the person who was the guardian of the child

전에 아동의 후견인이었던 자

- (e) 책임자가 입양명령 발부 직전에 아동의 후견인이었던 경우 공인 수탁자
- (f) 법원이 송달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다른 자
- (3) 입양명령이 취소되면, 취소 명령의 신청 인은 취소 명령의 사본을 제(2)항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하는 모든 자에게 송달한다.
- (4) 법원 서기는 입양명령을 취소하는 명령의 등본을 다음과 같은 기관에 발송한다.
- (a) 인구동태 통계 등록관
- (b) 입양 아동이 원주민인 경우 「(캐나다) 인디언법」에 따른 등록관
- (5) 입양명령이 취소되면, 다음과 같다.
- (a) 아동은 양부모의 자녀가 아니다.
- (b) 양부모는 아동의 부모와 후견인이 아니다.
- (c) 입양명령 발부 직전에 존재하였던 아동 과 모든 사람 간의 관계가 부활한다.
- (d) 법원이 다르게 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입양명령 발부 직전에 아동의 후견인이었던

immediately before the adoption order was made is the guardian of the child, and

- (e) unl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 (i) the child's given name is the given name the child had before the adoption order was made, if any, and
- (ii) the child's surname is the surname the child had before the adoption order was made.

74 Distribution of adoption order

- (1) Not more than 35 days after an adoption order is made, the clerk of the Court shall send a certified copy of the adoption order to
- (a) the adopting parent,
- (b) the Minister,
- (c) the Public Trustee, if
- (i) a director was the guardian of the child immediately before the making of the order, and
- (ii) the Public Trustee requests a copy of the order,
- (d) the Registrar under the Indian Act (Canada), if the adopted child is a First Nation Individual, and
- (e) the 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자는 다시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 (e) 법원이 다르게 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다.
- (i) 해당되는 경우 아동의 성을 제외한 이름 은 입양명령 발부 전의 아동의 이름이다.
- (ii) 아동의 성은 입양명령 발부 전의 아동 의 성이다.

제74조(입양명령의 배포)

- (1) 법원 서기는 입양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35 일 이내에 입양명령의 등본을 다음과 같은 자에게 발송한다.
- (a) 양부모
- (b) 주무장관
- (c) 다음과 같은 경우 공인 수탁자
- (i) 책임자가 명령 발부 직전에 아동의 후견 인이었다.
- (ii) 공인 수탁자가 명령의 사본을 요청한다.
- (d) 입양 아동이 원주민인 경우 「(캐나다) 인디언법」에 따른 등록관
- (e) 인구동태 통계 등록관

- (2) The clerk of the Court shall provide to the 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 (a) any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an adoption order that the 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requires to enable that Registrar to carry out the requirements of the Vital Statistics Act, and
- (b) if the adopted child was born outside Alberta, an additional certified copy of the adoption order.
- (3) If a guardian other than a director has consented to the adoption of a child and an officer of a licensed adoption agency filed the application, an officer of the licensed adoption agency must, within 35 days after the making of the adoption order, notify the consenting guardian that the adoption order has been made, unless the consenting guardian has indicated a desire not to be notified.
- (4) A person who has consented under section 59(2) to the adoption of a child must be notifi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3) that the adoption order has been made, unless that person has indicated a desire not to be notified.
- (5) to (10) Repealed 2003 c16 s79.

Division 2 Adoption Information

74.1 Sealed information

- (2) 법원 서기는 인구동태 통계 등록관 에 게 다음을 제공한다.
- (a) 인구동태 통계 등록관이 「인구동태통계 법」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입양명령 관련 그 밖의 정보
- (b) 입양 아동이 앨버타주 외에서 출생한 경우 입양명령의 추가 등본
- (3) 책임자 이외의 후견인이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였고 인가 입양기관의 담당관이 신청을 제출한 경우 인가 입양기관의 관리는 입양명령일부터 35일 이내에 입양명령의 발부사실을 동의를 한 후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를 한 후견인이 통지를 받지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 59 조제(2)항에 따라 아동의 입양에 동의를 하였던 자는 제(3)항에 따라 입양명령의 발부 사실의 통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79 조에 따라 폐지

제2절 입양 정보

제74.1조(정보의 봉인)

- (1) The clerk of the Court must seal all documents possessed by the Court that relate to an adoption, and those documents are no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any person except on order of the Court or with the consent in writing of the Minister.
- (2) Despite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the Minister must seal adoption orders, all documents required by section 63 of this Act to be filed in support of adoption applications, adopted children's original registrations of birth and other documents required to be sealed by the regulations that are in the possession of the Minister, and they are no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any person except on order of the Court or pursuant to this Division.

74.2 Right to disclosure, pre-2005 adoptions

- (1) In this section,
- (a) "adopted person" means a person who is adopted under an adoption order made prior to January 1, 2005;
- (b) "parent" means a biological parent and an adoptive parent under a previous adoption order.
- (2) Subject to subsection (3), on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rom an adopted person who is 18 years of age or older, a descendant of a deceased adopted person or

- (1) 법원 서기는 법원이 점유하며 입양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봉인하여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서류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거나 주무장관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열람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 (2)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은 입양명령, 입양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 제 63 조로 제출이 요구되는 모든 서류, 입양 아동의 원본 출생증명서 그리고 규정으로 봉인이 요구되며 주무장관이 점유하는 그 밖의 서류를 봉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법원의 명령이나 이 절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열람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74.2조(정보 공개 청구권, 2005년 이전 입 양)

- (1)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 (a) "입양자" 란 2005 년 1 월 1 일 이전에 발부된 입양명령에 따라 입양된 자를 말한 다.
- (b) "부모" 란 생물학적 부모와 과거 입양명 령에 따른 양부모를 말한다.
- (2) 제(3)항을 조건으로 하여, 주무장관은 18 세 이상인 입양자, 사망한 입양자의 자손 또는 입양자의 부모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요청을 한 자에게 제 74.1 조제(2)항에 따라

a parent of an adopted person, the Minister may release to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the information in the orders, registrations and documents sealed under section 74.1(2) other than personal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o is neither the adopted person nor a parent of the adopted person.

- (3) The Minister shall not accept a request under subsection (2) from a parent of an adopted person unless the adopted person is 18 years and 6 months of age or older.
- (4) Despite subsection (2), if an adopted person who is 18 years of age or older or a parent of the adopted person has, prior to the date of the request under subsection (2), registered with the Minister a veto in a form satisfactory to the Minister prohibiting the relea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orders, registrations and documents sealed under section 74.1(2), the Minister shall not release the personal information unless the veto is revoked.
- (5) A person who registers a veto under subsection (4) may revoke the veto by providing written notice of the revocation to the Minister.
- (6) A veto registered under subsection (4) is revoked when the person who registered the veto is deceased.
- (7) Repealed 2008 c31 s33.

봉인된 명령, 등록증 및 서류에서 입양자나 그 부모가 아닌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외 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3) 주무장관은 입양자가 18 세 6 개월 이상 이 아닌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그 부모 의 요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18 세 이상인 입양자나 그 부모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일전에 주무장관이 만족할 만한 형식으로 제74.1 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명령, 등록증및 서류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거부권을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경우 주무장관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부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4)항에 따라 거부권을 등록한 자는 취소 통지서를 주무장관에게 교부하여 거부 권을 취소할 수 있다.
- (6) 제(4)항에 따라 등록된 거부권은 거부 권을 등록한 자가 사망하면 취소된다.
- (7)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33 조에 따라 폐지

- (8) Despite subsection (2), if the Minister receives proof, satisfactory to the Minister, that all the parents of an adopted person are deceased, the Minister may release to the adopted person or a descendant of the adopted person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orders, registrations and documents sealed under section 74.1(2),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who are neither the adopted person nor a parent.
- (9) Despite subsection (2), if the Minister is satisfie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to the Minister by the adoptive parents, that, the Minister may deem that a veto has been registered under subsection (4) by that adopted person, in which case the Minister shall not release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orders, registrations and documents sealed under section 74.1(2).
- (a) the adopted person who is 18 years of age or older is not aware of the adoption, and
- (b) the relea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would be extremely detrimental to the adopted person,
- (10) A deemed veto under subsection (9) is revoked on the request of an adopted person who is 18 years of age or older.

74.3 Adoptions on or after January 1, 2005

(1) In this section,

- (8)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은 입양자의 부모 전원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납득할수 있는 증명을 접수하면, 입양자나 부모가아닌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제74.1 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명령, 등록증및 서류의 모든 개인정보를 입양자나 그 후손에게 공개할 수 있다.
- (9)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은 양부 모가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 단하면, 입양자가 제(4)항에 따라 거부권을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 무장관은 제 74.1 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명령, 등록증 및 서류의 개인정보를 공개하 지 아니한다.
- (a) 18 세 이상인 입양자가 입양 사실을 알 지 못한다.
- (b) 개인정보의 공개가 입양자에게 아주 해 로울 수 있다.
- (10) 제(9)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부권은 18 세 이상인 입양자의 요청에따라 취소된다.

제74.3조(2005년 1월 1일 이후의 입양)

(1)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 (a) "adopted person" means a person who is adopted under an adoption order made on or after January 1, 2005;
- (b) "parent" means a biological parent and an adoptive parent under a previous adoption order.
- (2) Subject to subsection (3), on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rom an adopted person who is 18 years of age or older, a descendant of a deceased adopted person or a parent of an adopted person, the Minister may release to the person making the reques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orders, registrations and documents sealed under section 74.1(2).
- (3) The Minister shall not accept a request under subsection (2) from a parent unless the adopted person is 18 years and 6 months of age or older.
- (4) An adopted person, a parent or any person whose personal information may be in orders, registrations or documents sealed under section 74.1(2) may register a contact preference with the Minister that indicates the person's preferences concerning contact with a person who makes a request under subsection (2).
- (5) The Minister shall advise a person making a request under subsection (2) of any contact preference registered with respect to the requested information.

- (a) "입양자" 란 2005 년 1 월 1 일 이후에 발부된 입양명령에 따라 입양된 자를 말한 다.
- (b) "부모" 란 생물학적 부모와 과거 입양명 령에 따른 양부모를 말한다.
- (2) 제(3)항을 조건으로 하여, 주무장관은 18 세 이상인 입양자, 사망한 입양자의 자손 또는 입양자의 부모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요청을 한 자에게 제 74.1 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명령, 등록증 및 서류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3) 주무장관은 입양자가 18 세 6 개월 이상 이 아닌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부모의 요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 (4) 입양자, 부모 또는 제 74.1 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명령, 등록증이나 서류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와 연락하는 것에 관한 선호도를 표시하는 연락 선호도를 주무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 (5) 주무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에게 요청된 정보에 관하여 등록된 연락 선호도를 알린다.

74.4 General disclosure

- (1) If a child who is Indigenous is adopted under this Act or any predecessor to this Act, the Minister, on the request of the child, whether a minor or an adult, or the child's guardian, at any time, may provide a copy of the original registration of birth of the child, identifying information about the child's biological parents and any other information sealed under section 74.1 that the Minister considers relevant to the Registrar under the Indian Act (Canada), a settlement council of a Metis settlement or a federal or provincial official responsible for providing benefits to persons of Inuit ancestry,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an application for the child's Indigenous status and for execution of the child's rights as a person with Indigenous status.
- (2) Despite section 74.1, on request the Minister may provide a copy, and the clerk of the Court may provide a certified copy, of an adoption order to
- (a) the adopted person, if that person is 18 years of age or older,
- (b) a descendant of a deceased adopted person,
- (c) a guardian who consented under section 59(1) and a person who consented under section 59(2) to the adoption of the child who is the subject of the adoption order, and

제74.4조(일반적 공개)

(1) 토착 아동이 이 법 또는 구법(舊法)에 따라 입양된 경우 주무장관은 아동의 토착민지위 신청의 촉진과 아동이 토착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이거나성인인 해당 아동 또는 아동의 후견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아동의 원본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캐나다)인디언법」에 따른 등록관, 메티스 자치구의 자치 의회 또는 이누이트족 후손에 대한 사회보장을 책임지는 연방이나 주 공무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 제 74.1 조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따라 주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입양명령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고 법원 서기는 입양명 령의 등본을 제공할 수 있다.
- (a) 18 세 이상인 경우 입양자
- (b) 사망한 입양자의 자손
- (c) 입양명령의 대상인 아동의 입양에 대하여 제 59 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 후견인과 제 59 조제(2)항에 따라 동의한 자

- (d) any person named in section 74(1).
- (3) The Minister may disclose the identity of a person referred to in a sealed order, registration or document if, in the opinion of the Minister, there are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support disclosure.
- (4) The Minister may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sealed under section 74.1
- (a) to the Director of Maintenance Enforcement for the purposes of administering the Maintenance Enforcement Act, and
- (b) for use in a proceeding before a Court to which the Government of Alberta is a party.
- (5) The Minister, on request, may release to an adopted person or the adopted person's, any information about one or more of those persons if the information does not disclose the identity of any of those persons.
- (a) biological mother,
- (b) biological father,
- (c) sibling,
- (d) adopting parent, or
- (e) descendant, if the adopted person is deceased,
- (6) Only an adult sibling may make a

- (d) 제 74 조제(1)항에 기재된 자
- (3) 주무장관은 공개를 뒷받침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하면, 봉인된 명령, 등록증이나 서류에 언급된 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
- (4) 주무장관은 제 74.1 조에 따라 봉인된 개인정보를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양육비 관리법」의 시행을 위하여 양 육비 관리청장에게 공개한다.
- (b) 앨버타주 정부가 당사자인 법원의 절차 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공개한다.
- (5) 주무장관은 요청에 따라 입양자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러 한 자들 중에서 1 명 이상에 대한 정보를 공 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보가 이러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a) 입양자의 생물학적 어머니
- (b) 입양자의 생물학적 아버지
- (c) 입양자의 형제자매
- (d) 입양자의 양부모
- (e) 입양자가 사망한 경우 입양자의 후손
- (6) 성인인 형제자매만이 제(5)항제(c)호에

request under subsection (5)(c).

(7) If an adopted child or a sibling of an adopted child is in need of intervention, the Minister may release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s, registrations and documents sealed under section 74.1(1) to a director for the purposes of providing intervention services to that adopted child or sibling.

75 Matching applications for voluntary disclosure of identities

- (1) In this section.
- (a) "adopted person" means a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an adoption order made under this Act or any predecessor to this Act;
- (b) "adoptive applicant" means
- (i) an adopted person who is 18 years of age or older,
- (ii) an adopted child who is 16 years of age or older who is, in the opinion of the Minister, living independently from the child's guardian,
- (iii) an adopted child, where the application is made on the child's behalf by the child's guardian, and
- (iv) a descendant of a deceased adopted person;
- (c) "family applicant", in respect of an

따라 요청을 할 수 있다.

(7) 입양 아동이나 그 형제자매에게 개입이 필요한 경우 주무장관은 해당 입양 아동이나 형제자매에게 개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 74.1 조제(1)항에 따라 봉인된 명령, 등록 증 및 서류의 개인정보를 책임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5조(신원의 자발적 공개를 위한 상호 신 청)

- (1)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 (a) "입양자" 란 이 법 또는 구법(舊法)에 따른 입양명령의 대상인 자를 말한다.
- (b) "입양자 신청인" 이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 (i) 18 세 이상인 입양자
- (ii) 입양 아동이 후견인에게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주무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16 세 이상인 입양 아동
- (iii) 그 후견인이 아동을 대리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입양 아동
- (vi) 사망한 입양자의 자손
- (c) "가족 신청인" 이란 다음 중에서 하나

adopted person, means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 (i) a biological parent of the adopted person;
- (i.1) a parent, by adoption, of an adopted person, if the adopted person is deceased;
- (ii) an adult sibling of the adopted person;
- (iii) an adult related by blood to the adopted person if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adopted person consent in writing to the application or if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adopted person
- (A) are deceased.
- (B) cannot be located, or
- (C) are unable by reason of mental incapacity to consent to the application;
- (iv) an adult member of any band or Metis settlement of which the adopted person is a member, if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adopted person consent in writing to the application or if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adopted person
- (A) are deceased,
- (B) cannot be located, or
- (C) are unable by reason of mental incapacity to consent to the application;

이상을 말한다.

- (i) 입양자의 생물학적 부모
- (i.1) 입양자가 사망한 경우 입양자의 양부 모
- (ii) 입양자의 성인 형제자매
- (iii) 입양자의 생물학적 부모가 신청에 서면 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주무장관이 입양자의 생물학적 부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양자와 혈연 관계인 성인
- (A) 사망하였다.
- (B)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 (C)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
- (iv) 입양자의 생물학적 부모가 신청에 서면 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주무장관이 입양자의 생물학적 부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양자가 부족민인 부 족이나 메티스 자치구의 성인 부족민
- (A) 사망하였다.
- (B)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 (C)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

- (v) a person who was a parent of the adopted person under a previous adoption order.
- (2) An adoptive applicant or a family applicant who wishes to learn the other's identity may apply to the Minister in the form set by the Minister and shall specify in the application the name of the adopted person to whom the application relates.

(3) The Minister

- (a) shall maintain a registry of applications made under subsection (2),
- (b) shall, on receiving an application made under subsection (2), examine the registry to determine if it contains another application concerning the same adopted person,
- (c) shall, on receiving notice of withdrawal, immediately remove from the registry any application that is withdrawn by an adoptive applicant or a family applicant, and
- (d) shall include in the registry
- (i) all vetoes registered with the Minister under section 74.2, and
- (ii) the name of an adopted person who has died, if the Minister has been advised of the death.
- (4) Where the Minister determines from examining the registry that applications from an adoptive applicant and from a

- (v) 과거 입양명령에 따라 입양자의 부모였 던 자
- (2) 상대방의 신원을 알고자 하는 입양자 신청인이나 가족 신청인은 주무장관이 정한 형식으로 주무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과 관련된 입양자의 이름을 신청서에 명 시한다.
- (3) 주무장관은 다음을 이행한다.
- (a)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등록부를 작성 한다.
- (b)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면, 동일 한 입양자에 관한 다른 신청이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등록부를 검토한다.
- (c) 취소 통지서를 접수하면, 입양자 신청인이나 가족 신청인이 취소한 신청을 등록부에서 즉시 삭제한다.
- (d) 등록부에 다음을 추가한다.
- (i) 제 74.2 조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등록된 모든 거부권
- (ii) 주무장관이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사망한 입양자의 이름
- (4) 주무장관은 등록부 검토를 통하여 입양 자 신청인 그리고 제(1)항제(c)호(i)목이나 (ii)목에서 의미하는 가족 신청인의 신청이

family applicant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1)(c)(i) or (ii) concern the same adopted person, the Minister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locate the applicants and,

- (a) if both applicants are located, shall disclose the applicants' identities to each other, or
- (b) if one applicant only is located, shall disclose the other applicant's identity to the located applicant.
- (5) Where the Minister determines from examining the registry that applications from an adoptive applicant and from a family applicant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1)(c)(iii) to (v) concern the same adopted person, the Minister
- (a)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locate the applicants,
- (b) shall advise the adoptive applicant that an application from the family applicant has been entered in the registry,
- (c) shall inquire whether the adoptive applicant wishes to disclose the applicant's identity to the family applicant, and
- (d) shall disclose
- (i) the applicants' identities to each other, if both applicants are located and if the adoptive applicant agrees to the disclosure, or

동일한 입양자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신청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합리적 노 력을 한 이후에 다음을 이행한다.

- (a) 신청인 모두의 소재를 파악한 경우 신청 인의 신원을 서로에게 공개한다.
- (b) 신청인 1 명의 소재만을 파악한 경우 다른 신청인의 신원을 소재가 파악된 신청인에게 공개한다.
- (5) 주무장관은 등록부 검토를 통하여 입양자 신청인 그리고 제(1)항제(c)호(iii)목부터(v)목까지에서 의미하는 가족 신청인의 신청이 동일한 입양자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다음을 이행한다.
- (a) 신청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합리 적 노력을 한다.
- (b) 가족 신청인의 신청이 등록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양자 신청인에게 알린다.
- (c) 입양자 신청인이 자신의 신원을 가족 신청인에게 공개하려는 지를 문의한다.
- (d) 다음을 이행한다.
- (i) 신청인 모두의 소재가 파악되고 입양자 신청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 원을 서로에게 공개한다.

- (ii) the family applicant's identity to the adoptive applicant, if the adoptive applicant only is located.
- (6) Repealed 2003 c16 s81.
- (7) The Minister shall advise an applicant if
- (a) repealed 2003 c16 s81,
- (b) the registry indicates that the adopted person is dead, or
- (c) the other applicant cannot be located.

76 to 80 Repealed 2003 c16 s82.

Division 3 Financial Assistance 81 Repealed 2018 c24 s14.

82 Repealed 2003 c16 s84.

Division 4 Offences

83 Prohibition on payment

(1) No person shall give or receive or agree to give or receive any payment or reward, whether direct or indirect, a child for the purposes of an adoption in or outside Alberta.

- (ii) 입양자 신청인의 소재만이 파악된 경우 가족 신청인의 신원을 입양자 신청인에게 공 개한다.
- (6)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81 조에 따라 폐지
- (7) 주무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신청 인에게 알린다.
- (a)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81 조에 따라 폐지
- (b) 등록부에 따른 입양자의 사망 여부
- (c) 다른 신청인의 소재 파악 여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2003년 법률 제16호 제82조에 따라 폐지

제3절 재정지원

제81조 2018년 법률 제24호 제14조에 따라 폐지

제82조 2003년 법률 제16호 제84조에 따라 폐지

제4절 범죄

제83조(지급 금지)

(1) 누구든지 앨버타주 내외에서 입양을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대가나 사례금을 수수하거나 수수에 대한 합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a) to procure or assist in procuring, or
- (b) to place or facilitate the placement of
- (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to reasonable fees, expenses or disbursements paid to
- (a) a qualified person in respect of the preparation of a home study report pursuant to this Part,
- (b) a lawyer in respect of legal service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an adoption,
- (c) a physician in respect of medical services provided to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n adoption, or
- (d) a licensed adoption agency, if the fees, expenses or disbursements are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84 Prohibition on facilitation

No person other than the following shall place or facilitate the placement of a child for the purpose of an adoption:

- (a) a parent of the child;
- (b) a director;
- (c) a licensed adoption agency;
- (d) the Minister.
- (e) repealed 2003 c16 s86.

- (a) 아동을 알선하거나 알선을 지원한다.
- (b) 아동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촉진한다.
- (2) 제(1)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게 지급 되는 정당한 수수료, 경비나 지출에 적용되 지 아니한다.
- (a) 이 부에 따른 가정조사보고서의 준비와 관련하여 자격자
- (b) 입양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 와 관련하여 변호사
- (c) 입양의 대상인 아동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사
- (d) 규정으로 수수료, 경비나 지출을 정하는 경우 인가 입양기관

제84조(촉진 금지)

다음과 같은 자를 제외한 자는 입양을 목적 으로 아동을 배치하거나 아동의 배치를 촉진 하지 아니한다.

- (a) 아동의 부모
- (b) 책임자
- (c) 인가 입양기관
- (d) 주무장관
- (e)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86 조에 따라 폐지

85 Prohibition on advertising

- (1) No person shall publish in any form or by any means an advertisement dealing with the adoption of a child.
- (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to
- (a) the publication of a notice pursuant to an order of the Court.
- (b)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6.2(2)(a), the publication of any advertisement authorized by the Minister or a director for the purpose of finding homes for children in the custody or under the guardianship of a director.
- (c) the publication of an announcement by an applicant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or
- (d) the publication of an advertisement by a licensed adoption agency advertising its services only, without making any reference to specific children.
- (3) A person who contraven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fine of not more than \$2500 and in default of pay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one month.

86 Offence and penalty

(1) Any person and any officer or employee of a corporation who contravenes section 83 or 84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 and in

제85조(광고 금지)

- (1) 누구든지 아동의 입양을 다루는 광고를 형식이나 수단에 관계없이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2) 제(1)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되 지 아니한다.
- (a) 법원 명령에 따른 통지서의 공표
- (b) 주무장관이나 책임자가 책임자의 보호 나 후견을 받는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 주기 위하여 제 126.2 조제(2)항제(a)호에 따라 허가한 광고의 공표
- (c) 신청인의 신청에 관한 공고의 공표
- (d) 특정 아동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서 비스만을 광고하는 인가 입양기관 광고의 공 표
- (3) 이 조를 위반한 자는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으며 이에 따라 2,5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1 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제86조(범죄 및 벌칙)

(1) 제 83 조나 제 84 조를 위반한 자 그리고 이를 위반한 법인의 임원이나 피고용인은 범 죄의 유죄판결을 받으며 이에 따라 10,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

default of pay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6 months.

(2) No prosecution shall be commenced under this section except on the written authority of the Minister.

Division 5 Licensing of Adoption Agencies

87 Application for licence

- (1) An application for a licence to operate an adoption agency or for a renewal of a licence, may be submitted to a director in accordance with this Division and the regulations by
- (a) a body incorporated under the Societies Act.
- (b) an extra-provincial corporation registered under Part 21 of the Business Corporations Act if,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the corporation does not carry on business for the purpose of gain,
- (c) a body referred to in Part 9 of the Companies Act, or
- (d) a body incorporated under Part II or III of the Canada Corporations Act (Canada).
- (2)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must
- (a) be in the prescribed form,
- (b) be accompanied with any other

지 아니하면 6 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2) 이 조에 따른 기소는 주무장관의 허가 장이 없으면 개시되지 아니한다.

제5절 입양기관의 허가

제87조(허가 신청)

- (1) 다음 중 어느 하나는 입양기관 운영 허가나 그 갱신 신청을 이 절과 규정에 따라 책임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a)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b) 그 회사가 수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고 책임자가 판단하는 경우 「주식 회사법」 제 21 부에 따라 등록된 주 외부의 회사
- (c) 「회사법」 제 9 부에 규정된 법인
- (d) 「(캐나다) 캐나다 주식회사법」 제 II 부나 제 III 부에 따라 설립된 법인
- (2)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규정된 양식을 따른다.
- (b)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법에 따른 인가

information required under the regulations to enable the director to determine the capacity of the applicant to provide the services and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of a licensed adoption agency in accordance with this Act, and

(c) be accompanied with the prescribed fee.

88 Licence

- (1) A director, after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87, may
- (a) issue or renew a licence,
- (b) if the applican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under section 87(2), issue a conditional licence, subject to any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director considers appropriate and for the period the director considers appropriate, to provide the applicant time to meet the requirements, or
- (c) if the director is not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is capable of providing the services and carrying out the responsibilities of a licensed adoption agency, refuse to issue or renew a licence.
- (2) A licence issued under this section shall
- (a) identify the name of the corporate body to which it is issued, and
- (b) in the case of a conditional licence, state the terms and conditions to which the

입양기관의 책임을 이행하는 신청인의 능력을 책임자가 판단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정보가 첨부된다.

(c) 규정된 수수료가 첨부된다.

제88조(허가)

- (1) 책임자는 제 87 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 한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허가를 부여하거나 갱신한다.
- (b) 신청인이 제 87 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요건을 충족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책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책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으로 조건부 허가를 부여하다.
- (c) 신청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가 입양기관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고 책임자가 판단하지 아니하면, 허가의 발급이나 갱신을 거절한다.
- (2) 이 조에 따라 부여된 허가는 다음과 같다.
- (a) 발급 대상 법인의 명칭이 확인된다.
- (b) 조건부 허가의 경우 허가의 조건이 기

licence is subject.

- (3) A licence issued under this section, other than a conditional licence, is valid for 2 years from the date of its issue.
- (4) A licence issued under this section is not transferable.

89 Suspension, cancellation and refusal of licence

- (1) A director may suspend or cancel a licence issued under section 88 if
- (a) the director is not satisfied that the licensee is capable of continuing to provide the services and to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of that licensee, or
- (b)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licensee has contravened this Act or the regulations or any other Act or has acquiesced in a contravention of this Act or the regulations or any other Act.
- (2) If a director imposes terms and conditions under section 88(1)(b), refuses to issue or renew a licence under section 88(1)(c) or suspends or cancels a licence under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the director shall serve on the applicant or licensee, as the case may be, a notice in writing in the prescribed form
- (a) setting out that decision and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and

재된다.

- (3) 조건부 허가를 제외하고, 이 조에 따라 부여된 허가는 발급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 (4) 이 조에 따라 부여된 허가는 양도가 불가하다.

제89조(허가의 정지, 취소 및 거절)

- (1) 책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88 조에 따라 부여된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a) 허가 소지자가 서비스의 제공과 허가 소지자의 책임 이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책임자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b) 허가 소지자의 임원이나 피고용인이 이법이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그 위반을 묵인하였다.
- (2) 책임자는 제 88 조제(1)항제(b)호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거나 제 88 조제(1)항제(c)호에 따라 허가의 발급이나 갱신을 거절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면, 경우에 따라 신청인이나 허가소지자에게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규정된 양식으로 송달한다.
- (a) 결정과 그 이유가 기재된다.

- (b) informing the applicant or licensee, as the case may be, of its right to an appeal under section 120.
- (3) A decision under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or section 88(1)(b) or (c) takes effect 30 days after the date of service of the notice under subsection (2) and remains in force pending the outcome of an appeal.
- (4) If a director is of the opinion that a licensed adoption agency is being operated in a manner that presents an imminent risk to the health or safety of children, the director may on 48 hours' notice in writing
- (a) suspend the licence of the licensed adoption agency, and
- (b) provide to the licensed adoption agency a direction as to what remedy is required to rectify the situation.
- (5) A licensed adoption agency that is served with a notice under subsection (4) shall forthwith comply with the direction set out in the notice.
- (6) A director may on 48 hours' notice in writing cancel the licence of a licensed adoption agency that does not comply forthwith with the direction set out in the notice.
- (7) A director shall notify the clients of a licensed adoption agency of a decision under this section forthwith.

- (b) 경우에 따라 신청인이나 허가 소지자에 게 제 120 조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권리를 알린다.
- (3) 이 조 제(1)항 및 제 88 조제(1)항제(b) 호 및 제(c)호에 따른 결정은 제(2)항에 따라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30 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 (4) 책임자는 인가 입양기관이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48 시간 전에서면으로 고지하고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인가 입양기관의 허가를 정지한다.
- (b)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방 법에 관한 지시를 인가 입양기관에 제시한 다.
- (5) 제(4)항에 따라 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인가 입양기관은 즉시 통지서에 기재된 지시 를 이행한다.
- (6) 책임자는 48시간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인가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7) 책임자는 인가 입양기관의 고객에게 이 조에 따른 결정을 즉시 통지한다.

90 Surrender of licence, etc.

A licensee, shall surrender to a director its licence and the books and records in its possession that relate to its clients or to the children that it has placed for adoption.

- (a) whose licence is cancelled, or
- (b) that ceases to carry on the operation of a licensed adoption agency,

91 Right to enter premises

- (1) A director, on reasonable notice, at a reasonable time and on communicating to an officer of a licensee the purpose and authority for an inspection, may
- (a) enter on any land or premises of a licensed adoption agency, other than a private dwelling, and inspect the land or premises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if the agency is complying with this Part and the regulations,
- (b) demand the production for examination of any books, records, accounts or other documents that are or may be relevant to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and
- (c) on giving a receipt for them, remove any of the things referred to in clause (b) for the purpose of making copies of them.
- (2) A person who removes anything referred to in subsection (1)(b) may make copies of the things that were removed and shall return the things that were removed to

제90조(허가 등의 반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소지자 는 허가 그리고 자신이 점유하며 고객 또는 입양을 진행한 아동에 관한 장부와 기록을 책임자에게 이전한다.

- (a) 허가가 취소되었다.
- (b) 인가 입양기관의 운영을 중단한다.

제91조(구내 진입권)

- (1) 책임자는 정당한 고지를 하고 합리적인 시간에 허가 소지자의 임원에게 목적과 검사 권한을 전달한 이후에 다음을 이행할 수 있 다.
- (a) 개인 거주지를 제외한 인가 입양기관의 토지나 구내에 진입하고 해당 기관이 이 부 와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와 구내를 검사한다.
- (b) 검사 목적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장부, 기록, 회계장부나 그 밖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 (c) 수령증을 교부하고 복사를 하기 위하여 제(b)호에 언급된 물건을 반출한다.
- (2) 제(1)항제(b)호에 규정된 물건을 반출 한 자는 반출된 물건을 복사하고 반출 이후 합리적 기간 내에 구내에서 반출된 물건을

the premises from which they were removed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removing them.

- (3) If a person refuses or fails, the director may apply to a judge of the Court for an order under subsection (4).
- (a) to permit entry on any land or premises under subsection (1)(a), or after permitting entry obstructs a director in the exercise of the director's authority under this section,
- (b) to comply with a demand under subsection (1)(b), or
- (c) to permit the removal of a thing under subsection (1)(c),
- (4) If o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3) the judge is satisfied that there are reasonable and prob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ccess to land or premises or the production or removal of books, records, accounts or other documents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if a licensee is complying with this Part and the regulations, the judge may make any order that the judge considers necessary to enforce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Division 6 Intercountry Adoption with Respect to Designated States

92 Interpretation

(1) In this Division.

반환한다.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법원 판사에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a) 제(1)항제(a)호에 따른 토지나 구내 진입의 허용을 거절하거나 불이행한다. 또는 진입을 허용한 이후에 책임자가 이 조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 (b) 제(1)항제(b)호에 따른 요구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불이행한다.
- (c) 제(1)항제(c)호에 따른 물건 반출의 허용을 거절하거나 불이행한다.
- (4) 판사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토지나 구내의 진입 또는 장부, 기록, 회계장부나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이나 반출이 허가 소지 자가 이 부와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 는 합리적이고 유력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 면, 이 조의 이행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6절 지정 국가 관련 국가 간 입양

제92조(해석)

(1)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a) "competent authority for Alberta" means a competent authority designated in the regulations under this Division;
- (b) "designated State" means a State recognized as a designated State under section 105;
- (c) "licensed adoption agency" means an adoption agency that holds a licence under section 88;
- (d) "State" means a country or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country.
- (2)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is the Central Authority as provided for in section 96.

93 Scope of Division 6

- (1) This Division applies if, for the purposes of adoption,
- (a) a child habitually resident in a designated State has been, is being or is to be moved to Alberta
- (i) after the child's adoption in the designated State, or
- (ii) for the purposes of adoption in Alberta or in the designated State, or
- (b) a child habitually resident in Alberta has been, is being or is to be moved to a

과 같다.

- (a) "앨버타주 관할기관" 이란 이 절에 따른 규정으로 지정된 관할기관을 말한다.
- (b) "지정 국가" 란 제 105 조에 따라 지정 국가로 인정된 국가를 말한다.
- (c) "인가 입양기관"이란 제 88 조에 따라 허가를 보유한 입양기관을 말한다.
- (d) "국가" 란 국가 또는 국가의 정치적 하 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 (2) 앨버타주 중앙 당국은 제 96 조에 규정 된 중앙 당국이다.

제93조(제6절의 적용범위)

- (1) 이 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a) 지정 국가에 상시 거주하는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앨버타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 있거나 이주할 예정이다.
- (i) 아동이 지정 국가에서 입양된 이후
- (ii) 앨버타주나 지정 국가에서의 입양을 위하여
- (b) 앨버타주에 상시 거주하는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지정 국가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 있거나 이주

designated State

- (i) after the child's adoption in Alberta, or
- (ii) for the purposes of adoption in the designated State.
- (2) This Division applies only to adoptions that create a permanent parent—child relationship.
- (3) This Division ceases to apply to a child if the agreements described in section 100(1)(c) and (2)(c) have not been made before the child attains the age of 18 years.

94 Paramountcy

Division 1 applies to an adoption to which this Division applies, but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Division 1 and this Division, this Division prevails.

95 Intercountry adoptions

- (1) If a child is habitually resident in a designated State, an adoption under this Division may take place only i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Alberta
- (a) has determined that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are eligible and suited to adopt,
- (b) has ensured that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have received training, satisfactory to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on preparation for international adoption, and

할 예정이다.

- (i) 아동이 앨버타주에서 입양된 이후
- (ii) 지정 국가에서의 입양을 위하여
- (2) 이 절은 영구적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입양에만 적용된다.
- (3) 제 100 조제(1)항제(c)호와 제(2)항제 (c)호에 규정된 계약이 아동이 18 세가 되기 전에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절은 해당 아동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4조(우선 적용)

제 1 절은 이 절이 적용되는 입양에 적용되지만, 제 1 절과 이 절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이 절이 우선한다.

제95조(국가 간 입양)

- (1) 아동이 지정 국가에 상시 거주하는 경우 앨버타주 관할기관이 다음과 같이 하여야만 이 절에 따른 입양이 가능하다.
- (a) 예비 양부모에게 자격이 있고 입양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b) 예비 양부모가 앨버타주 중앙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국제 입양 준비에 대한 훈련 을 받았다는 것을 보장하였다.

- (c) is satisfied that the child is or will be authorized to enter and reside permanently in Canada.
- (2) If a child is habitually resident in Alberta, an adoption under this Division may take place only i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Alberta
- (a) has established that the child is adoptable,
- (b) has determined, after possibilities for placement of the child within Canada have been given due consideration, that an intercountry adoption is in the child's best interests.
- (c) has ensured that those who are required to consent to the adoption have been informed of the effect of the consent and have given consent freely in writing in the required form, have not withdrawn their consent and have not been induced by payment or compensation to provide consent.
- (d) has ensured that the consent of the guardians of the child has been given only after the birth of the child, and
- (e)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has ensured that
- (i) the child has been counselled and informed of the effects of the adoption,
- (ii)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 (c) 아동의 입국이 허가되거나 허가될 것이 며 아동이 캐나다에 영주한다고 판단한다.
- (2) 아동이 앨버타주에 상시 거주하는 경우 앨버타주 관할기관이 다음과 같이 하여야만 이 절에 따른 입양이 가능하다.
- (a) 아동의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 였다.
- (b) 아동의 캐나다 배치 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한 이후에 국가 간 입양이 아동에게 최 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c) 입양에 동의를 하여야 하는 자가 동의의 효과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요구되는 형식으 로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서를 교부하였고 동의를 취소하지 아니하였고 동의에 대한 대 가나 보상으로 유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장하였다.
- (d) 아동 후견인의 동의가 아동의 출생 뒤에만 교부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였다.
- (e) 아동이 12 세 이상인 경우 다음을 보장 하였다.
- (i) 아동이 상담을 받았고 입양의 효과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
- (ii) 아동의 희망과 의견이 고려되었다.

child's wishes and opinions, and

(iii) the child's consent to the adoption has been given freely in writing in the required form and has not been induced by payment or compensation.

96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 (1) A director is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 (2) Repealed 2003 c16 s93.2.

97 Central Authority duties

- (1)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 (a) is to co-operate with Central Authorities in other designated States and promote co-oper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for Alberta to protect children, and
- (b) is to carry out its powers and duties under this Division.
- (2)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must ensure that all appropriate measures are taken, in particular th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bout the situation of the child and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as necessary to complete the adoption.

98 Apply to adopt

Persons who are habitually resident in Alberta may apply to the Central Authority (iii) 입양에 대한 아동의 동의가 요구되는 형식으로 자유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되 었고 대가나 보상으로 유도되지 아니하였다.

제96조(앨버타주 중앙 당국)

- (1) 책임자는 앨버타주 중앙 당국이다.
- (2)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93.2 조에 따라 폐지

제97조(중앙 당국의 임무)

- (1) 앨버타주 중앙 당국은 다음과 같다.
- (a) 다른 지정 국가의 중앙 당국과 협조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앨버타주 관할기관 과의 협조를 활성화한다.
- (b) 이 절에 따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 (2) 앨버타주 중앙 당국은 입양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는 특히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 보 존 및 교환이 포함된다.

제98조(입양 신청)

앨버타주에 상시 거주하는 자는 지정 국가에 상시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데 필요한

for Alberta in the required form to adopt a child who is habitually resident in a designated State.

99 Report on applicants

- (1) If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determines that the applicants are eligible and suited to adopt, it must ensure that a report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 (2)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must send the report referred to in subsection(1) to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designated State where the child is habitually resident.

100 Decision on adoption

- (1) If a decision is to be made in a designated State regarding the placement of a child habitually resident in that State with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habitually resident in Alberta,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may approve the placement if
- (a) the requirements of section 95(1) have been met.
- (b)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have agreed to the adoption, and
- (c)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designated State and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have agreed that the adoption may proceed.
- (2)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may make a decision regarding the placement of

양식으로 앨버타주 중앙 당국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9조(신청인 보고서)

- (1) 앨버타주 중앙 당국은 신청인에게 자격이 있고 입양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규정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2) 앨버타주 중앙 당국은 제(1)항에 규정 된 보고서를 아동이 상시 거주하는 지정 국 가의 중앙 당국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00조(입양에 대한 결정)

- (1) 지정 국가에 상시 거주하는 아동을 앨 버타주에 상시 거주하는 예비 양부모에게 배 치하는 것에 관한 결정이 해당 국가에서 이 루어지면, 앨버타주 중앙 당국은 다음의 경 우 그 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
- (a) 제 95 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 (b) 예비 양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였다.
- (c) 지정 국가 중앙 당국과 앨버타주 중앙 당국이 입양 진행에 합의하였다.
- (2) 앨버타주 중앙 당국은 다음의 경우 앨 버타주에 상시 거주하는 아동을 지정 국가에

a child habitually resident in Alberta with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habitually resident in a designated State if

- (a)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designated State has approved the placement,
- (b)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have agreed to the adoption, and
- (c)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and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designated State have agreed that the adoption may proceed.

101 Pre-existing relationship termination

If an adoption granted in a designated State does not have the effect of terminating a pre-existing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Court may, on application, convert it into an adoption having that effect only if the required consents are given for the purpose of such an adoption.

102 Recognition of the adoption

- (1)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may certify that an adoption granted in Alberta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is Division.
- (2) A certific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 (1) must specify when and by whom the Central Authority for Alberta and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designated State have agreed that the adoption may proceed.
- (3) An intercountry adoption cert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designated

상시 거주하는 예비 양부모에게 배치하는 것 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a) 지정 국가 중앙 당국이 배치를 승인하였다.
- (b) 예비 양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였다.
- (c) 앨버타주 중앙 당국과 지정 국가 중앙 당국이 입양 진행에 합의하였다.

제101조(기존 관계의 종료)

지정 국가에서 승인된 입양이 기존 친자관계를 종료하는 효력이 없는 경우 신청에 따라 법원은 친자관계를 종료하는 효력의 입양을 위하여 필요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효력의 입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02조(입양의 승인)

- (1) 앨버타주 중앙 당국은 앨버타주에서 승인된 입양이 이 절에 따른 것임을 증명할 수있다.
- (2) 제(1)항에 규정된 증명에는 앨버타주 중앙 당국과 지정 국가 중앙 당국이 입양 진 행에 합의한 시기와 그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
- (3) 입양이 완료된 지정 국가의 관할기관이 증명한 국가 간 입양은 앨버타주에서 이 법

State where the adoption was completed is recognizable as having the effect in Alberta of an adoption order under this Act and recognition may be refused only if the adoption is manifestly contrary to public policy, taking into accoun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103 Prohibition on contact

There must be no contact between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habitually resident in a designated State and the parents of the child habitually resident in Alberta to be adopted under this Division or any other person who has care of that child until

- (a) the requirements of section 95(2)(a) to
- (d) have been met, and
- (b) the competent authority for Alberta is satisfied that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are eligible and suited to adopt

unless the adoption takes place within a family or the contact is in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or Alberta.

104 Regulations

(1) 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regulations necessary to carry out the intent and purposes of this Division and,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may make regulations

에 따른 입양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승인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입양이 사회 질서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에만 거절될 수 있다.

제103조(접촉 금지)

지정 국가에 상시 거주하는 예비 양부모 그리고 앨버타주에 상시 거주하며 이 절에 따라 입양될 예정인 아동의 부모나 그 아동을 돌보는 다른 자 사이의 접촉은 다음과 같은 시점까지 금지된다.

- (a) 제 95 조제(2)항제(a)호부터 제(d)호까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 (b) 앨버타주 관할기관이 예비 양부모에게 자격이 있고 입양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입양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접 촉이 앨버타주 관할기관이 정한 조건을 따르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규정)

(1) 부총독은 이 절의 의도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 1 문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 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a) making inapplicable or limiting or varying the application of any enactment of Alberta that applies to adoptions under this Division.
- (b), (c) repealed 2003 c16 s93.3.
- (2) A regulation made under subsection(1)(a) ceases to have any effect after the last day of the next session of the Legislature.
- (3) The Minister may make regulations
- (a) respecting the contents of and the approval of a report under this Division;
- (b) designating one or more persons as a competent authority for Alberta with respect to any provision in this Division.

105 Designated States

The Minister may, by order, recognize States as designated States for the purposes of this Division.

Part 3 Licensing of Residential Facilities

105.1 Definition

In this Part, "residential facility" means a facility that provides residential care to a child in the custody or under the guardianship of a director or an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in another province or

- (a) 이 절에 따른 입양에 적용되는 앨버타주 입법의 적용을 제외하거나 제한하거나 변경 한다.
- (b), (c)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93.3 조에 따라 폐지
- (2) 제(1)항제(a)호에 따라 정한 규정은 의회의 다음 회기 마지막 날 이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 (3) 주무장관은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이 절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과 그 승인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b) 이 절의 특정 조항과 관련하여 앨버타 주 관할기관으로 1 명 이상을 지정하는 규정 을 제정한다.

제105조(지정 국가)

주무장관은 이 절의 목적을 위하여 명령으로 특정 국가를 지정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3부 주거시설의 허가

제105.1조(정의)

이 부에서 "주거시설" 이란 책임자 또는 캐 나다의 다른 주나 준주에서 아동 보호 법령 의 시행을 담당하는 당국의 보호나 후견을 받는 아동에게 거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보안서비스시설, 위탁가정 및 공동생 활가정을 포함한다. 다만, 의료, 교육 또는 territory of Canada and includes a secure services facility, a foster home and a group home, but does not include a facility that primarily provides medical care, educational services or correctional services.

105.2 Licence required

- (1) No person shall operate a residential facility unless that person holds a subsisting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issued by a director under this Act.
- (2) and (3) Repealed 2008 c31 s43.

105.3 Application for licence

- (1) An application for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or a renewal of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must
- (a) be made to a director in a form satisfactory to the director, and
- (b) state the maximum number of persons intended to be accommodated or cared for in the residential facility.
- (2) On considering an application for or renewal of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a director may issue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and impos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licence.
- (3)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licence, the term of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is one year from the date of its

교정 서비스를 1 차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5.2조(필수 허가)

- (1)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발급한 유효한 주거시설허가를 보유하지 아니하면, 주거시 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 (2), (3)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43 조에 따라 폐지

제105.3조(허가 신청)

- (1) 주거시설허가 신청이나 주거시설허가 갱신 신청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책임자가 만족할 만한 양식으로 책임자에게 접수한다.
- (b) 주거시설에서 수용하거나 돌볼 예정인 최대 인원을 기재한다.
- (2) 책임자는 주거시설허가 신청이나 주거 시설허가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주거시설허 가를 부여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 다.
- (3) 허가에 다르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시설허가의 기간은 발급일부터 1 년이 다.

issue.

- (4)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issued under this section must
- (a) identify the residential facility that may be operated under the licence, and
- (b) state
- (i) who may operate the residential facility,
- (ii) the maximum number of children, other than children of a foster parent, who may reside in the residential facility,
- (iii) the term of the licence if the term is oth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e, and
- (iv) any conditions to which the licence is subject.

105.31 Varying a licence

A director may, on the application by a licensee in a form acceptable to the director, vary the terms or conditions to which the licence is subject.

105.4 Standards

A holder of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must ensure that the residential facility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s, and the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holder may not charge more for residential facility services than the rates provided for by the regulations.

- (4) 이 조에 따라 발급된 주거시설허가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해당 허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확인한다.
- (b) 다음을 기재한다.
- (i) 주거시설 운영 주체
- (ii) 위탁부모의 자녀를 제외하고, 주거시설 에 거주할 수 있는 아동의 최대 인원
- (iii) 그 기간이 발급일부터 1 년이 아닌 경 우 허가기간
- (iv) 허가에 부과된 모든 조건

제105.31조(허가 변경)

허가 소지자가 책임자가 용인할 수 있는 형 식으로 신청을 하면, 책임자는 허가에 부과 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5.4조(기준)

주거시설허가 소지자는 주거시설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거시설서비스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한 요금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5.5 Inspection

- (1) Subject to subsection (2), for the purposes of ensuring compliance with this Act, the regulations and any conditions to which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is subject, a director or a person authorized by a director may
- (a) at any reasonable hour enter a residential facility other than a private dwelling place and inspect it,
- (b) enter a residential facility that is a private dwelling place and inspect it with the consent of the owner or operator of the private dwelling place,
- (c) require the production of any books, records or other documents and examine them, make copies of them or remove them temporarily for the purpose of making copies,
- (d) inspect and take samples of any material, food, medication or equipment being used in a residential facility, and
- (e) perform tests, take photographs or make recordings in respect of a residential facility.
- (2) When a person removes any books, records or other documents under subsection (1)(c), the person must
- (a) give to the person from whom those items were taken a receipt for those items.

제105.5조(검사)

- (1) 제(2)항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자 또는 책임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는 이 법, 규정 및 주거시설허가에 따른 조건의 준수를 보장 하기 위하여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합리적인 시간에 개인 거주지를 제외한 주거시설에 진입하여 이를 검사한다.
- (b) 개인 거주지 소유자나 운영자의 동의에 따라 개인 거주지인 주거시설에 진입하여 이를 검사한다.
- (c) 장부, 기록이나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 구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복사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 반출한다.
- (d) 주거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 식품, 약품이나 장비를 검사하고 표본을 채취하다.
- (e) 주거시설에 대한 검사, 사진 촬영 또는 기록을 작성한다.
- (2) 제(1)항제(c)호에 따라 장부, 기록이나 다른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다음을 이행하여 야 한다.
- (a) 이를 제출한 자에게 물품 수령증을 교부 한다.

and

- (b) forthwith make copies of, take photographs of or otherwise record those items and forthwith return those items to the person to whom the receipt was given.
- (3) When a person takes samples of any material, food, medication or equipment under subsection (1)(d), the person must
- (a) give to the person from whom those items were taken a receipt for those items, and
- (b) on that person's request, return those items to that person when those items have served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taken.
- (4) If entry is refused or cannot be reasonably obtained under subsection (1) or a person interferes with a director or a person authorized by a director in exercising rights and performing duties under this section, an application may be made to the Court of Queen's Bench for an order that a director or a person authorized by a director may
- (a) at any reasonable hour enter the residential facility and inspect it,
- (b) require the production of any books, records or other documents and examine them, make copies of them or remove them temporarily for the purpose of making

- (b) 즉시 물품을 복사, 사진 촬영 또는 기록을 작성하고 수령증이 교부된 자에게 이를 즉시 반환한다.
- (3) 제(1)항제(d)호에 따라 재료, 식품, 약품이나 장비의 표본을 채취한 경우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a) 이를 제출한 자에게 물품 수령증을 교부 한다.
- (b) 수령증이 교부된 자의 요청에 따라, 채취 목적을 달성한 때에 이를 수령증이 교부된 자에게 반환한다.
- (4) 진입이 거절되거나 제(1)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책임자나 책임자가 권한을 부여한 자가 이 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특정인이 방해하는 경우 책임자나 책임자가권한을 부여한 자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명령을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a) 합리적인 시간에 주거시설에 진입하여 이를 검사한다.
- (b) 장부, 기록이나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 반출한다.

copies,

- (c) inspect and take samples of any material, food, medication or equipment being used in the residential facility, and
- (d) perform tests, take photographs or make recordings in respect of the residential facility,

and the Court may, on being satisfied that the order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make any order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5)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4) may be made ex parte, if the Court considers it proper.

105.6 Order after inspection

If a residential facility has been inspected under section 105.5 and a director is of the opinion that, the director may in writing order the person operating that residential facility to take measures as specified in the order within the time limits specified in the order.

- (a) this Act, the regulations or a condition of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is not being complied with, or
- (b) the residential facility is not providing proper care,

residential facility to take measures as specified in the order within the time limits

- (c) 주거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 식품, 약품이나 장비를 검사하고 표본을 채취한다.
- (d) 주거시설에 대한 검사, 사진 촬영 또는 기록을 작성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명령 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면,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신청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일방당사자에 의해 신청이가능하다.

제105.6조(검사 후 명령)

주거시설이 제 105.5 조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 책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판단하면, 해당 주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명령에 명시된 시한 내에 명령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라고 서면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이 법, 규정 또는 주거시설허가의 조건 이 준수되고 있지 아니하다.
- (b) 주거시설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 지 아니하다.

specified in the order.

105.7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licence

- (1) When a director is of the opinion that, the director may, by notice in writing to the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holder, vary, suspend or cancel the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and terminate the licensee's contract with the Crown to provide residential facility services.
- (a)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holder is not providing proper care to a child who resides in the licence holder's residential facility,
- (b) the premises described in the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have become unfit or unsuitable for a residential facility,
- (c)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holder has not complied with
- (i) this Act, the regulations or a condition of the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 (ii) an order made under section 105.6, or
- (iii) any other enactment that applies to a residential facility,
- (2) Every contract between the Crown and the owner or operator of a residential facility is deemed to contain a provision that the Crown may terminate the contract without notice and without damages payable by the Crown to the owner or operator if the owner or operator fails to comply with

제105.7조(허가의 정지나 취소)

- (1)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주거시설허가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주거시설허가를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하고 주거시설서비스 제공에 관한 허가 소지자와 국가간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a) 주거시설허가 소지자가 자신의 주거시설 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 고 있지 아니하다.
- (b) 주거시설허가에 기재된 구내가 주거시 설로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하게 되었다.
- (c) 주거시설허가 소지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 (i) 이 법, 규정 또는 주거시설허가의 조건
- (ii) 제 105.6 조에 따른 명령
- (iii)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
- (2) 국가와 주거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 간의 모든 계약에는 소유자나 운영자가 제 105.6 조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시설허가가 정지,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국가가 고지 그리고 국가가소유자나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an order issued under section 105.6 or if the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is suspended, cancelled or expired.

Part 3.1 Quality Assurance

105.71 Definitions

In this Part,

- (a) "action" means action as defined in the Alberta Evidence Act;
- (b) "business day" means a day other than a Saturday or a Sunday or other holiday;
- (c) "designated individual" means an individual designated under section 105.771(1);
- (d) "serious injury", in respect of a child, means
- (i) a life—threatening injury to the child, or
- (ii) an injury that may cause significant impairment of the child's health.

105.72 and 105.73 Repealed 2018 c24 s16.

105.74 Director's duty

When a director becomes aware of, the director must, as soon as practicable, report the incident to the Minister.

(a) an incident giving rise to a serious injury to or the death of a child that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1부 품질보증

제105.71조(정의)

- 이 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a) "소송" 이란 「앨버타주 증거법」에 정의된 소송을 말한다.
- (b) "근무일" 이란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 (c) "지정인" 이란 제 105.771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을 말한다.
- (d) "중상해" 란 아동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 (i)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해
- (ii) 아동의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해

제105.72조와 제105.73조 2018년 법률 제 24호 제16조에 따라 폐지

제105.74조(책임자의 임무)

책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알게 되면, 즉시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아동이 개입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에 발생하였고 아동의 중상해나 사망을 유발한 사

occurred while the child was receiving intervention services, or

(b) an incident referred to in section 105.771(1)(b)

105.75 to 105.77 Repealed 2018 c24 s18.

105.771 Review by designated individual

- (1) A director may, in writing, designate individuals to review
- (a) incidents giving rise to the serious injury to or death of a child that occurred while the child was receiving intervention services, and
- (b) any other incident that,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is a serious incident and that occurred in respect of a child while the child was receiving intervention services.
- (2) A designated individual must be
- (a) an individual employed in the public service of the Province, or
- (b) an individual to whom the director has delegated authority under section 121(4).
- (3) A designated individual must provide the director with a report on a review conducted under subsection (1) that includes the designated individual'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if any, within one year after the day on which the incident reviewed occurred.

卫

(b) 제 105.771 조제(1)항제(b)호에 규정된 사고

제105.75조부터 제105.77조 2018년 법률 제 24호 제18조에 따라 폐지

제105.771조(지정인의 심사)

- (1) 책임자는 다음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면 으로 개인을 지정할 수 있다.
- (a) 아동이 개입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에 발생하였고 아동의 중상해나 사망을 유발한 사고
- (b) 책임자가 심각한 사고라고 판단하며 아 동이 개입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에 발생한 다른 사고
- (2) 지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여야 한다.
- (a) 주의 공직에 채용된 개인
- (b) 책임자가 제 121 조제(4)항에 따라 권한 을 위임한 개인
- (3) 지정인은 심사 대상 사고 발생일부터 1 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진행되며 자신의 조사결과와 경우에 따라 권고가 포함된 심사 보고서를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The Minister may specify a longer period for the provision of a report under subsection (3) if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extenuating circumstances exist.
- (5) On receiving a report under subsection
- (3), the director shall provide an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included in the report to the Minister.

105.78 Designated individual must not give evidence

A designated individual must not give or be compelled to give evidence in an action in respect of any matter coming to the designated individual's knowledge in the exercise of powers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and functions under this Part, except in a prosecution for perjury.

105.79 Communications privileged

The following information, records and reports are privileged and not admissible in evidence in an action, except in a prosecution for perjury:

- (a) anything said, any information supplied or any record produced during a review under section 105.771(1) by a designated individual;
- (b) any report referred to in section 105.771(3).

105.791 Protection from liability

(1) Subject to subsection (2), no action lies

- (4) 주무장관은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하면,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제 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면, 보고서에 포함된 조사결과와 권고를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05.78조(지정인의 증거 제출 금지)

지정인은 이 부에 따른 권한의 행사와 임무 및 기능의 수행 과정에게 알게 된 사안에 대한 증거를 소송에서 제출하거나 그 제출이 강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증에 대한 기소는 예외로 한다.

제105.79조(특권 사항)

다음과 같은 정보, 기록 및 보고서는 특권으로 보호되며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증에 대한 기소는 예외로 한다.

- (a) 제 105.771 조제(1)항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지정인이 말한 것, 제공한 정보 또는 작성한 기록
- (b) 제 105.771 조제(3)항에 규정된 보고서

제105.791조(책임에서 보호)

(1) 제(2)항을 조건으로 하여, 이 부에 따라

or may be commenced or maintained against a designated individual in respect of anything done or omitted to be done in the exercise or intended exercise of any power under this Part or in the performance or intended performance of any duty or function under this Part.

(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to a designated individual in relation to anything done or omitted to be done by the designated individual in bad faith.

105.792 Repealed 2018 c24 s21.

105.7921 Public reporting of serious injury, death or incident

Subject to sections 126 and 126.1, the Minister shall publicly report, within 4 business days after being notified of the incident under section 105.74.

- (a) an incident giving rise to the serious injury to or death of a child that occurred while the child was receiving intervention services, or
- (b) an incident referred to in section 105.771(1)(b)

105.793 Publication of statistics, findings, recommendations

Subject to sections 126 and 126.1, the Minister shall publish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the Minister's department's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또는 이 부에 따라 임무나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지정인이 행한 작위나부작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개시 또는 유지할 수 없다.

(2) 제(1)항은 지정인이 악의로 행한 작위 나 부작위와 관련하여 지정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5.792조 2018년 법률 제24호 제2조에 따라 폐지

제105.7921조(중상해, 사망이나 사고에 대한 공개 보고서)

제 126 조와 제 126.1 조에 따라, 주무장관은 제 105.74 조에 따라 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4 일 이내에 다음을 공개적으로 보고한다.

- (a) 아동이 개입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에 발생하였고 아동의 중상해나 사망을 유발한 사고
- (b) 제 105.771 조제(1)항제(b)호에 규정된 사고

제105.793조(통계, 조사결과 및 권고의 공 표)

제 126 조와 제 126.1 조에 따라, 주무장관은 주무부처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 표하고 그 정보를 적어도 1 년 한 번씩 업데

website and shall update the information at least once a year:

- (a) statistical data about children who are receiving or have received intervention services;
- (b) statistical data about
- (i) incidents giving rise to serious injuries to and deaths of children that occurred while the children were receiving intervention services, and
- (ii) incidents referred to in section105.771(1)(b);
- (c)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provided to the Minister under section 105.771(5);
- (d) the response of the Minister's department to recommendations in a report made by the Child and Youth Advocate under section 15 of the Child and Youth Advocate Act, if the recommendations relate to this Act or the administration of it;
- (e) the response of the Minister's department to recommendations in a report made under section 53 of the Fatality Inquiries Act, if the recommendations relate to this Act or the administration of it;
- (f) the response of the Minister's department to recommendations made in any other report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131(2)(ss), if the recommendations relate to this Act or the

이트한다.

- (a) 개입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아동 에 대한 통계 데이터
- (b) 다음에 대한 통계 데이터
- (i) 아동이 개입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에 발생하였고 아동의 중상해나 사망을 유발한 사고
- (ii) 제 105.771 조제(1)항제(b)호에 규정된 사고
- (c) 제 105.771 조제(5)항에 따라 주무장관 에게 제공된 조사 결과와 권고
- (d) 그 권고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관이 「아동· 청소년 보호관법」 제 15 조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의 권고에 대한 주무부처의 답변
- (e) 그 권고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경우 「검시법」 제 53 조에 따라 작 성된 보고서의 권고에 대한 주무부처의 답변
- (f) 그 권고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경우 제 131 조제(2)항제(ss)호에 따 른 규정에 명시된 다른 보고서의 권고에 대 한 주무부처의 답변

administration of it.

Part 4 General

105.795 Financial assistance for children formerly under permanent guardianship

- (1) A director ma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in respect of a child who wa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to
- (a) a person who is appointed a guardian of the child under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 (b) a person who adopts the child if, immediately before the adoption order was made.
- (i) the child wa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or
- (ii) the person was a guardian of the child under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or
- (c) a person who becomes a guardian of the child, or adopts the child, after a guardian is appointed as referred to in clause (a) or the child is adopted as referred to in clause (b).
- (2) If a guardian or adoptive parent referred to in subsection (1)(a), (b) or (c) is unable or unwilling to continue to care for the child, a director ma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an adult person who is caring for the child and who has applied to a court for guardianship of the child or to adopt the

제4부 일반규정

제105.795조(과거 영구 후견을 받은 아동을 위한 재정지원)

- (1) 책임자는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 령의 대상이었던 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 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 (a) 개인후견명령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으로 임명된 자
- (b) 입양명령 발부 직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을 입양한 자
- (i) 아동이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령 의 대상이었다.
- (ii) 아동을 입양한 자가 개인후견명령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이었다.
- (c) 제(a)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후견인이 임명되거나 제(b)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아 동이 입양된 이후에 아동의 후견인이 되거나 아동을 입양한 자
- (2) 제(1)항제(a)호, 제(b)호 및 제(c)호에 규정된 후견인이나 양부모가 아동을 계속하여 돌볼 수 없거나 이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책임자는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아동의 후견이나 입양을 법원에 신청한 성인에게 규정에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child.

(3) The director may review the financial assistance from time to time and may vary or terminate the financial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105.8 Financial assistance for children

If the guardian of a child is unable or unwilling to care for the child and the child is, in the opinion of a director, being cared for by another adult person, financial assistance may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to that adult person on behalf of the child.

106 Repealed 2003 cF-5.3 s12.

First Nation Child

107 Band involvement in planning for services

- (1) If a director has reason to believe that a child is a First Nation Individual and a member of a band, the director shall involve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uncil of the band in planning for services to be provided to the child if the child
- (a) is in need of intervention services and
- (i) is a resident of a reserve, or
- (ii) if the child is not a resident of a reserve, the guardian of the child has

(3) 책임자는 수시로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변경하거나 종 료할 수 있다.

제105.8조(아동을 위한 재정지원)

아동의 후견인이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이 러한 의사가 없고 책임자가 아동이 다른 성 인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면, 재정지 원은 아동을 위하여 규정에 따라 아동을 돌 보고 있는 성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

제106조 2003년 법률 제F-5.3호 제12조에 따라 폐지

워주민 아동

제107조(부족의 서비스 계획 관여)

- (1) 아동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책임자는 해당 아동이 원주민이며 부 족민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아동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계획에 부족의회가 지 정한 자를 관여시킨다.
- (a) 개입이 필요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i) 보호구역 거주자이다.
- (ii) 해당 아동이 보호구역 거주자가 아닌 경우 아동의 후견인이 부족의회가 지정한 자

consented to the involvement of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uncil of the band, or

- (b) is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or an application for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regardless of whether the child is a resident of a reserve or not.
- (2) If a child referred to in subsection (1)(a) is not a resident of a reserve, a director shall ask the child's guardian to consent to the involvement of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uncil of the band.
- (2.1) The consent of a child's guardian is not required to involve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uncil of a band under subsection (1)(a)(i) or (b).
- (3) If the Court makes a supervision order,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in respect of a child who is a First Nation Individual and a member of a band, the director must provide the person designated by the council of the band with a copy of the order not more than 20 days after the date of the order.
- (4) Despite subsection (3), a director shall not provide a copy of a supervision order referred to in subsection (3) to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uncil of a band if the guardian of a child described in subsection (2) has not consented to the involvement of

의 관여에 동의하였다.

- (b) 보호구역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후견명령,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 령의 대상이거나 영구후견명령 신청의 대상 이다.
- (2) 제(1)항제(a)호에 규정된 아동이 보호 구역 거주자가 아닌 경우 책임자는 부족의회 가 지정한 자의 관여에 대한 아동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한다.
- (2.1) 부족의회가 제(1)항제(a)호(i)목이나 제(b)호에 따라 지정한 자의 관여에는 아동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3) 법원이 원주민이며 부족민인 아동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 임시후견명령이나 영구후견명령을 내리면, 책임자는 부족의회가 지정한 자에게 명령일부터 20 일 이내에 명령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제(2)항에 규정된 아동의 후견인이 그 관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부족의회가 지정한 자에게제(3)항에 규정된 보호관찰명령의 사본을제공하지 아니한다.

that person.

- (5) and (6) Repealed 2008 c31 s49.
- (7) Subsections (1) to (4) do not apply if the child is receiving services pursuant to an agreement under section 122(2).

Evidence

108 Witnesses

- (1) In a proceeding before the Court under this Act, the Court or a justice of the peace 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or the Court on its own motion, may
- (a) compel the attendance of any person and require the person to give evidence on oath,
- (b) require the production by any person of any documents or things, and
- (c) exercise the powers that are conferred for those purposes on a justice of the peace under Part XXII of the Criminal Code (Canada).
- (2) The record of the evidence given at any other hearing, any documents and exhibits received in evidence at any other hearing and an order of the Court are admissible in evidence in a hearing under this Act.
- (3) The evidence of each witness in a Court proceeding under this Act shall be taken under oath and forms part of the

- (5), (6)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49 조에 따라 폐지
-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아동이 제122 조제(2)항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증거

제108조(증인)

- (1) 이 법에 따른 법원의 절차에서 법원이 나 치안판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또는 법원은 자체 발의에 따라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특정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선서 후 증언을 하도록 요구한다.
- (b) 특정인에게 서류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다.
- (c) 「(캐나다) 형법」 제 XXII 부에 따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치안판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 (2) 다른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 기록, 다른 심리에서 증거로 접수된 서류와 증거물 그리 고 법원 명령은 이 법에 따른 심리에서 증거 로 인정된다.
- (3) 이 법에 따른 법원 절차에서 각 증인의 증언은 선서를 하고 진행하며 기록의 일부를

record.

- (4) Notwithstanding subsection (3), the Court, if it considers it proper to do so and it is satisfied that no better form of evidence is readily available, may
- (a) accept evidence by affidavit, or
- (b) accept hearsay evidence.

109 Confidential evidence

- (1) Notwithstanding Part XXII of the Criminal Code (Canada), the Court may issue a subpoena requiring, to produce any documents,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the person has in the person's possession or under the person's control that may relate to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with respect to a child.
- (a) repealed 2008 cH-4.2 s11,
- (b) a board under the Hospitals Act or the board's designate,
- (c) a board under the Mental Health Act or the board's designate, or
- (d) the Chief Medical Officer under the Public Health Act or the Chief Medical Officer's designate,
- (2) The person named in a subpoena or the person's designate shall attend at the time and place stated in the subpoena with any documents,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구성한다.

-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형태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 수 있다.
- (a) 선서진술서로 증거를 접수한다.
- (b) 전문(傳聞)증거를 접수한다.

제109조(비밀 증거)

- (1) 「(캐나다) 형법」 제 XXII 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은 기관에 그 기관이 점유하거나 관리하며 법원의 아동 관련 절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서류, 기록이나 다른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 (a) 2008 년 법률 제 H-4.2 호 제 11 조에 따라 폐지
- (b) 「병원법」에 따른 위원회 또는 그 위 원회가 지정한 자
- (c) 「정신보건법」에 따른 위원회 또는 그 위원회가 지정한 자
- (d) 「공중보건법」에 따른 최고 의료 담당 자 또는 최고 의료 담당자가 지정한 자
- (2) 소환장에 기재된 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법원 절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서 류, 기록이나 다른 정보를 지참하고 소환장 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며 절차 중

that may relate to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and shall remain in attendance throughout the proceedings unless the person is excused by the Court.

- (3) If, as the result of the issuing of a subpoena under subsection (1), a person is required to produce any documents,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that is otherwise confidential under the Health Information Act or the Public Health Act, as the case may be, the documents,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 (4) The person named in the subpoena or the person's designate shall permit the Minister, a director, a guardian of the child, the child, if the child is 12 years of age or older, or a lawyer representing any of them to examine the documents,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before the time stated in the subpoena.
- (5) The Minister, a director or a guardian of the child may apply to the Court at the time stated in the subpoena or at any other time during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to have all or part of the documents,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admitted into evidence.
- (6) Notwithstanding any other section of this Act,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5) and any part of the proceedings relating to the documents, records or other

계속 출석 상태를 유지한다. 다만, 법원이 이러한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 (3) 제(1)항에 따른 소환장 발부에 따라, 특정인이 경우에 따라 「의료정보법」이나「공중보건법」으로 비밀이 유지되는 서류, 기록이나 다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해당 서류, 기록이나 다른 정보는 이 조에따라 취급된다.
- (4) 소환장에 기재된 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주무장관, 책임자, 아동의 후견인, 아동이 12 세 이상인 경우에 아동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소환장에 기재된 시간 전에 서류, 기록이나 다른 정보를 검토하는 것을 허용한다.
- (5) 주무장관, 책임자 또는 아동의 후견인은 소환장에 기재된 때 또는 법원 절차 중의 다 른 때에 서류, 기록이나 다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증거 인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6)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5) 항에 따른 신청 그리고 서류, 기록이나 다른 정보에 관한 절차의 일부를 비공개로 심리한 다.

information shall be heard in camera.

- (7) At the conclusion of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the documents,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or part of them introduced in evidence shall be sealed by the clerk of the Court and that part of the record of the proceedings relating to the documents,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shall not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 (8) If the Court makes an order at any time during the proceedings before it and that order is appealed to the Court of Queen's Bench, that part of the hearing before the Court of Queen's Bench that relates to the documents, records or other information shall be heard in camera.

110 Age of child

In any proceedings under this Act, is sufficient evidence as to the age of the child.

- (a) the testimony of a parent of the child as to the age of the child.
- (b) a birth or baptismal certificate or a copy of it purporting to be certified by the 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or
- (c) in the absence of the testimony or the certificate or copy referred to in clauses
 (a) and (b), any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ge of the child that the Court considers reliable, including inferences the Court may draw from the child's appearance

(7) 법원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 서기는 증거로 제출된 서류, 기록이나 다른 정보 또는 그 일부를 봉인한다. 그리고 절차 기록 중에서 서류, 기록이나 다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다.

(8) 법원이 법원 절차 중에 언제든지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대한 항소가 고등법원에 제기되면, 고등법원 심리 중에서 서류, 기록이나 다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제110조(아동의 연령)

- 이 법에 따른 절차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는 아동의 연령에 관한 증거로 충분하다.
- (a) 아동의 연령에 관한 아동의 부모의 증언
- (b) 출생증명서나 세례증명서 또는 인구동 태 통계 등록관이 공인하였다고 주장되는 그 사본
- (c) 증언 또는 제(a)호와 제(b)호에 규정된 증명서나 그 사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아동의 연령과 관련된 다른 정보. 이에는 법원이 아동의 외모또는 아동이 직접 심문이나 반대 심문 중에행한 진술에서 얻을 수 있는 추정이 포함된

or from statements made by the child in direct or cross-examination,

Court Proceedings

111 Right to appear

- (1) In any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under Part 1, Division 3 or 4, may appear and make representations to the Court.
- (a) a foster parent or any other person who has had continuous care and custody of the child for not less than 6 months, and
- (b) any other person, with the consent of the Court.
- (2)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the only parties to a proceeding under Part 1, Division 3 or 4 or an appeal from that proceeding are the child, the child's guardian, the director and the Minister.
- (3) The Minister need not be served with notice of any proceeding under Part 1, Division 3 or 4.
- (4) Notwithstanding subsection (2), a child may examine the Court recor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Court.

112 Legal representative

(1) If an application is made for a supervision order, a private guardianship order or a temporary or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or a child is the subject of a supervision order or a temporary or

다.

법원 절차

제111조(출석권)

- (1) 제 1 부제 3 절이나 제 4 절에 따른 법원 절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는 법원에 출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a) 위탁부모 또는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 동을 돌보고 보호하였던 다른 자
- (b) 법원의 동의를 받은 다른 자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 1 부제 3 절이나 제 4 절에 따른 절차 또는 그 절차에 대한 항소의 당사자들은 아동, 아동의 후견인, 책임자 및 주무장관으로 한정된다.
- (3) 제 1 부제 3 절이나 제 4 절에 따른 절차에 대한 통지서를 주무장관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
-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법원의 동의만 있으면 법원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제112조(법정대리인)

(1) 보호관찰명령, 개인후견명령, 임시후견명령이나 영구후견명령에 대한 신청이 있거나 아동이 보호관찰명령, 임시후견명령, 영구후견명령이나 영구후견계약의 대상이고 변호사가 제 1 부제 3 절, 제 4 절이나 제 5 절에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and the child is not represented by a lawyer in a proceeding under Part 1, Division 3, 4 or 5, the Court may direct that the child be represented by a lawyer if

- (a) the child, the guardian of the child or a director requests the Court to do so, and
- (b)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interests or views of the child would not be otherwise adequately represented.
- (2) If the Court directs that a child be represented by a lawyer pursuant to subsection (1).
- (a) it shall refer the child to the Child and Youth Advocate.
- (b) repealed 2008 c31 s50.
- (3) If a referral is made under subsection (2), the Child and Youth Advocate shall appoint or cause to be appointed a lawyer to represent the child.
- (4) If a referral is made under subsection (2), the Court may make an order directing that the costs of the lawyer be paid by the child, the guardian of the child or a director or apportioned among all or any of them, having regard to the means of the child and

Maintenance

the guardian.

따른 절차에서 아동을 대리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다음의 경우 변호사가 해당 아동을 대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a) 아동, 아동의 후견인 또는 책임자가 법 원에 이를 요청한다.
- (b) 법원이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아동 의 이해관계나 의견이 충분히 대리될 수 없 다고 판단한다.
- (2)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동을 대리하도록 지시하면, 다음을 이행한다.
- (a) 해당 아동을 아동·청소년 보호관에게 위 탁한다.
- (b)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50 조에 따라 폐지
- (3) 제(2)항에 따라 위탁이 되면, 아동·청소 년 보호관은 아동을 대리한 변호사를 선임하 거나 선임되도록 한다.
- (4) 제(2)항에 따라 위탁이 되면, 법원은 아동과 후견인의 수입을 고려하여 아동, 아동의 후견인이나 책임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거나 해당인의 전부나 일부가 배분하여 그비용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릴 수있다.

양육비

113 Enforcement of maintenance

An order of the Court under this Act directing a person to pay financial support toward the maintenance of a child or an agreement under this Act in which a person agrees to pay financial support toward the maintenance of a child may be enforced pursuant to the Maintenance Enforcement Act.

Appeals of Orders to Court of Queen's Bench

114 Appeal to Court of Queen's Bench

- An order of the Court made under this Act may be appealed to the Court of Queen's Bench by
- (a) a guardian of the child other than a director,
- (b) a person who was a guardian of the child immediately before the order was made.
- (c) the child,
- (d) the child, if the child is the subject of a secure services order,
- (e) a director, or
- (f) the Minister.
- (2) If the Court refuses to make an order under this Act, the applicant may appeal the refusal to the Court of Queen's Bench.

제113조(양육비의 집행)

특정인에게 아동의 생계를 위한 재정지원을 지시하는 이 법에 따른 법원 명령 또는 특정 인이 아동의 생계를 위한 재정지원에 합의하 는 이 법에 따른 계약은 「양육비 관리법」 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

명령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

제114조(고등법원 항소)

- (1) 다음 중 어느 하나는 이 법에 따른 법 원 명령에 대한 항소를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a) 책임자를 제외한 아동의 후견인
- (b) 명령 발부 직전에 아동의 후견인이었던 자
- (c) 아동
- (d) 아동이 보안서비스명령의 대상인 경우 해당 아동
- (e) 책임자
- (f) 주무장괴
- (2) 법원이 이 법에 따라 명령하는 것을 거절하면, 신청인은 그 거절에 대한 항소를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15 Stay of order

Any person who is entitled to appeal pursuant to section 114 may apply to the Court at the time an order is made by the Court for an order staying the execution of the order of the Court for a period of 5 days and, if a notice of appeal is filed during that period, pending the hearing of the appeal.

116 Procedure on appeal

- (1) An appeal of an order of the Court to the Court of Queen's Bench under this Act shall be commenced and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 (2) If a notice of appeal is filed pursuant to this section, the appellant may apply to the Court of Queen's Bench for an order staying the execution of the order appealed pending the hearing of the appeal.

117 Decision of Court

- (1) Repealed 2008 c31 s54.
- (2) On hearing an appeal made pursuant to section 116, the Court of Queen's Bench may
- (a) confirm the order or refusal,
- (b) revoke or vary the order made, or
- (c) make any order the Court could have made in the hearing before it.

제115조(명령의 정지)

제 114 조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는 법원이 명령을 할 때에 법원 명령의 집행을 5 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면, 항소에 대한 심리가 있을 때까지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제116조(항소절차)

- (1) 이 법에 따라 고등법원에 법원 명령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 진행된다.
- (2) 항소 통지서가 이 조에 따라 제출되면, 항소인은 항소가 제기된 명령의 집행을 항소 에 대한 심리가 있을 때까지 정지하는 명령 을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17조(법원의 결정)

- (1)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54 조에 따라 폐지
- (2) 고등법원은 제 116 조에 따른 항소에 대한 심리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할수 있다.
- (a) 해당 명령이나 거절을 승인한다.
- (b) 발부된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 (c) 법원이 심리과정에서 내릴 수 있었던 명령을 내린다.

Administrative Decision

117.1 Administrative review

- (1) The following persons directly affected by a decision of a director under this Act may request, in the prescribed form within 30 days of the decision, that the director review the decision:
- (a) a child;
- (b) a guardian;
- (c) a foster parent;
- (d) an individual who has had continuous care of a child for more than 6 of the 12 months preceding the decision of the director;
- (e) a person who is receiving or may be eligible to receive support and financial assistance pursuant to section 57.3;
- (f) a person who is refused financial assistance under section 105.8;
- (g) an applicant for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or a renewal of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 (2) A request under subsection (1) must set out
- (a) the decision in sufficient details for the director to be able to identify it, and
- (b) the grounds for the review.

행정심판

제117.1조(행정심사)

- (1) 이 법에 따른 책임자의 결정 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음과 같은 자는 결정일부터 30 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으로 해당 책임자의 결정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있다.
- (a) 아동
- (b) 후견인
- (c) 위탁부모
- (d) 책임자의 결정 전 12 개월 중 6 개월 이 상 계속하여 아동을 돌본 자
- (e) 제 57.3 조에 따라 부양과 재정지원을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자
- (f) 제 105.8 조에 따라 재정지원이 거절된 자
- (g) 주거시설허가나 주거시설허가 갱신의 신청인
- (2) 제(1)항에 따른 요청에는 다음을 기재 하여야 한다.
- (a) 책임자가 이를 확인하기에 충분하게 상 세히 기재된 결정
- (b) 심사 요청의 근거

- (3) In reviewing a decision, a director may receive oral or written submissions from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review.
- (4) On completing a review the director
- (a) may confirm, vary or rescind the decision that has been reviewed, and
- (b) must, within 15 days of receiving the request under subsection (1), provide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review with a copy of the decision under clause (a) that includes the reasons.
- (5) If a copy of the decision is not received under subsection (4)(b) within 15 days of the making of the request under subsection (1),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review is deemed to have received a copy of the decision stating that the director has confirmed the decision that was reviewed.

Appeal to an Appeal Panel

118 Appeal Panel

- (1) The Minister may establish one or more Appeal Panels.
- (2) A person may be appointed as a member of an Appeal Panel for a term prescribed by the Minister and may be reappointed.
- (3) The Minister may designate the chair and one or more vice— chairs of an Appeal

- (3) 결정을 심사하는 경우 책임자는 심사를 요청한 자에게서 구두 진술이나 서면 진술을 받을 수 있다.
- (4) 심사를 완료하면, 책임자는 다음을 이행한다.
- (a) 심사 대상 결정을 승인,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b) 제(1)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제(a)호에 따른 결정문의 사본을 결정 이유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5) 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항제(b)호에 따라 결정문의 사본을 수령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요청한 자는 책임자가 심사 대상 결정을 승인하였다고 기재된 결정문의 사본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항소 재판부에 대한 항소

제118조(항소 재판부)

- (1) 주무장관은 항소 재판부를 하나 이상 설치할 수 있다.
- (2) 특정인은 주무장관이 정한 임기로 항소 재판부의 구성원으로 임명될 수 있고 재임명 될 수 있다.
- (3) 주무장관은 항소 재판부 재판장과 부재 판장 1명 이상을 지명할 수 있다.

Panel.

- (3.1) The quorum to hear an appeal is 3 members, but an appeal may be heard by one member for procedural matters related to the appeal or in emergency circumstances provided for in the regulations.
- (4) The members of an Appeal Panel shall receive
- (a) remuneration, and
- (b) payment for travelling, living and other expenses incurr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as members.
- (5) Remuneration and expenses referred to in subsection (4) must be determined
- (a)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regulations under the Alberta Public Agencies Governance Act, or
- (b) by the Minister if no regulations under the Alberta Public Agencies Governance Act are applicable.
- (6) Notwithstanding subsection (2), where the appointment of a member of an Appeal Panel expires, the member continues to hold office until, whichever occurs first.
- (a) the member is reappointed,
- (b) a successor is appointed, or
- (c) a period of 3 months has elapsed.

- (3.1) 항소의 심리정족수는 3 명이다. 다만, 항소와 관련된 절차적 사안이나 규정에서 정 한 긴급 상황의 경우에 1 명이 항소를 심리 할 수 있다.
- (4) 항소 재판부 구성원은 다음을 수령한다.
- (a) 보수
- (b) 구성원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생활비 및 그 밖의 경비 지급
- (5) 제(4)항에 규정된 보수와 경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 (a) 「앨버타주 공무원조직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른다.
- (b) 「앨버타주 공무원조직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주무장관이 정한다.
- (6)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소 재판부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구성원은 다음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재직한다.
- (a) 해당 구성원이 재임명된다.
- (b) 후임자가 임명된다.
- (c) 3 개월이 경과한다.

119 Power of the Appeal Panel

- (1) Any Appeal Panel may hear an appeal made pursuant to section 120.
- (1.1) An Appeal Panel may
- (a) determine whether representations will be oral or by written submission, and
- (b) consider any new evidence that is raised or presented in a hearing.
- (2) If an appeal is made from a director's decision referred to in section 120(2)(a) to (a.4) or (f.3), the Appeal Panel may, subject to this Act and the regulations, confirm the decision or refer the matter back to the director for further consideration.
- (2.1) If an appeal is made from a director's decision referred to in section 120(2)(b) to (f.2), (g) or (5), the Appeal Panel may, subject to this Act and the regulations, confirm, reverse or vary the decision.
- (3) Subject to subsection (1.1),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Jurisdiction Act applies to the proceedings of the Appeal Panel.
- (4) An appellant or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n appeal may be represented at the hearing of the appeal by a lawyer or by any other person.
- (5) If no one is present at the hearing of an

제119조(항소 재판부의 권한)

- (1) 항소 재판부는 제 120 조에 따른 항소를 심리할 수 있다.
- (1.1) 항소 재판부는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진술을 구두로 할지 또는 서면으로 할지를 결정한다.
- (b) 심리에서 제기되거나 제출된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다.
- (2) 제 120 조제(2)항제(a)호부터 제(a.4)호까지 또는 제(f.3)호에 규정된 책임자의 결정에 대한 항소의 경우 항소 재판부는 이 법과 규정에 따라 그 결정을 승인하거나 추가검토를 위하여 그 사안을 책임자에게 환송할수 있다.
- (2.1) 제 120 조제(2)항제(b)호부터 제(f.2)호까지, 제(g)호 및 제(5)항에 규정된 책임자의 결정에 대한 항소의 경우 항소 재판부는 이 법과 규정에 따라 그 결정을 승인,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3) 제(1.1)항을 조건으로 하여, 「행정절차 및 관할권법」은 항소 재판부의 절차에 적용 된다.
- (4) 변호사나 다른 자는 항소에 대한 심리에서 항소인이나 항소 대상인 아동을 대리할수 있다.
- (5) 항소 대상인 아동의 이해관계를 대리하

appeal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the appeal, the Appeal Panel may direct that the child be represented at the hearing.

(6) and (7) Repealed 2008 c31 s57.

120 Appeal to the Appeal Panel

-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ho are affected by a decision of a director may appeal tha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 (a) a child;
- (b) a guardian of a child;
- (c) a person who has had the continuous care of the child for more than 6 of the 12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a decision under subsection (2);
- (d) a person who is receiving or may be eligible to receive support and financial assistance pursuant to section 57.3.
- (1.1) In this section, "residential facility" means a residential facility as defined in Part 3 other than a secure services facility.
- (2) An appeal may be made from a decision of a director that has been reviewed under section 117.1 respecting the following:
- (a) the removal from or placement in a residential facility of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기 위하여 항소에 대한 심리에 출석한 자가 없는 경우 항소 재판부는 심리에서 아동을 대리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다.

(6), (7)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57 조에 따라 폐지

제120조(항소 재판부에 대한 항소)

- (1) 책임자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다음과 같은 자 중 어느 하나는 이 조에 따라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a) 아동
- (b) 아동의 후견인
- (c) 제(2)항에 따른 결정 직전 12 개월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동을 돌본 자
- (d) 제 57.3 조에 따라 부양과 재정지원을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자
- (1.1) 이 조에서 "주거시설" 이란 보안서비 스시설을 제외하고, 제 3 부에 정의된 주거시 설을 말한다.
- (2) 제 117.1 조에 따라 심사를 받은 책임자로서 다음에 관한 책임자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a) 임시후견명령 또는 영구후견계약이나 영 구후견명령의 대상인 아동의 주거시설 퇴거 나 배치

or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 (a.1) terms and conditions imposed on a renewal of, but not on the original issuance of,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under section 105.3;
- (a.2) a refusal to renew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under section 105.3;
- (a.3) an order made under section 105.6;
- (a.4) the variation,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a residential facility licence under section 105.7;
- (b) the permitting or refusing to permit any person who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child to visit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 (c), (d) repealed 2003 c16 s105;
- (e) the refusal or failure of a director to enter into an agreement under Part 1, Division 2 or 6 or to apply to the Court under Part 1, Division 3 in respect of a child who, in the opinion of that director, is in need of intervention;
- (f) repealed 2003 cF 5.3 s 12;
- (f.1) the refusal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pursuant to section 105.795;

- (a.1) 제 105.3 조에 따른 주거시설허가의 기존 발급에는 부과되지 아니하였지만 그 갱신에 부과된 조건
- (a.2) 제 105.3 조에 따른 주거시설허가의 갱 신 거절
- (a.3) 제 105.6 조에 따른 명령
- (a.4) 제 105.7 조에 따른 주거시설허가의 변 경, 정지 또는 취소
- (b) 아동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영 구후견계약의 대상인 아동 방문에 대한 허가 또는 그 허가의 거절
- (c) 및 (d) 2003년 법률 제 16호 제 105조 에 따라 폐지
- (e) 책임자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에 대하여 제 1 부제 2 절이나 제 6 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 1 부제 3 절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의 거절 또는 불이 행
- (f) 2003년 법률 제F-5.3호 제12조에 따라 폐지
- (f.1) 제 105.795 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거 절

- (f.2) the refusal to provide support or financial assistance pursuant to section 57.3;
- (f.3) a matter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s being
- (i) subject to an appeal to an Appeal Panel, and
- (ii) a matter in respect of which the Appeal Panel may only make a decision referred to in section 119(2);
- (g) any other matter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s being subject to an appeal to an Appeal Panel.
- (2.1) Notwithstanding subsection (2)(a), a child who is receiving treatment in a residential facility may not appeal a decision of a director to place the child in that residential facility.
- (3) A notice of appeal in the prescribed form
- (a) must include, where applicable, a copy of the decision provided under section 117.1(4)(b) or a statement that the review is deemed to have confirmed the decis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117.1(5), and
- (b) must be served on the director
- (i) not more than 30 days after the copy of the decision was provided under section 117.1(4)(b) or the deemed confirmation

- (f.2) 제 57.3 조에 따른 부양이나 재정지원 제공의 거절
- (f.3) 규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서 정한 사안
- (i) 항소 재판부에 대한 항소 대상
- (ii) 항소 재판부가 제 119 조제(2)항에 규정된 결정만을 할 수 있는 사안
- (g) 규정으로 항소 재판부에 대한 항소 대 상에서 정한 다른 사안
- (2.1) 제(2)항제(a)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은 해당 주거시설에 자신을 배치한 책임자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 (3) 항소 통지서는 규정된 양식이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해당되는 경우에 제 117.1 조제(4)항제 (b)호에 따라 제공된 결정문의 사본 또는 제 117.1 조제(5)항에 따라 심사에서 결정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진술서가 첨부된다.
- (b)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책임자에게 송달한다.
- (i) 제 117.1 조제(4)항제(b)호에 따라 결정 문의 사본이 제공되거나 제 117.1 조제(5)항

occurred under section 117.1(5), or

- (ii) in the case of an appeal of a decision or order described in subsection (5), not more than 30 days after the appellant has received notice of the director's decision or order.
- (4) Repealed 2008 c31 s58.
- (5) A person, may appeal the decision to an Appeal Panel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 (a) who is dissatisfi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imposed by a director with respect to a conditional licence to operate an adoption agency issued under section 88(1)(b),
- (b) whose application for a licence or renewal of a licence to operate an adoption agency is refused under section 88(1)(c), or
- (c) whose licence to operate an adoption agency has been suspended or cancelled by a director under section 89,
- (5.1) Notwithstanding subsection (2), a decision of a director that was made after the matter was referred back to the director for further consideration under section 119(2) may not be appealed to the Appeal Panel under subsection (2).
- (6) Repealed 2003 c16 s105.

에 따라 승인이 간주된 날부터 30일 이내

- (ii) 제(5)항에 규정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소의 경우 항소인이 책임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4)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58 조에 따라 폐지
-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에 따라 항소 재판부에 결정에 대한 항소 를 제기할 수 있다.
- (a) 제 88 조제(1)항제(b)호에 따라 발급된 입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부 허가에 대 하여 책임자가 부과한 조건에 불만이 있다.
- (b) 입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 신청이나 허가 갱신이 제 88 조제(1)항제(c)호에따라 거절된다.
- (c) 책임자가 제 89 조에 따라 입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였 다.
- (5.1)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 119 조제 (2)항에 따라 그 사안이 추가 검토를 위하여 책임자에게 환송된 이후에 이루어진 책임자의 결정은 제(2)항에 따라 항소 재판부에 항소가 제기될 수 없다.
- (6)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105 조에 따라

Appeals of Appeal Panel Decisions to Court of Queen's Bench

120.1 Procedure on appeal

- (1) A decision of an Appeal Panel under section 119(2.1) may be appealed to the Court of Queen's Bench by a party to the appeal before the Appeal Panel or by the Minister.
- (2)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shall be commenced and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 (3) If a notice of appeal is filed pursuant to this section, the appellant may apply to the Court of Queen's Bench for an order staying the decision of the Appeal Panel appealed from pending the hearing of the appeal.

120.2 Decision of Court

On hearing an appeal made pursuant to section 120.1, the Court of Queen's Bench may confirm, reverse or vary the decision of the Appeal Panel.

General

121 Delegation

- (1) The Minister may delegate to any person or government any power, duty or function of the Minister under this Act.
- (2) The Minister may delegate to any

폐지

항소 재판부 결정에 대한 고등법원 항 소

제120.1조(항소절차)

- (1) 항소 재판부에 제기된 항소의 당사자 또는 주무장관은 제 119 조제(2.1)항에 따른 항소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 이 조에 따른 항소는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 진행된다.
- (3) 항소 통지서가 이 조에 따라 제출되면, 항소인은 항소가 제기된 항소 재판부의 결정 을 항소에 대한 심리가 있을 때까지 정지하 는 명령을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20.2조(법원의 결정)

고등법원은 제 120.1 조에 따른 항소에 대한 심리에서 항소 재판부의 결정을 승인,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일반사항

제121조(위임)

- (1) 주무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임무나기능을 특정인이나 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 (2) 주무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특정

가 []

person or government

- (a) any power, duty or function of a director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r
- (b) any power, duty or function conferred or imposed on a director by a cour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function of receiving reports under section 4 or 5 and any power, duty or function that involves a director forming an opinion.

- (3) Subsection (1) does not apply
- (a) to any power or duty of the Minister to make regulations as defined in the Regulations Act, or
- (b) to the power of the Minister under subsection (2) to delegate a power, duty or function of a director.
- (4) A director may delegate to any of the following any power, duty or function of the director referred to in subsection (2):
- (a) a person employed or engag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 (b) a foster parent in respect of a particular child;
- (c) a person who is providing care to a child in respect of that child;
- (d) any other person or any government.
- (5) A delegation under subsection (1) or

인이나 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 (a)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자의 권한, 임무나 기능
- (b) 법원이 책임자에게 부여하거나 부과한 권한, 임무나 기능

이에는 제 4 조나 제 5 조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는 기능 그리고 책임자의 의견 형성에 관한 권한, 임무나 기능이 포함되나 이에 국 한되지 아니한다.

- (3) 제(1)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규정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규정을 제정하는 주무장관의 권한이나 임무
- (b) 제(2)항에 따라 책임자의 권한, 임무나 기능을 위임하는 주무장관의 권한
- (4) 책임자는 제(2)항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 임무나 기능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a)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이 법의 시행에 종사하는 자
- (b) 특정 아동과 관련하여 위탁부모
- (c) 아동과 관련하여 해당 아동을 돌보고 있는 자
- (d) 다른 사람이나 정부
- (5)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위임에는 복

- (4) may include the power to subdelegate.
- (6) A delegation under subsection (2) may include the power to subdelegate the director's powers.
- (7) The Minister or a director is authorized to receive any authority delegated to the Minister or director by a government or child welfare authority relating to a child who is in the custody or under the guardianship of that government or authority.

122 Agreements

- (1) The Minister or a director may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any person for the purpose of that person providing intervention services to a child under this Act.
- (2) The Minister may enter into an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for the purposes of providing services under this Act on a reserve.

123 Engagement of consultants

- (1) The Minister may appoint experts or persons having special technical or other knowledge to advise an Appeal Panel under this Part.
- (2) A person appointed under subsection
- (1) may be paid the remuneration and expenses that the Minister prescribes.

- 위임(復委任) 권한이 포함될 수 있다.
- (6) 제(2)항에 따른 위임에는 책임자의 권한을 복위임 하는 권한이 포함될 수 있다.
- (7) 주무장관이나 책임자는 정부나 아동복 지당국이 보호하거나 후견을 하는 아동에 관 하여 주무장관이나 책임자에게 위임된 권한 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

제122조(계약)

- (1) 주무장관이나 책임자는 이 법에 따라 아동에게 개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주무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3조(자문위원의 참여)

- (1) 주무장관은 이 부에 따른 항소 재판부에 조언을 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특수한 기능이나 그 밖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자는 주무장관 이 정하는 보수와 경비의 지급을 받을 수 있 다.

124 Minor guardian

This Act is applicable to a parent or guardian even if that parent or guardian is under the age of 18 years notwithstanding that the parent or guardian does not hav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but the Court may appoint the Public Trustee or any other person to safeguard the parent's or guardian's interest in any proceeding before the Court.

124.1 Reciprocal agreement

- (1) The Minister may enter into agreements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y in any jurisdiction within or outside Canada with respect to
- (a) the transfer to the authority by a director of the guardianship of a child under a permanent guardianship agreement or order, and
- (b) the transfer to a director by the authority, of the guardianship of any child under the guardianship of that authority.
- (2) If a director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guardianship of a child pursuant to subsection (1), the child is deemed to be under the guardianship of the director pursuant to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under this Act.
- (3) Any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guardianship of a child transferred to a director pursuant to this section must be

제124조(미성년 후견인)

이 법은 부모나 후견인이 18 세 미만이어서 소송을 대리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모나 후견 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법원은 그 절차에서 부모나 후견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 여 공인 수탁자나 다른 자를 임명할 수 있 다.

제124.1조(호혜적 협약)

- (1) 주무장관은 캐나다 역내 또는 역외를 관할하는 관계 당국과 다음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a) 책임자가 영구후견계약이나 영구후견명 령에 따른 아동에 대한 후견을 해당 당국에 이양하는 것
- (b) 해당 당국이 그 후견에 따른 아동에 대한 후견을 책임자에게 이양하는 것
- (2) 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아동에 대한 후견 책임을 부담하면, 해당 아동은 이 법에 따른 영구후견명령에 따라 책임자의 후견을 받는 것으로 본다.
- (3) 이 조에 따라 책임자에게 이양된 아동 후견에 관한 절차는 이 법에 따라 진행하여

taken in accordance with this Act.

125 Foreign orders and agreements

An order made by a court or an agreement for care entered into pursuant to child welfare legislation in another jurisdiction that is certified as being valid and subsisting by the court or an appropriate authority in that jurisdiction has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if it had been made under this Act as far as is consistent with this Act.

126 Confidentiality

- (1) The Minister and any person employed or assisting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including an agency providing services on behalf of a director, may disclose or communicate personal information that comes to the Minister's or person's or agency's attention under this Act only in accordance wit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in proceedings under this Act, in accordance with Part 2, Division 2 or this Part or as follows:
- (a) to any person or organization, including an agency providing services to a child, if the disclosure is necessary to plan services for or provide services to the child or the child's family or to plan or provide for the day—to—day care or education of the child;
- (b) to the guardian of the child to whom the information relates or the guardian's

야 한다.

제125조(외국의 명령과 계약)

다른 사법권의 아동복지 입법에 따라 법원이 내린 명령이나 이에 따라 체결된 돌봄 계약 은 해당 사법권의 법원이나 관계 당국에 의 하여 유효한 것으로 공인되면, 이 법에 부합 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 력과 효과가 있다.

제126조(비밀 유지)

(1) 주무장관 그리고 책임자를 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이 법의시행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오로지「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제 2 부제 2 절이나 이 부에 따른 이 법의 절차에서 공개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 또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

- (a) 그 공개가 아동이나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아동의 일상적 돌봄이나 교육을 계획하거나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한 특정인이나 단체
- (b) 그 정보와 관련된 아동의 후견인 또는

lawyer;

- (c) to the child to whom the information relates or the child's lawyer;
- (d) to any person employed in the administration of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in another province or territory of Canada;
- (e) to any person with the written consent of the Minister.
- (2) Notwithstanding subsection (1), no information shall be disclosed or communicated pursuant to this section without the consent in writing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Solicitor General or that Minister's agent if that information was provided by an agent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Solicitor General.
- (3) A director or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a director, including an agency providing services on behalf of a director, may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health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conducting an assessment or an investigation or providing services under this Act.
- (4) A custodian may disclose health information to a director or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a director, including an agency providing services on behalf of a director, for the purposes set out in subsection (3).
- (5) A public body may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to a director or a person acting

후견인의 변호사

- (c) 그 정보와 관련된 아동 또는 아동의 변호사
- (d) 캐나다의 다른 주나 준주에서 아동 보호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고용된 자
- (e) 주무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한 자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차관의 대리인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 에 그 정보는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또는 주무장관 대리인의 동의서 없이 이 조에 따라 공개되거나 전달되지 아니한다.
- (3) 책임자 또는 책임자를 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책임자를 대리하여 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평가나조사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 (4) 보호자는 제(3)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책임자 또는 책임자를 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책임자를 대리하여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의료정보를 공개할수 있다.
- (5) 공공단체는 제(3)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책임자 또는 책임자를 대리하여 서비

on behalf of a director, including an agency providing services on behalf of a director, for the purposes set out in subsection (3).

(6) No liability attaches to the Minister or any other person who discloses or communicates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if the disclosure or communication is made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126.01 Repealed 2011 cC-11.5 s26.

126.1 Privileged information

- (1) Despite section 126(1), the name of a person who makes a report to the director or a police officer under section 4 or 5 and information that would identify that person is privileged information of the person making the report and is not admissible in evidence in any action or proceeding before any court or an Appeal Panel or before any inquiry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 (2) Despite subsection (1), the Minister may direct the release of information under subsection (1) that would identify the person.
- (3) If there is a conflict or inconsistency between subsection (1)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subsection (1) prevails.

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책임자를 대리하여 행위를 하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정보의 공개나 전달이 이 법의 시행 또는 아동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장관 또는 이 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거나 전달한 다른 자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126.01조 2011년 법률 제C-11.5호 제26 조에 따라 폐지

제126.1조(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

- (1) 제 126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 4 조 나 제 5 조에 따라 책임자나 경찰관에게 신 고를 한 자의 이름 그리고 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는 신고를 한 자의 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이며 해당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원이나 항소 재판부의 소송행위나 소송절 차 또는 어떠한 조사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은 특정 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항의 정 보 공개를 지시할 수 있다.
- (3) 제(1)항과 「정보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에 충돌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 우 제(1)항이 우선한다.

126.11 Applying for information

- (1) In this section, "court" means the Provincial Court, Court of Queen's Bench and Court of Appeal.
- (2) Despite section 126 but subject to sections 126.01 and 126.1, a party to a civil matter under this Act or any other Act, including a matter where a director is a party, may apply to the court hearing the matter for disclosure of a record or part of a record that contains information held under this Act.
- (3) Section 24 applies to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 (4)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2) must be in writing, include an affidavit and identify the record or the part of the record that contains the information, the person who has possession of the record and the grounds for disclosure.
- (5) The application must be served on at least 5 days' notice, or longer if ordered by the court, on a director, the person who has control or possession of the record or the part of the record and any other person that the court directs.
- (6) The court may adjourn the application.
- (7)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ssertions are not sufficient on their own to establish that the record or part of the record is relevant, material and likely

제126.11조(정보 신청)

- (1) 이 조에서 "법원" 이란 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항소법원을 말한다.
- (2) 제 126 조에도 불구하고, 제 126.01 조와 제 126.1 조에 따라, 책임자가 당사자인 사안을 포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민사 사안의 당사자는 그 사안을 심리하는 법원에 이 법에 따라 유보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이나 그 일부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3) 제 24 조는 이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리에 적용된다.
- (4)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이어야 하며 선서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를 포함한 기록이나 그 일부, 그 기록을 점유한 자 및 공개 근거가 확인되어야 한다.
- (5) 그 신청은 적어도 5 일 전까지 또는 법원이 명령하는 이보다 긴 기간을 두고 책임자, 기록이나 그 일부를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자 그리고 법원이 지시하는 다른 자에게송달하여야 한다.
- (6) 법원은 신청을 연기할 수 있다.
- (7) 다음과 같은 주장 중에서 하나 이상은 기록이나 그 일부가 관련이 있고 중요하며 공개를 구하는 당사자의 위치를 높이기 위하 여 잠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necessary to advance the position of the party seeking disclosure:

- (a) that the record exists;
- (b) that the record relates to intervention services the family has received or is receiving;
- (c) that the record may relate to the credibility of any witness.
- (8) The court, on considering, may order that the record or the part of the record be produced to the court,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it is relevant, material and likely necessary to advance the position of the applicant.
- (a) wheth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cord or the part of the record has or is likely to have probative value and has not been disclosed in another record or in another form,
- (b) the potential prejudice to the dignity and right to privacy of any person to be affected by the disclosure of the record or the part of the record,
- (c) the rights of the parties to a fair hearing.
- (d) the public interest in facilitating and supporting the care of children under the guardianship of or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 (e) the need to not unduly delay matters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 (a) 그 기록이 존재한다.
- (b) 그 기록이 가족이 받았거나 받고 있는 개입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 (c) 그 기록이 증인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8) 법원은 다음을 검토하고 기록이나 그일부가 관련이 있고 중요하며 신청인의 위치를 높이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기록이나 그 일부에 포함된 정보가 증명 가치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고 다른 기록이나 다른 형태로 공개되지 아니하였는 지 여부
- (b) 기록이나 그 일부의 공개로 영향을 받는 자의 존엄이나 사생활권이 침해될 가능성
- (c) 공정한 심리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
- (d) 책임자의 후견이나 보호를 받은 아동의 돌봄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얻는 공익
- (e)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과도하

affecting a child,

- (f) the potential danger to the physical, mental or emotional health of a child or another person,
- (g) the size of the requested record or the requested part of the record, and
- (h) any other factor that the court may consider relevant.
- (9) On production of the record or the part of the record pursuant to subsection (8), the court must examine it in private and must
- (a) reconsider the factors set out in subsection (8),
- (b) reconsider wheth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cord is relevant, material and likely necessary to advance the position of the applicant, and
- (c) determine whether the record should be disclosed to the applicant.
- (10) If the court orders disclosure of the record or the part of the record under subsection (9),
- (a) the court may direct that the record or the part of the record be disclosed subject to conditions, including
- (i) that it be disclosed to other parties in addition to the applicant,

게 지체해서는 아니 되는 필요성

- (f) 아동이나 다른 자의 신체적, 정신적 또 는 정서적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
- (g) 요청된 기록이나 그 일부의 규모
- (h) 법원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요인
- (9) 제(8)항에 따라 기록이나 그 일부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비공개로 검토하여야하고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a) 제(8)항에 규정된 요인을 재고한다.
- (b)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관련이 있고 중 요하며 신청인의 위치를 높이기 위하여 잠재 적으로 필요한지를 재고한다.
- (c) 기록이 신청인에게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 (10) 법원이 제(9)항에 따라 기록이나 그일부의 공개를 명령하면, 다음과 같다.
- (a)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 조건에 따라 기록 이나 그 일부를 공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i) 신청인에 더하여 다른 당사자들에게 공 개한다.

- (ii) that it be edited as directed by the court,
- (iii) that it cannot be disclosed to any other person except with the approval of the court,
- (iv) that it may be viewed only at a location specified by the court and that no copy be made of it,
- (v) that only a restricted number of copies be made of it,
- (vi) that personal information be severed from it, and
- (vii) any other condition considered advisable by the court, and
- (b) the use of the record is limited to the proceedings unl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 of the record or the part of the record under subsection (9), unl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it must be kept in a sealed package by the court until the expiration of the time for any appeal or the completion of any appeal in the matter and then it must be returned to the person who produced it to the court.

126.12 References to guardian

If a director is or has been a guardian of a child, a reference in section 126.2 or 126.3 to a guardian includes the person who was

- (ii) 법원의 지시에 따라 편집한다.
- (iii) 법원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iv) 법원이 명시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이를 복사할 수 없다.
- (v) 복사 매수를 제한한다.
- (vi) 개인정보를 분리한다.
- (vii) 법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 건을 붙인다.
- (b) 기록의 사용은 관련 절차로 제한된다. 다만, 법원이 다르게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 (11) 법원은 제(9)항에 따라 기록이나 그일부의 공개를 명령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명령도 하지 아니하면, 항소기간이 만료되거나사안에 대한 항소가 완료될 때까지 기록이나그 일부를 봉인된 포장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던 자에게반환하여야 한다.

제126.12조(후견인의 정의)

책임자가 아동의 후견인이거나 후견인이었다면, 제 126.2 조나 제 126.3 조에서 후견인에는 책임자가 아동의 후견인이 되기 직전에

the guardian of the child immediately before a director became the guardian of the child.

126.2 Ban on publication

- (1) No person shall publish the name or a photograph of a child or of the child's parent or guardian in a manner that reveals that the child is receiving or has received intervention services.
- (2) Despite subsection (1),
- (a) a director may publish or consent to the publication of the name or a photograph of a child or of the child's parent or guardian and any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the child if, in the opinion of the director, the publication is in the child's best interest or necessary for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 (b) a child who is 16 years of age or older may publish, or consent to the publication of, the child's name or photograph in a manner that reveals that the child has received intervention services;
- (c) a Court may, on the application of, grant permission to the child, the parent or guardian or the interested party, as the case may be, to publish or consent to the publication of the name or photograph of the child or of the child's parent or guardian in a manner that reveals that the child is receiving or has received intervention services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publication is in the child's best interest or

아동의 후견인이었던 자가 포함된다.

제126.2조(공표 금지)

- (1)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아동이 개입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는 것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표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 (a) 책임자는 공표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거나 적절한 법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이름이나 사진 그리고 아동과 관련된 다른 정보를 공표하거나 그 공표에 동의할 수있다.
- (b) 16 세 이상인 아동은 자신이 개입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을 공표하거나 그 공표에 동의할 수 있다.
- (c)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신청에 따라 그 공표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거나 공익을 위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경우에따라 아동, 부모나 후견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아동이 개입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는 것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표하거나 그 공표에 동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the public interest.

- (i) a child,
- (ii) a parent or guardian of a child, or
- (iii) any interested party,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 (3) A person who brings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2)(c) must provide notice of the application to a director.
- (4) Any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 (1)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fine of not more than \$10 000 and in default of pay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6 months.
- (4.1) This section does not apply in respect of a deceased child.
- (5) Repealed 2014 c7 s15.

126.3 Application for publication ban respecting deceased child

- (1) In this section, "family member", in respect of a deceased child, means an individual who
- (a) is a parent, guardian, grandparent or sibling of the deceased child,
- (b) stands in the place of a paren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48 of the Family Law Act, with respect to the child, or

- (i) 아동
- (ii)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
- (iii)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자
- (3) 제(2)항제(c)호에 따라 신청을 한 자는 책임자에게 신청을 고지하여야 한다.
- (6) 제(1)항을 위반한 자는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으며 이에 따라 10,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 (4.1) 이 조는 사망한 아동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2014 년 법률 제 7 호 제 15 조에 따라 폐지

제126.3조(사망한 아동에 관한 공표 금지의 신청)

- (1) 이 조에서 "가족 구성원" 이란 사망한 아동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말한 다.
- (a) 사망한 아동의 부모, 후견인, 조부모나 형제자매인 개인
- (b) 해당 아동과 관련하여 「가족법에 관한 법률」 제 48 조에서 의미하는 부모를 대신 하는 개인

- (c) is a member of a prescribed class of individuals.
- (2) Where a child who received intervention services has died, may make an ex part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to the Court for an order that no person shall publish, in a manner that reveals that the deceased child received intervention services, the name or a photograph of the deceased child, of any parent or guardian of the deceased child or of any other individual identified in the order.
- (a) a director.
- (b) a family member, or
- (c)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any other person
- (3) The Court may grant an order applied for under subsection (2)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order would be appropriate, having regard to
- (a) the best interests of any child receiving intervention services who is a sibling of the deceased child.
- (b) the known wishes of the deceased child, and
- (c) the public interest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 (4) An order made under subsection (3)

- (c) 규정된 범주에 속하는 개인
- (2) 개입서비스를 받았던 아동이 사망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는 사망한 아동이 개입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망한 아동, 사망한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명령에 기재된 다른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령에 대한 일방당사자 신청의 신청을 규정에 따라법원에 할 수 있다.
- (a) 책임자
- (b) 가족 구성원
- (c)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자
- (3) 법원은 다음을 고려하여 그 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명령을 승인할 수 있다.
- (a) 사망한 아동의 형제자매이며 개입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 (b) 사망한 아동이 표시한 희망
- (c) 법의 집행이란 공익
- (4) 제(3)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중 어느

does not bind

- (a) any family member, or
- (b) any person who has not been served with a copy of the order unless the Court is satisfied that, in all of the circumstances, the person has knowledge of the order.
- (5) Any person who is bound by an order made under subsection (3) may make an application to the Court to have the order set aside.

127 Records

- (1) In this section, "record" includes
- (a) a document, record, report, return, memorandum or other information whether in writing or in electronic form or represented or reproduced by any other means, and
- (b) the results of the recording of details of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s and programs to illustrate what the systems and programs do and how they operate.
- (2) A person required to do so by the regulations shall keep records with respect to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n investigation, agreement or order under this Act or any predecessor to this Act.
- (3) The records shall be kept

하나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 (a) 가족 구성원
- (b) 명령 사본의 송달을 받지 못한 자. 다만, 법원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가 명령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5) 제(3)항에 따른 명령의 구속을 받는 자는 명령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27조(기록)

- (1) 이 조에서 "기록" 에는 다음이 포함된 다.
- (a) 서면이나 전자 양식 또는 다른 수단으로 표현되거나 복제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서류, 기록, 보고서, 회신, 적요서(摘要書) 또는 그 밖의 정보
- (b)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하는 일과 작동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기록한 결과
- (2) 규정으로 의무가 부과된 자는 이 법 또는 구법에 따른 조사, 계약이나 명령의 대상인 아동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 (3) 그 기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보관한다.

- (a) at the person's place of business in Alberta, or
- (b) subject to any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Minister may impose, at a place in Alberta or elsewhere approved by the Minister.
- (4) The records shall be kept until 100 years after the year to which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cords relates.
- (5) Notwithstanding subsection (4), the Minister may order the destruction or consent to the destruction of records required to be kept under this section.
- (6) The records that are required to be kept by a person shall be made available by that person for inspection by the Minister or a pers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whether or not those records are in that person's possession.
- (7) Any person who contraven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fine of not more than \$2000 and in default of pay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6 months.

128 Maintenance by the Minister

- (1) The Minister shall pay
- (a) the costs incurred for the care and maintenance of a child who is in the custody of a director or under the guardianship of a director, and

- (a) 의무자의 앨버타주 내 사업장
- (b) 주무장관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주무장관이 승인한 앨버타주나 다른 지역의 장소
- (4) 기록은 그 기록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 된 연도부터 100년 후까지 보관한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은 이 조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는 기록의 파괴를 명령하거나 그 파괴에 동의할 수 있다.
- (6) 특정인은 그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 무장관 또는 주무장관이 허가한 자의 열람을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을 공개 한다.
- (7) 이 조를 위반한 자는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으며 이에 따라 2,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제128조(주무장관의 부양)

- (1) 주무장관은 다음을 지급한다.
- (a) 책임자의 보호나 후견을 받는 아동의 돌 봄과 양육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

- (b) the costs of any assessment ordered to be made under section 31.
- (2) Subsection (1) does not affect the liability of the parents of a child or of the child to provide care and maintenance for the child.
- (3) The Minister may recover the costs the Minister incurs under this Act for the care and maintenance of a child.

128.1 Alberta Resource Rebate

- (1) In this section, "director" means the director designated by the Minister as the director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 (2) Where a child who is the subject of a temporary guardianship order or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or agreement, or a youth who is the subject of a custody agreement or a family enhancement agreement, is entitled to a refund of an amount deemed under section 35.2 of the Alberta Personal Income Tax Act to be an overpayment, the refund shall be held and administered by the director.
- (3) Notwithstanding section 34(4), the director is a trustee for the purposes of section 7 of the Minors' Property Act and shall administer refunds referred to in subsection (2)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made under subsection (4).
- (4) 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

- (b) 제 31 조에 따라 명령이 내려진 평가의 비용
- (2) 제(1)항은 아동에게 돌봄과 양육을 제 공하는 아동의 부모나 아동 자신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주무장관은 이 법에 따라 아동의 돌봄 과 양육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8.1조(앨버타주 자산 환급)

- (1) 이 조에서 "책임자" 란 주무장관이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책임자로 지정한 책임자 를 말한다.
- (2) 임시후견명령 또는 영구후견명령이나 계약의 대상인 아동 또는 보호계약이나 가족 증진계약의 대상인 청소년에게 「앨버타주 개인 소득세법」 제 35.2 조에 따라 초과 납부된 것으로 보는 금액의 환급 자격이 있는 경우 책임자는 환급액을 보유하고 관리한다.

- (3) 제 34 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미성년자 재산법」 제 7 조의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이며 제(4)항에 따라 정한 규정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환급액을 관리한다.
- (4) 부총독은 다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may make regulations

- (a) notwithstanding the Trustee Act, respecting the manner in which refunds under section 35.2 of the Alberta Personal Income Tax Act are to be administered by the director, including the circumstances and manner in which interest may be payable;
- (b)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refunds in the event that a child cannot be located after the child attains the age of 18 years.

129 Appointments

- (1) The Minister shall designate one or more individuals as director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nd the Protection of Sexually Exploited Children Act.
- (1.1) An individual designated under subsection (1) must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regulations.
- (2) A director or a director's delegate when acting under section 19, 45, 46 or 48 has the powers of a peace officer.
- (3) Repealed 2003 c16 s110.

130 Offence

Any person who,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fine of not more than \$25 000 or to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24 months or to both a fine and

수 있다.

- (a) 「수탁법」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과 방식을 포함하여 책임자가 「앨버타주 개인 소득세법」 제 35.2 조에 따른 환급액을 관리하는 방식
- (b) 아동이 18 세가 된 뒤에도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환급액의 처분

제129조(임명)

- (1) 주무장관은 이 법과 「성 착취 아동 보호법」의 목적을 위하여 1 명 이상의 개인을 책임자로 지정한다.
- (1.1)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 (2) 책임자나 그 수임인은 제 19 조, 제 45 조, 제 46 조나 제 48 조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경우에 치안관의 권한을 가진다.
- (3)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110 조에 따라 폐지

제130조(범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으며 이에 따라 25,000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4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

imprisonment.

- (a) causes a child to be in need of intervention, or
- (b) obstructs or interferes with, or attempts to obstruct or interfere with, a director, a director's delegate, a peace officer or any other duly authorized person exercising any power or performing any duty under this Act

131 Regulations

- (1) 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regulations
- (a) respecting procedures for the assessment and placement of children under this Act;
- (b) prescribing the standards to be met in providing intervention services including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to be employed in providing those services;
- (c) respecting rules under which appeals under this Act are to be made and heard and dealing generally with all matters of procedure before Appeal Panels, the Court and the Court of Queen's Bench under this Act;
- (c.1) respecting the emergency circumstances in which an appeal may be heard by one member of an Appeal Panel;
- (d) prescribing the forms including notices to be used in any application made to

다.

- (a) 아동을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b) 책임자, 그 수임인, 치안관 또는 정당하 게 권한이 부여된 다른 자가 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 해 또는 간섭하거나 방해나 간섭을 시도한 다.

제131조(규정)

- (1) 부총독은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이 법에 따른 아동의 평가와 배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b)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용되는 자의 자격을 포함하여 개입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 한다.
- (c) 이 법에 따라 항소가 제기되고 심의되는 규칙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 따른 항소 재판 부, 법원 및 고등법원 절차의 모든 사안을 일반적으로 다루는 규정을 제정한다.
- (c.1) 항소 재판부 구성원 1 명이 항소를 심리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d) 이 법에 따라 항소 재판부, 법원 및 고 등법원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통지

Appeal Panels, the Court and the Court of Queen's Bench under this Act;

- (d.1) respecting applications to the Court under section 126.3,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regulations
- (i) prescribing classes of individuals for the purpose of section 126.3(1)(c);
- (ii) respecting service of orders made under section 126.3;
- (e) prescribing the professions or occupations to which section 4(5) applies;
- (e.1) respecting any matter necessary or advisable to carry out effectively the intent and purpose of section 19.1;
- (e.11) respecting notice to bands under section 53 and band participation in proceedings as provided for under section 53.1:
- (e.2) respecting the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section 57.8;
- (e.3) repealed 2018 c24 s28;
- (f) repealed 2003 c16 s131.
- (2) The Minister may make regulations
- (a) prescribing the forms to be used under this Act other than the forms prescribed under subsection (1);

서를 포함하여 형식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 다.

- (d.1) 제 126.3 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i) 제 126.3 조제(1)항제(c)호의 목적상, 개 인의 범주를 정한다.
- (ii) 제 126.3 조에 따른 명령의 송달에 관하 여 정한다.
- (e) 제 4 조제(5)항이 적용되는 전문직이나 직업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e.1) 제 19.1 조의 의도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타당한 사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e.11) 제 53 조에 따른 부족에 대한 통지 그리고 제 53.1 조에 따라 규정된 부족의 절 차 참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e.2) 제 57.8 조의 목적을 위하여 금융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e.3) 2018 년 법률 제 24 호 제 28 조에 따라 폐지
- (f)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131 조에 따라 폐지
- (2) 주무장관은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제(1)항에 따라 정한 형식을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사용되는 형식을 정하는 규정 을 제정한다.

- (a.1) respecting or adopting the form to be used for a home study report under this Act;
- (b) prescribing the amount, nature and conditions of services and financial assistance provided under this Act;
- (c) respecting support services;
- (d) prescribing the rates payable for the provision of any intervention services under this Act;
- (e) prescribing the period for which, the purposes for which and the conditions on which a person may be provided with support and financial assistance under section 57.3;
- (f) designating facilities as secure services facilities;
- (g), (h) repealed 2003 c16 s112;
- (i) repealed 2003 cF-5.3 s12;
- (j) repealed 2018 c24 s28;
- (k) prescribing a schedule of fees that will be paid to lawyers appointed under section 112;
- (1) prescribing matters that may be the subject of an appeal to an Appeal Panel and prescribing matters in respect of which the

- (a.1) 이 법에 따른 가정조사보고서에 사용되는 형식에 관한 규정이나 이러한 형식을 채택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b)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정 지원의 양, 성질 및 조건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c) 부양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d) 이 법에 따른 개입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e) 제 57.3 조에 따라 부양과 재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 목적 및 조건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f) 보안서비스시설로 지정하는 규정을 제정 한다.
- (g), (h)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112 조에 따라 폐지
- (i) 2003년 법률 제 F-5.3호 제 12 조에 따라 폐지
- (j) 2018 년 법률 제 24 호 제 28 조에 따라 폐지
- (k) 제 112 조에 따라 임명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명세서를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1) 항소 재판부에 대한 항소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정하는 규정과 항소 재판 부가 제 119 조제(2)항에 규정된 결정만을

Appeal Panel may only make a decision referred to in section 119(2);

- (m) prescribing those persons required to keep records under this Act;
- (n) prescribing any other matter required to be prescribed under this Act;
- (o), (p) repealed 2011 cC-11.5 s26;
- (q) respect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icensed adoption agencies for the placement of children for adoption;
- (r) repealed 2003 c16 s112;
- (s) respecting applications and fees for the licensing of licensed adoption agencies and respecting the issuance, renewal and expiry of licenses;
- (t) prescribing the books, records, accounts and other documents required to be maintained by licensed adoption agencies, and the inspection, maintenance and security of those books, records, accounts and other documents;
- (u) prescribing the qualifications to be met by persons operating or employed by licensed adoption agencies and prescribing the duties of those persons;
- (v) prescribing the services that may be provided by licensed adoption agencies and the fees and expenses that may be charged

할 수 있는 사안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m) 이 법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자를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n) 이 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는 다른 사 안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o), (p) 2011 년 법률 제 C-11.5 호 제 26 조에 따라 폐지
- (q) 입양을 위한 아동 배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r) 2003 년 법률 제 16 호 제 112 조에 따라 폐지
- (s) 인가 입양기관의 허가 신청과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허가의 발급, 갱신 및 만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t) 인가 입양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장부, 기록, 회계장부 및 다른 문서 그리고 이러한 장부, 기록, 회계장부 및 다른 문서의 열람, 보존 및 보안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u) 인가 입양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자격을 정하는 규정과 이러한 자의 임무를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v) 인가 입양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스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청구될 수 있 는 수수료 및 경비를 정하는 규정 그리고 인

for those services and prescribing the standards of service that must be maintained by licensed adoption agencies;

- (w) prescribing the information, documents and reports required to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by licensed adoption agencies;
- (x) respecting the placement of children for adoption in or outside Alberta by licensed adoption agencies;
- (y) prescribing the forms to be used by licensed adoption agencies and providing for their use;
- (z) respecting the contents of advertisements and other promotional material that may be used by licensed adoption agencies;
- (aa) respecting applications under section 72.1;
- (bb) respecting reports under section 34.1;
- (cc) respecting documents required to be sealed under section 74.1(2);
- (dd) respecting licensing and standards for the operation of residential facilities;
- (ee) respecting rates that may be charged by residential facilities;
- (ff) repealed 2004 c16 s30;
- (gg) respecting agreements under section

가 입양기관이 유지하여야 하는 서비스 기준 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w) 인가 입양기관이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서류 및 보고서를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x) 인가 입양기관이 앨버타주 역내 또는 역외에서 하는 입양을 위한 아동 배치에 관 한 규정을 제정한다.
- (y) 인가 입양기관이 사용하는 형식을 정하는 규정과 그 사용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z) 인가 입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광고 및 다른 홍보 자료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한다.
- (aa) 제 72.1 조에 따른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bb) 제 34.1 조에 따른 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cc) 제 74.1 조제(2)항에 따라 봉인되어야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dd) 주거시설의 허가와 운영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ee) 주거시설이 청구할 수 있는 요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ff) 2004 년 법률 제 16 호 제 30 조에 따라 폐지
- (gg) 제 122 조에 따른 계약에 관한 규정을

122;

- (hh) respecting financial assistance under sections 105.795 and 105.8 and support and financial assistance under section 57.3;
- (ii) respecting procedures for review under section 117.1;
- (jj) repealed 2008 c31 s63;
- (kk) repealed 2004 c16 s30;
- (ll) respecting plans of care under section 57.2;
- (mm) respecting qualifications of directors;
- (nn) defin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oo) respect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pp) respecting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conduct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qq) prescribing qualified persons for the purposes of Part 1, Division 5 and Part 2;
- (rr) respecting the contents of plans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52 and 63;
- (ss) specifying reports to which section 105.793(f) applies.

제정한다.

- (hh) 제 105.795 조와 제 105.8 조에 따른 재정지원과 제 57.3 조에 따른 부양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ii) 제 117.1 조에 따른 심사절차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한다.
- (jj) 2008 년 법률 제 31 호 제 63 조에 따라 폐지
- (kk) 2004년 법률 제 16호 제 30조에 따라 폐지
- (II) 제 57.2 조에 따른 돌봄 계획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한다.
- (mm) 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nn) 대체적 분쟁 해결을 정의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oo) 대체적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한다.
- (pp) 대체적 분쟁 해결을 진행하는 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qq) 제 1 부제 5 절과 제 2 부의 목적을 위하여 자격자를 정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 (rr) 제 52 조와 제 63 조의 목적을 위하여계획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ss) 제 105.793 조제(f)항이 적용되는 보고 서를 명시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131.1 Restriction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31(1)(d.1), no regulation shall be made prior to being considered by an all party committee of the Legislative Assembly.

Part 5 Review, Transitional, Repeal and Coming into Force

131.2 Review

- (1) In this section, "review committee" means the committee appointed under subsection (2).
- (2) At least once every 5 years, a comprehensive review must be undertaken of this Act by a committee appointed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
- (3) The review committee must be composed of
- (a) one or more persons representative of
- (i) Indigenous communities,
- (ii) guardians and caregivers of children, and
- (iii) providers of services to children and families, and
- (b) one or more members of each caucus represented in the Legislative Assembly.
- (4) The review committee must submit to the Minister a report that includes any amendments recommended by the

제131.1조(제한)

제 131 조제(1)항제(d.1)호의 목적상, 주의회의 모든 정당 위원회가 검토하기 전에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다.

제5부 심사, 경과조항, 폐지 및 시행

제131.2조(심사)

- (1)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 란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를 말한다.
- (2) 부총독이 임명한 위원회는 적어도 5 년 마다 한 번씩 이 법에 따라 종합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 (a) 다음을 대표하는 자 1 명 이상
- (i) 토착민 공동체
- (ii) 아동의 후견인과 아동을 돌보는 사람
- (iii)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b) 주의회에서 각각의 이익단체를 대표하 는 의원 1명 이상
- (4)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이후 1 년 이내 에 심사위원회가 제청하는 개정 사항이 포함

committee within one year after commencing its review.

- (5) On receiving a report under subsection (4), the Minister shall lay the report before the Legislative Assembly if it is then sitting or, if it is not then sitting, within 15 days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next sitting of the Legislative Assembly.
- (6) The first review must commence within 5 years after the day this section comes into force.
- (7) Each subsequent review must commence within 5 years after the day the report on the previous review was required to be submitted.

132 Transitional

If a child is a permanent ward of the Crown under the Child Welfare Act, RSA 1980 cC-8, the child is deemed to be the subject of a permanent guardianship order under this Act.

133 Repeals s58(1)(a) and (2)

- (1) Section 58(1)(a) and (2) are repealed on Proclamation.
- (2) Repealed 2013 cS-19.3 s3.
- (3) On the repeal of section 58(1)(a) pursuant to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a

된 보고서를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주무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면, 주의회가 회기 중인 경우에 이를 주의회에 제출한다. 또는 주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 주의회가 다음 회기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한다.
- (6) 첫 번째 심사는 이 조의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 (7) 각 후속 심사는 이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날부터 5 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제132조(경과조항)

아동이 「아동복지법」(「앨버타주 개정 법전(1980)」, 법률 제 C-8 호)에 따라 국가의 영구적 후견을 받는 경우 해당 아동은 이법에 따른 영구후견명령의 대상인 것으로 본다.

제133조(제58조제(1)항제(a)호와 제(2)항의 폐지)

- (1) 제 58 조제(1)항제(a)호와 제(2)호는 법률의 공포에 따라 폐지된다.
- (2) 2013 년 법률 제 S-19.3 호 제 3 조에 따라 폐지
- (3) 이 조 제(1)항에 따른 제 58 조제(1)항 제(a)호의 폐지에 따라 제 2 부제 1 절을 다

reference in Part 2, Division 1

- (a), (b) repealed 2009 c53 s35,
- (c) in section 91(3) to "Court" means "Court of Queen's Bench".
- 134 Repealed 2018 c24 s31.

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및 (b) 2009 년 법률 제 53 호 제 35 조 에 따라 폐지
- (c) 제 91 조제(3)항에서 "법원" 이란 "고등 법원"을 말한다.

제134조 2018년 법률 제24호 제31조에 따라 폐지